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GYEONGSANGNAMDO UNIVERSAL DESIGN  
GUIDELINE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GYEONGSANGNAMDO UNIVERSAL DESIGN  
GUIDELINE

제 / 출 / 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과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제출일**

0000년 00월 00일

**코애티드**

본 가이드라인에 명기된 적용 대상의 명칭이나 정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현행관련법상 명칭이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CONTENTS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Part 1.

<b>I 과업개요</b>	1-01
1.1 과업추진 배경과 목적	
1.2 과업의 법적 위상과 범위	
1.3 과업진행일정	
<b>II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b>	2-01
2.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원칙	2-01
2.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2.1.2 UD와 BF의 유사점과 차이점	
2.1.3 유니버설디자인의 변천 과정과 원칙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	2-05
2.2.1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2.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 개요	
2.2.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	
2.2.4 무장애공간 & Barrier Free 관련법규	
2.2.5 기타 관련법규	
2.2.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법규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2.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계획 및 정책	2-05
2.3.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및 정책 개요	
2.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2.3.3 보행업무편람	
2.4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사례 조사	2-05
2.4.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상의 인증등급제도	
2.4.2 국내 관련 사례	
2.4.3 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기준	
2.4.4 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2.4.5 주요 유형별 사례	

# CONTENTS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Part 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b>III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개발</b>	<b>3-01</b>
3.1 경상남도 특성분석	3-22
3.1.1 경상남도 자연적 특성	
3.1.2 경상남도 인문학적 특성	
3.1.3 소결	
3.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 구상	3-22
3.2.1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3.2.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책과 비전	
3.2.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3.2.4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구성	
3.3 각 영역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3-22
3.3.1 공공 공간	
3.3.2 공공 건축물	
3.3.3 공공 시설물	
3.3.4 공공 서비스	
3.3.5 공공정보 매체	
3.4 경상남도 지역 특색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4대 적용 권역	3-22
3.4.1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4대 권역 설정	
3.4.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4대 권역별 가이드라인	
3.5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3-22
3.5.1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설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3.5.2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구성방법과 세부내용	
3.5.3 각 영역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 CONTENTS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Part 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활성화 정책

<b>IV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활성화정책</b>	<b>4-01</b>
4.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표사례 선정(KOAD)	4-01
4.1.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표사례 발굴 및 선정기준	
4.1.2 대표사례의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안	
4.2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정책 및 육성방안(창원대)	4-08
4.2.1 경상남도 기존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연계방안	
4.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부서별 세부추진과제	
4.2.3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활성화 방안	
4.3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협력 및 도민참여(창원대)	4-09
4.3.1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협력방식 연구	
4.3.2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발굴 및 사업협의체 구성 등	

## Part 4.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심의 매뉴얼 & 부록

<b>VI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심의 매뉴얼(KOAD)</b>	<b>5-01</b>
5.1	5-01
5.1.1	
5.1.2	
5.1.3	
5.2	5-01
5.2.1	
5.2.2	
5.2.3	

<b>부록. 주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청취</b>	<b>부록-01</b>
부록.1	
부록.2	
부록.3	
부록.4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GYEONGSANGNAMDO UNIVERSAL DESIGN  
GUIDELINE

## Part 1





# I 과업개요

---

1. 과업추진 배경과 목적
  2. 과업의 법적 위상과 범위
  3. 과업진행일정
-

## I. 과업개요

# 1.1 과업추진 배경과 목적

### 1) 과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 01 다수를 위한 디자인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의 환경 조성

- 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시대적 트렌드 속에서 다수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 대두
- 사람들은 모든 시설과 공간을 쉽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간영유의 권리가 존재
- 따라서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왼손잡이 등 사회적 소수들도 모두 이용가능한 공간 조성이 필요

#### 02 고령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normalization)

-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왼손잡이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들에 대한 배려 증대
-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Barrier free)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되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및 심리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

#### 03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의 요구 증대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에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통해서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념으로 변화
- 도시공간의 변화로 보편적 편리함을 적용할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비롯하여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코자 할 경우 통일된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필요

### 2) 과업의 목적

- 디자인의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 · 시행 필요
  - 장애인 · 노인 ·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 도시공간 변화에 따라 보편적 편리함을 적용할 계획 필요
-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도입 및 시설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 등 모두를 배려한 디자인 도시 구현
- 민간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시 통일된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필요

### 3) 과업의 주요과제

#### 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정의 분석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정립 및 선진사례 조사
  - 관련 법규 및 분야, 상위개념 조사
- 유니버설디자인 목표 및 실천방안 전략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비전, 슬로건 설정, 가이드라인 로드맵(방향) 제시

#### 나.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 경상남도의 지형적, 인문학적 특성에 맞는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개발
  - 기 수립된 타 시 · 도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경남도만의 특화된 디자인 개발

- 각 영역별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 적용지침 및 기준 제시
  -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 공공서비스 등
- 가이드라인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각 영역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 다.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대표사례 컨설팅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시급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대표사례 발굴
- 디자인 개선안, 도면 등 시각화를 통해 제

#### 라.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정책 및 육성방안 제시

- 경상남도 기존 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연계방안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

#### 마.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협력 및 도민참여

-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지역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협력방식 연구
-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발굴 및 사업협의체 구성 등 도민의 참여사항 제안

## I. 과업개요

# 1.2 과업의 법적 위상과 범위

### 1) 유니버설 디자인의 법적 근거 및 위상

- 각 광역시도 및 시군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국가차원의 법적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는 없는 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규는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의 법적 근거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19.6.7. 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단, 기본계획의 내용이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상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 :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6호
  -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행정구역 전역(18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9년), 목표연도(2030년)

표 1.2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경상남도	2018년 ~ 2030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행정구역 전역 (18개 시·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연도 : 2019년</li> <li>• 목표연도 : 203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li> <li>•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li> <li>•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대표사례 컨설팅</li> <li>•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정책 및 육성방안 제시</li> <li>•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야 협력 및 도민참여</li> </ul>

## II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

---

### 2.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원칙

- 2.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 2.1.2 UD와 BF의 유사점과 차이점
  - 2.1.3 유니버설디자인의 변천 과정과 원칙
- 

###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

- 2.2.1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 2.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 개요
  - 2.2.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
  - 2.2.4 무장애공간 & Barrier Free 관련법규
  - 2.2.5 기타 관련법규
  - 2.2.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법규상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 

### 2.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계획 및 정책

- 2.3.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및 정책 개요
  - 2.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상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 2.3.3 보행업무편람
- 

### 2.4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사례 조사

- 2.4.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상의 인증등급제도
  - 2.4.2 국내 관련 사례
  - 2.4.3 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기준
  - 2.4.4 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2.4.5 주요 유형별 사례
-

## II.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

# 2.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원칙

### 2.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 유니버설디자인의 주창자인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환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접근'이라고 정의함
-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 접근 방식
-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정보, 서비스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이나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며, 사용자(주민)와 행정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사용자 참여형의 시스템 구축도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됨



표 2.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What is Universal Design)

구분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	• 연령, 신체크기와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접근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디자인과 구성으로, 환경, 건물, 제품, 서비스 등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사용대상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대상	• 다양한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가능하도록 제품과 환경 (환경, 건물, 제품, 서비스 등)을 디자인 하는 것
도입목적	• 최소비용으로 능력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건축물,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임
디자인철학	•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여 일상생활안에서의 통합을 증진
유니버설디자인이란?	▶ 유니버설디자인은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아니며, 좋은 디자인의 기본조건임

## 2.1.2 UD와 BF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배리어프리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임
-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듯 보이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상호보완을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디자인” 의 현실적인 실현 방향을 제시

표 2.2 유니버설디자인(UD)과 무장애공간(BF) 비교

구 분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무장애공간(Barrier Free)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건물, 제품, 서비스 등) 만들기</li> <li>• 성별, 연령, 신체크기와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접근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건물, 도시공간 등) 만들기</li> <li>•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동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지침에 의거한 디자인</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남녀 등 모든 사람들</li> <li>• 건물, 공공공간, 제품, 서비스 등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li> <li>• 건물, 공공공간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시설물, 설비, 정보 등)의 장애물 제거</li> </ul>
관 련 법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li> <li>•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li> <li>• 각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li> <li>•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li> <li>•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li> <li>•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규칙</li> <li>• 장애인복지법</li> <li>•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li> <li>•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li> <li>•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li> </ul>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순히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디자인의 개념을 넘어 보편성의 관점에서 1980년대부터 개념정립 시작</li> <li>• 199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Ronald L. Mace가 현재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의와 원칙을 확립</li> <li>•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편의증진과 사회적 참여보장을 위해 환경과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협회의 '장벽이 없는 건축설계'라는 보고서에 의해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li> <li>• 1990년대에 이르러 건축을 중심으로 무장애공간(Barrier Free)라 명명됨</li> <li>• 장애인의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미국장애인협회(ADA)의 요구사항에 따라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 마련</li> <li>• 한국도 ADA의 기준에 따라 법적기준 마련</li> </ul>

[그림 2.2]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공간



## 2.1.3 유니버설디자인의 변천과정과 원칙



### 1) 유니버설 디자인의 변천과정

- 유니버설디자인은 초창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그것을 능가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미묘한 요구를 보다 잘 수용하고 소외되고 차별된 느낌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의미하게 됨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전쟁에 따른 부상군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건축을 시작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강구됨
- 이 개념을 가장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신체장애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도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사회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스웨덴이나 캐나다, 덴마크 등의 선진국들도 1960년대 중반이 이르러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
- 전쟁에 따른 부상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장애인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교육과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장벽을 없애는 의미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함
- 1961년 미국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 신체장애자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유용한 건물과 시설을 만들기 위한 설계규준을 발표하였는데, 이 설계규준은 일리노이대학의 티모시 뉴젠트(Timothy Nugent)가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거기에는 배리어프리를 대신하여 '접근 가능하고 유용한(Accessible and Us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
-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와 개념이 처음 제창된 계기는 1970년 미국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접근 가능한 주택 연구소(Center for Accessible Housing, 1994년에 Center for Universal Design으로 변경) 소장이었던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가 'Handi top 2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통해 사용
-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을 둘러싼 도구와 환경 및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재활, 자립할 수 있는 체제정립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장애인은 물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는 인식을 계기로 발전하게 됨

[그림 2.3]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변화

장애없는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기존환경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장애물의 인식과, 그 장애물의 제거에서 출발
접근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사용자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이용가능성과 안전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접근가능한 환경 마련
수용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사용자 요구의 다양함과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
생애주기 디자인 (life-span design)	사용자의 능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용한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지닌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개념

###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과 PPP 평가

- 제품 및 환경디자인에 유니버설디자인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원칙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나카가와 사토시(Nakagawa Satoshi)가 PPP(Product Performance Program)의 평가 원칙을 개발
- PPP(Product Performance Program)의 평가원칙 :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과 3개의 부칙을 포함하고 55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표 2.3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IRS Center)과 PPP 평가 가이드라인

원칙	내용	사례	평가 가이드라인
원칙 1. 이용상의 동등성 (Equitable use)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용자가 유용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1. 평등한 사용 2. 차별감 배제 3. 선택권 제공 4. 불안배제와 안심 확보 5. 폭 넓은 호감도
원칙 2. 이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of use)	다양한 개인적인 선호도와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6. 사용법의 자유 7. 주로 쓰는 손의 수용 8. 정밀도에 대한 관용 9. 작업속도의 자유도 10. 사용환경에 대한 허용도
원칙 3. 단순함과 직관성 (Simple and intuitive)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능력, 집중도 등과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11. 복잡함 배제 12. 직감과 일치 13.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이해 14. 간단한 조작으로 유도 15. 조작에 대한 실마리와 화답 16. 오감정보에 대한 배려와 활용
원칙 4. 인지가능한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주변상황이나 사용자의 지각능력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17. 정보전달의 중복과 확보 18. 인지수단의 선택과 가능성 19. 사용을 위한 정보의 정리 20. 파악하기 쉬운 사용상의 구조 21. 보조수단의 허용
원칙 5. 실수에 대한 관용 (Tolerance for error)	우연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험성과 결과의 다양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22. 사고방지위한 기본구조와 구성 23. 위험요소의 격리 24. 사고예방 25. 경고시스템 마련 26. 사고발생시의 안전 확보 27. 현상복귀 수단 28. 모든 안전성에 대한 배려
원칙 6. 최소한의 신체적 부담 (Low physical effort)	효과적이며 편안하고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29. 쾌적한 사용을 위한 자세 30. 적당한 힘으로 제어 31. 무의미한 반복동작 배제 32. 신체 부하량의 경감 33. 감각기관의 보호
원칙 7. 접근과 이용에 적합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신체크기나 자세, 혹은 이동 능력과 상관없이 접근과 조작이 가능한 적절한 크기와 공간		34. 인지의 확보 35. 사용위치의 확보 36.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대응 37. 보조, 개조의 여지 38. 점유면적의 부담 경감

표 2.4 유니버설디자인의 3가지 부칙과 PPP 평가 가이드라인

원칙	내용	사례	평가 가이드라인
부칙 1. 내구성과 경제성 배려	안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가격인 제품		39. 사용 내구성에 대한 배려 40. 적절한 가치 41. 제조경비에 대한 배려 42. 지속사용에 따른 경제성 43. 지속사용에 대한 안심제공
부칙 2. 품질과 심미성 배려	품질이 우수하고 기능성과 심미성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		44. 미관상의 일반성 45. 실용미와 기능미 46. 치우치지 않는 품질감각 47. 소재의 특성을 살린 가공과 제조 48. 안정감 있는 사용
부칙 3. 보건과 환경 배려	사람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것		49. 위생과 청결 50. 인체에 무해 51. 자연환경에 무해 52. 재활용, 재사용 추진 53. 병용에 의한 위험 억제 54. 사용상의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55. 환경문제나 공해 회복

[그림 2.4] 조형물을 활용한 보도변 안전시설(단차로 인한 헛디딤 방지 조형물)



## II.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

# 2.2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법규

### 2.2.1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현황



- 통합적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움직임 :
  - 2017년 9월 1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건축, 정보제공, 피난 분야를 중심으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
  - 현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을 약속
- 관련 법규 제정 현황
  - 각 광역 시도 및 시군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국가차원의 법적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법규는 없는 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규는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
- 중앙정부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2012.12)에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활용실태와 외국의 정책을 토대로 문화적 적용방안을 연구(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2018. 8)에서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공간·시설별 설계기준 제시(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 2.2.2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법규 개요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 무장애 관련법규, 도로, 교통, 건축 등과 관련된 법규 등을 구분할 수 있음

표 2.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구분	법규 및 계획	관련주요내용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관련 법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b>공공시설물 등(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b>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b>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b> 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b>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b> 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표 2.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구분	법규 및 계획	관련주요내용
무장애공간 (Barrier Free)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으로·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 장애인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 등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보호구역의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을 규정
기타 관련 법규	도로법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기준을 정하는 내용임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에 관한 것으로 교통시설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규정하여, 도로교통안전과 소통, 좋은 도로 환경조성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규정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

## 2.2.3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관련 법규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목적(법 제1조)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함임
- 정의(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6 공공디자인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공공디자인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b>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b>
공공디자인 사업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b>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b>
공공시설물 등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b>대중교통시설물</b>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b>보행안전시설물</b>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b>편의시설물</b>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b>공급시설물</b>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b>녹지시설물</b>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b>안내시설물</b>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목적(법 제1조)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정의(법 제2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보행자 길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로교통법상의 <b>보도</b> (제2조제10호) 나. 도로교통법상의 <b>길가장자리구역</b> (제2조제11호) 다. 도로교통법상의 <b>횡단보도</b> (제2조제12호) 라. 도로교통법상의 <b>보행자전용도로</b> (제2조제31호) 마. 자연공원법상의 <b>공원구역</b> (제2조제5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한 <b>법률상의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b> (제2조제3호) 바. 향만법상의 <b>향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b> (제2조제5호라목) 사. <b>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b> 아. 그 밖에 <b>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b>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보행환경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

• **보행권의 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원칙(법 제3조제3항)**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의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대상(법 제9조제1항)**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시 포함하여야 할 구역(법 제9조 제2항)**

1.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제12조제1항)
2. 도로교통법상의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제12조의2제1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보행우선구역**(제18조)

• **보행자 안전 확보와 통행 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법 제15조제1항)**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람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23조제1항)**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표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주요내용(시행규칙 제5조제2항관련 별표 1)

유 형		구조 및 기준
차량 속도 저감 시설	고원식 (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 3.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 고려 4.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히 과속사고 우려지점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앞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여 운전자 주의를 환기
	차도폭 좁힘	1.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음
	과속방지턱	1. 과속방지턱 설치시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cm 규격 적용. 단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 등 설치장소 특성에 따라 설치길이, 높이 차등화
보행교통섬		1. 도로규모에 따라 직선 또는 굴절형태로 횡단보도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 2. 보행교통섬의 최소폭 1.5미터 3. 보행교통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인공 구조물 설치 가능
무단횡단 금지시설		1.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높이는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교통신호기		1. 보행자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 설치 가능
보행자 안내표지판		1.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교통수단, 600m 이내 주요 시설물, 1.2km 이내 여객시설, 기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2.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며, 야간에도 인지가가능해야 함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가능
보도용 방호울타리		1.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
보행자길 및 도로의 조명시설		1.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효율의 향상,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및 피로 감소,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길에 조명시설 설치
장애이용 음향안내시설		1.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이용 음향안내시설을 설치 2. 장애이용 음향안내시설이 설치된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발생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1. 보행자 대상 범죄 예방용 조명시설과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밖의 안전시설(긴급단추 등)을 설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 내외 3.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m 내외 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의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 사용 2. 점형블록은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거나,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설치 3. 선형블록은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 등에 설치된 점형블록과 연결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하는 용도로 설치

### 3)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목적(조례 제1조) :**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기본이념(조례 제2조)**
  1.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4.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 **정의(조례 제3조)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

표 2.9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조례 제6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비고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공원, 광장</li> <li>• 가로, 공원, 광장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li> </ul>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
공공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li> <li>• 조달청(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 청사, 학교, 대학, 경찰서, 수련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공장, 창고, 기숙사,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교정시설, 격납고, 주차시설)</li> </ul>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 제6호
건축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상의 도지사승인 공동주택</li> <li>• 21층이상 건축물</li> <li>•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li> <li>•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li> </ul>	경상남도 건축조례 제4조
공공 시설물	<p>〈도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다음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임시시설물</li> <li>•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li> <li>• 공원, 휴양공간, 광장(사업비 40억원 이상)</li> <li>•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사업비 40억원 이상)</li> <li>• 안전시설물, 위생시설물, 편의시설물, 관광용품</li> <li>• 정보디자인, 브랜드 등</li> </ul>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2조 제3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li> </ul>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조례 제7조제1항) :**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장·군수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 목적(법 제1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표 2.10 공공디자인 관련 용어의 정의(조례 제2조)

용어	정의
공공디자인	경상남도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공공기관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다. 민법 제32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

표 2.11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제2조 및 제17조 관련 별표)

유형	구조 및 기준	
시설물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 (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 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 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쉼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 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 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 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 부속시설물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임시시설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견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공원 등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썬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공공청사 등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제2조 및 제17조 관련 별표)

유형	구조 및 기준	
공공용품 등	안전시설물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시설물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편의시설물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정체성 브랜드	정보디자인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브랜드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 브랜드 상징(B),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2.2.4 무장애공간(Barrier Free) 관련 법규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목적(법 제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가 위함임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법 제3조) : 아래 각 호의 자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1. 시설주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표 2.1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법 제7조 및 제8조)

대상시설	해당시설	세부대상시설
1. 공원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	<b>자연공원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 공원시설</b> 1. 공공시설 : 공원관리사무소·창고·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경로당·도서관 등 2. 보호 및 안전시설 : 사방·호안·방화·방책·방재·조경시설 등 3. 증식·복원시설 :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을 위한 시설 4. 휴양 및 편의시설 :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야영장, 청수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5. 문화시설 :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 6. 교통·운수시설, 숙박시설, 이상 시설의 부대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b>도시공원 : 국토계획법상의 공원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b> <b>공원시설 : 조경시설(화단, 분수, 조각 등), 휴양시설(휴게소, 인의자 등), 유희시설(그네, 미끄럼틀 등), 운동시설(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교양시설(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편의시설(주차장, 매장, 화장실 등), 공원관리시설, 기타 국토교통부령상의 시설</b>

표 2.1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법 제7조 및 제8조)

대상시설	해당시설	세부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
3. 공동주택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통신시설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상의 우편물 등 통신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5.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표 2.13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표 2.1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시공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표 2.1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 끝수는 1대로 봄</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p>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음</p>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p>건축물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 직접 이용시설만 해당)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p>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p>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p>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p>(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p> <p>(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p>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p>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구비 설치</p>
(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p>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p>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p>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p>
(10) 점자블록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p>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 ((나) 삭제 &lt;2007.2.12.&gt;)</p>

표 2.1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나)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출 것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 설치, 선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1실로 봄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 설치, 선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봄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 설치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우면 이동식으로 설치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 설치 경우,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설치 시설물은 제외

표 2.1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등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표 2.1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대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3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등 (3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 · 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등, 5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판매 시설	도 · 소매시장 · 상점 (10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 시설	병원 ·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 (특수학교 포함, 유치원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 등 (5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 (10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표 2.1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대표소 · 판매기 · 음로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동시설 (5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5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등 (10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등 (10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만 해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 · 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종교시설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표 2.1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 안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법 제10조의 2)

1.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
2. 의무인증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의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목적(법 제1조)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임
-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법 제18조)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됨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됨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
    2.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름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목적(법 제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인증 대상(법 제2조)
  1. 개별시설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

• 인증의 신청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목적(법 제1조)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표 2.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주요용어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 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도시철도, 철도 등 광역철도)
여객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광역철도 시설중 여객용 시설)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포함) 및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표 2.17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법 제9조)

설치대상	세부내용	비고
교통수단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도시철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버스(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철도차량
	항공법상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항공기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여객선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광역철도

표 2.17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법 제9조)

설치대상	세부내용	비 고
여객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환승시설	환승시설
	도시철도법상 철도시설 중 역사	도시철도역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버스정류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 중 역사	철도역사
	항공법상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법상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항만친수시설	여객선터미널, 항만친수시설
	광역철도의 역사	광역전철역사
도로 (보행환경)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 부속물 포함)	보도(인도)
	도로법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지하도 및 육교 등

표 2.18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버스					철도차량	도시 철도 차량	항공기	선박	광역 철도
			시내 (저상형)	시내 (일반형)	시내 (좌석형)	농어촌 버스	마을 버스					
안내 시설	안내방송	○	○	○	○	○	○	○	○	○	○	○
	문자안내판	○	○	○	○	○	○	○	○	○	○	○
	목적지표시	○	○	○	○	○	○	○	○	○	○	○
내부 시설	휠체어승강설비	○	○	○	○	○	○	○	-	-	○	-
	휠체어보관함	-	-	-	-	-	-	○	-	○	○	-
	교통약자용좌석	○	○	○	○	○	○	○	○	○	○	○
	장애인전용화장실	-	-	-	-	-	-	○	-	○	○	-
그밖의 시설	수직손잡이	○	○	-	○	○	-	-	○	-	-	○
	장애인접근가능표시	○	○	○	○	○	○	○	○	○	○	○
	출입구통로	-	-	-	-	-	-	○	○	○	○	○

※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

표 2.19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 정류장	철도역사	도시 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 철도역사
	주출입구	○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	○	○	
내부 시설	통로	○	-	○	○	○	○	○	○	
	경사로	○	-	○	○	○	○	○	○	
	승강기	○	-	○	○	○	○	○	○	
	에스컬레이터	○	-	○	○	○	○	○	○	
위생 시설	장애인 전용 화장실	대변기	○	-	○	○	○	○	○	
		소변기	○	-	○	○	○	○	○	
		세면대	○	-	○	○	○	○	○	
안내 시설	점자블록	○	○	○	○	○	○	○	○	
	유도 및 안내시설	○	○	○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	○	○	
그밖의 시설	매표소	○	-	○	○	○	○	○	○	
	판매기	○	-	○	○	○	○	○	○	

※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

표 2.19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여객자동차	버스	철도역사	도시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
		터미널	정류장	역사	철도역사	시설	시설	시설	철도역사
그밖의 시설	음료대	○	-	○	○	○	○	○	○
	개찰구	-	-	○	○	○	-	-	○
	승강장	○	-	○	○	-	-	-	○
	보안검사장	-	-	-	-	-	○	-	-
	여객탑승교	-	-	-	-	-	○	-	-
	대기시설	-	○	-	-	-	-	-	-
	임산부휴게시설	○	-	○	○	○	○	○	○

※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

표 2.2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도로 실태조사 항목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	교통약자	장애인전용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용
		통행가능	통행가능	주차구역	이용가능	이용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주차구역	휴게실 및	가능음향
					지하도 상가	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 출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

### 5)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목적(법 제1조)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 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표 2.21 보호구역의 지정대상(법 제2조 및 제3조)

지정대상	대상 시설유형	신청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나. 초 · 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 집만 해당) 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 마. 초 · 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 ·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초등학교 등의 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변도로 (노인보호구역)	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 · 운영하는 자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노장장애인복지시설 설립 · 운영자

•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법 제6조, 제7조)**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1.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함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
3. 각 보호구역에는 안전표지를 설치

-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

- 도로부속물의 설치

1.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법 제8조)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2.2.5 기타 관련법규



### 1) 도로법

• **목적(법 제1조) :**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표 2.22 도로법상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규정
도로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b> 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 포함	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의 정의)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포함) 3. 궤도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넴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초등학교 등의 장

표 2.22 도로법상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규정
도로의 부속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아래 시설 또는 공작물 가. 도로이용 지원시설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나. 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다. 도로관리시설 : 통행로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라. 교통관리시설 :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마. 도로부대시설 :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 바. 그밖에 도로의 기능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b>	도로법 제2조제2호 (도로의 부속물 정의)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 유도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상의 방파시설, 방설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음시설(방음림 포함)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 저감 시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 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결(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부속물)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목적(규칙 제1조) :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표 2.2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요용어의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차로수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
오르막차로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
회전차로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

표 2.2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요용어의 정의(법 제2조)

용어	정의
변속차로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
측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
분리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
중앙분리대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
길어깨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는 제외]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
보도의 유효폭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보행시설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
시설한계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
교통섬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
연결로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
환경시설대	도로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 바깥쪽에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

• **보도(규칙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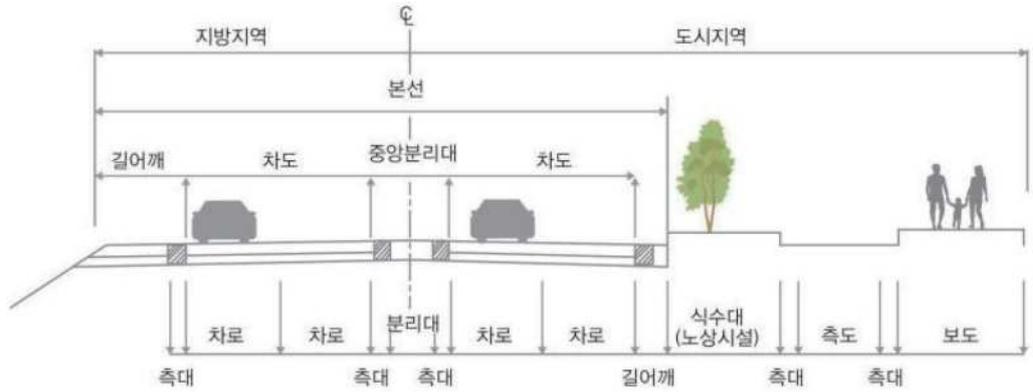
-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보도를 설치.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 설치기준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한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 가능
-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

**3)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sup>1)</sup>**

- **목적(지침 제1조)** :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기준을 정함
- **설계 원칙**
  1.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보행자의 보행속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보도 및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는 차도와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1)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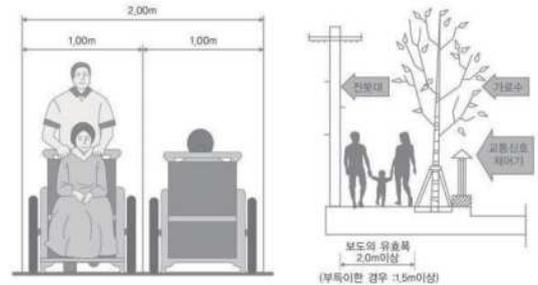
2. 용지 제약 등으로 인해 보도가 차도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경계석 등을 이용하여 통행을 분리하고, 용지 확보가 용이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차도와 충분히 이격
3. 녹지 및 식수대는 도로·교통 환경정비 및 도로주변의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4. 보도와 차도가 연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차도면 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횡단보도와 연접한 보도는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턱낮추기를 시행



[그림 2.5] 보도설치 횡단구성의 예

• 보도의 유효폭

1.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 하되,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 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0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 까지 보도 유효폭 축소 가능
2. 보도 유효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으로 정의
3. 보도 유효폭 2.0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자가 시설물에 방해받지 않고 이용하는 최소폭이므로 여유폭에 대한 고려가 필요
4. 방해폭은 보행자가 시설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는 폭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방해폭을 제외하여 산정
5. 기존 보도의 유효폭이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이상의 교행구역 검토 가능



[그림 2.6] 보도의 유효폭

• 보도면 및 경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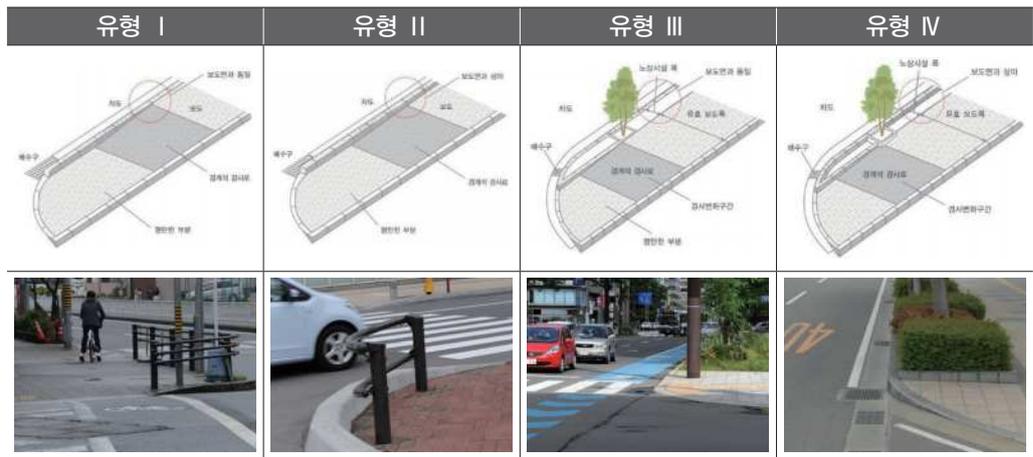
1. 보도면 높이는 자동차 건물 진입을 위한 경사도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및 자전 거 이용자의 통행안전성 및 편리성을 감안하여 보도면과 차도면의 높이 차이를 줄인 구조로 함
2. 보도면과 차도면의 높이 차이에 따라 아래 그림처럼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

표 2.24 보도면 형식 및 사례



3.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 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
4.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턱낮추기, 시각장애이용 점자블록 등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등 참고

표 2.25 보도면 형식 및 사례



#### 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목적(지침 1.1) :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표 2.2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주요용어의 정의(지침 1.3)

용어	정의
시선유도시설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시설의 종류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음
시선유도표지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
갈매기표지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표지병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

표 2.2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주요용어의 정의(지침 1.3)

용어	정의
시인성증진 안전시설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물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이 있음
장애물 표적표지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등에서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선유도봉	운전자의 주위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조명시설(제2편 2절)** :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

1. 조명요건

- 가.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 나.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 다.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 라.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표 2.27 조명시설 설치장소

구분	연속조명	국부조명	
		원칙적 설치	필요시 설치
자동차 전용도로	1. 도로 주변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부 구간 2. 인터체인지, 휴게 시설, 터널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킬로미터 이하인 구간 3.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1. 입체교차 2. 영업소 3. 휴게시설	1. 도로폭, 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2. 교량 3. 버스정차대 4.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 5. 기타 국부조명 필요 장소
일반도로 등	연평균 일 교통량(AADT)이 25,000대 이상인 시가지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 단,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미만인 경우도 필요시 조명시설을 설치	1. 신호기 설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2. 야간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2. 도로폭, 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3. 철도건널목 4. 버스정차대 5. 역 앞 광장 등 공공 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6. 기타 국부조명 필요 장소

• **장애인 안전시설(제4편)**

- 1. 적용범위 : 편의증진법에 의거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그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
- 2. 기능 및 종류
  - 1) 기능
    - 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최단거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장애인 안전시설은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한다.

다.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에서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2) 종류 및 대상

가.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

나. 대상시설 : 도로상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중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점자블록

3. 대상시설 설치장소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

4.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설치

1) 설치 장소

가.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나.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다.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 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표 2.28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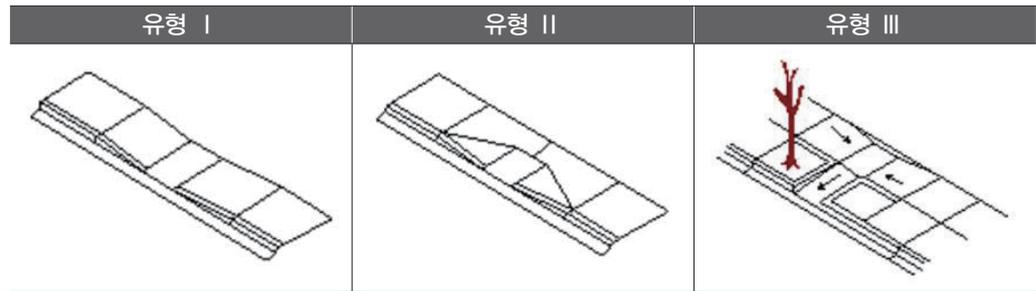


표 2.29 횡단보도가 인접한 교차부와 연석이 곡면부인 경우의 설치 방법



## 2.2.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법규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표 2.30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법규 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관련법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비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li> <li>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li> <li>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li> <li>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li> </ul>	법 제2조제3호

표 2.30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법규 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관련법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비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li> <li>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li> <li>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li> </ul>	법 제2조제3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법상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li> <li>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li> <li>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내 보행자 통행공간</li> <li>항만법상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 통행공간</li> <li>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li> <li>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li> </ul>	법 제2조제1호 도로교통법 자연공원법 공원녹지법 항만법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공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 공원, 광장</li> <li>가로, 공원, 광장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li> </ul>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
	공공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li> <li>조달청(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 청사, 학교, 대학, 경찰서, 수련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공장, 창고, 기숙사,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교정시설, 격납고, 주차시설)</li> </ul>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 제6호
	건축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법상의 도지사승인 공동주택</li> <li>21층이상 건축물</li> <li>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li> <li>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li> </ul>	경상남도 건축조례 제4조
	공공 시설물	<p>&lt;도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관리하는 다음 시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임시시설물</li> <li>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li> <li>공원, 휴양공간, 광장(사업비 40억원 이상)</li> <li>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사업비 40억원 이상)</li> <li>안전시설물, 위생시설물, 편의시설물, 관광용품</li> <li>정보디자인, 브랜드 등</li> </ul>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2조제3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li> </ul>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 : 출입구, 보도, 화장실, 점자블록, 공원시설 등</li> <li>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li> <li>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li> <li>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li> </ul>	시행령 제4조 별표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li> <li>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li> <li>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li> <li>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li> <li>관광활동의 차별금지</li> <li>체육활동의 차별금지</li> </ul>	법제18조 ~ 제20조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표 2.30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법규 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관련법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비고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시설</li> <li>안전대책 강구 : 피난용 통로, 점자·음성·문자 안내판 설치, 긴급 통보체계</li> <li>문화환경 정비 등 :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li> </ul>	법 제23조 제24조 제28조
장애인·고령자 등 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주택 : 주거약자용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개조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거주 개조주택</li> <li>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 항목 :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비상연락장치,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li> </ul>	법제9조/영제4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수단 : 도시철도차량, 승합자동차,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광역전철여객차량</li> <li>여객시설 : 환승시설, 도시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친수시설, 광역전철역사</li> <li>도로 : 도로법상 도로(도로부속물 포함), 도로법 준용도로</li> </ul>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등</li> <li>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li> <li>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li> </ul>	법 제2조

## II.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

## 2.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계획 및 정책

## 2.3.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및 정책 개요



## 가. 중앙정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2012.12)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2013.9)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개발연구(2014.12)
- 행정안전부 /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2018.8)

## 나.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경상남도 경관기본계획
- 경상남도 교통약자 증진 지원계획
- 경상남도 교통안전계획

## 다. 타시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계획 검토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2017.1)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2017.1)
-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011.4)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2011.4)
-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가이드라인(2011.1)
-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16.12)
-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2018.12)
-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017.12)

## 라. 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 universal design 2((New York)
- universal design handbook(Calgary)
- Universal Design for Public Places(Singapore)
-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Homes in Ireland(2015)

## 마.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

- 한국장애인개발원 /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2016.12)
- 대전발전연구원 / 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2008.11)
- 대구경북연구원 /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07)
- 울산발전연구원 / 울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연구(2015.12)

## 2.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표 2.3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관련계획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계획기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가로	• 보도, 차도	건물·공간·시설 유형별 아닌 요소별 가이드 라인수립
	공원·광장	•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편의공간, 휴게공간	
	공공건축물	•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 가로, 공원	건물 요소별, 건물·공간· 시설 유형별 계획을 혼합 하여 가이드 라인 계획 수립
	공공건축물	• 공통공간 : 접근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 개별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물	•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가로시설물	• 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공공정보매체	• 시각·청각·촉각·후각정보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 보도, 광장, 공원	건물·공간· 시설 유형별 가이드 라인 계획 수립
	공공교통	• 공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공건축	• 공공업무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복지시설(장애인, 노인, 어린이, 사회복지관), 문화시설(전시, 공연), 체육시설	
	관광시설	• 해수욕장, 올레길, 관광지(테마파크형, 공원형)	
	공공정보시설	• 안내시설, 유도방식, 공원안내시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	• 보도, 차도	건물유형별이 아닌 건물 요소별 계획
	공원	• 공원	
	공공건축물	• 접근공간, 이동공간, 서비스공간	
	공공정보매체	• 공공정보매체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보도 및 자전거도로	• 보도, 보차도분리, 차량진출입부, 교통시설물구역, 자전거도로, 안내매체	CPTED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합계획 건물유형별이 아닌 건물요소별 계획
	차도	• 횡단보도, 교원식교차로, 스크램블교차로, 보행섬식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보행자우선도로	
	공원·광장	• 진입공간, 보행 및 산책로,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 주요시설, 화장실, 휴게공간, 편의시설, 안내매체	
	공공건축물	• 접근공간, 보행공간, 주차장, 대지내 시설물, 진입공간, 이동공간, 계단 및 경사로, 엘리베이터, 위생공간	
	공공매체	• 안내표지, 정보표지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건물·공간 · 시설 유형별 가이드 라인 계획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교통수단	• 택시, 버스차량, 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보행환경	•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신호기,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휴게실 및 지하도상가, 전용주차구역 등	
	개인주거시설	• 개인주거내부시설, 생활주변시설	
	상품개발	• 가전제품, 일상용품	

표 2.3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 및 대상

관련계획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계획기준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 가로(보도, 차도), 공원, 광장 및 부속건축물	건물요소별, 건물·공간 · 시설 유형별 계획을 혼합하여 가이드 라인 계획 수립
	공공건축물	• 공동공간 : 접근공간, 진입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 • 개별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	•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시설 등	
	공공서비스	• 교통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요금소 등 • 교통수단 : 택시, 버스차량, 도시철도,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 환경방재시설 : 상하수도 및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	
	공공정보매체	• 안내표지, 정보표지 (시각·청각·촉각·후각 정보시설)	

표 2.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적용 범위

관련계획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세부항목	주요 체크리스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	가로	보도	보행공간	• 유효폭, 유효높이, 단차, 기울기, 바닥마감, 배수, 점자블럭
			차량진입구역	• 대지내 주차장 진입구역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 전면부 영역, 건축물 전면부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겸용도로, 이용편의시설
		시설물 구역	• 공동, 안내시설, 우회정보, 여객정류장 설치, 버스정류소	
		차도	국지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안내시설, 차로폭 좁힘
			속도저감방안	•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 횡단보도 설치, 교원식 교차로, 교통섬	
	공원	진입공간	•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이동공간	• 산책로	
위생공간		• 화장실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	공원	편의공간	•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공간	• 휴게구역, 놀이터	
	공공 건축물	접근 공간	대지출입구	• 대지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
			보행접근로	• 접근로 유효폭 및 높이, 바닥마감, 연결공간, 유도 및 안내
			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장내 보행안전통로, 유도 및 안내
		진입 공간	주출입구	• 위치 및 전면공간, 문의 형태
			로비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유도 및 안내
		이동 공간	복도	• 유효폭,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실내출입문	• 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경사로	• 형태 및 구조, 안전
			계단	• 형태, 구조, 식별
			엘리베이터	• 구조, 대기공간, 엘리베이터문,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표 2.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적용 범위

관련계획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세부항목	주요 체크리스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체크리스트	이동 공간	에스컬레이터	• 구조, 승강장	
		방재및피난시설	• 피난방법 및 피난구, 피난동선	
	공공 건축물  위생 공간	화장실	• 접근 및 안내, 출입구, 마감 및 조명, 대변기부스, 위생설비, 영유아설비	
		다목적 화장실	• 기능 및 구조, 설비	
		수유실	• 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욕실/샤워실 등	• 욕조및활동공간,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및 접이식 의자, 탈의 및 수납공간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상의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	•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전용 유도블록, 가로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 벤치, 가로판매대, 퍼걸러, 셸터, 음수대, 공중전화,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등	
		녹지시설물	• 가로수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 교통표지판, 이정표,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도로교통 표지 등	
		도로시설물	•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터널,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시설물	• 보도육교, 지하보도, 방음벽,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임시시설물	•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원·광장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하천·수변 공간, 가로공간 등	
		광장	•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수단	버스 / 철도 / 선박등	• 안내시설(방송 및 문자안내판), 내부시설, 수직손잡이, 출입구 통로 등
		여객시설	터미널 / 역사 / 항만	• 매개시설(보행접근로 등), 내부시설(통로 등),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도로		도로/준용도로	•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휴게실 및 지하도상가 등	

### 2.3.3 보행업무편람<sup>2)</sup>



####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 지구 지정·사업 시행·평가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
- 기본목표 :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개선지구에서 추구되어야 할 기본목표로 안전성, 이동의 편리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장소성을 설정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분류 : 아래 표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표 2.34 유형분류를 위한 참고 지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 지역특성 평가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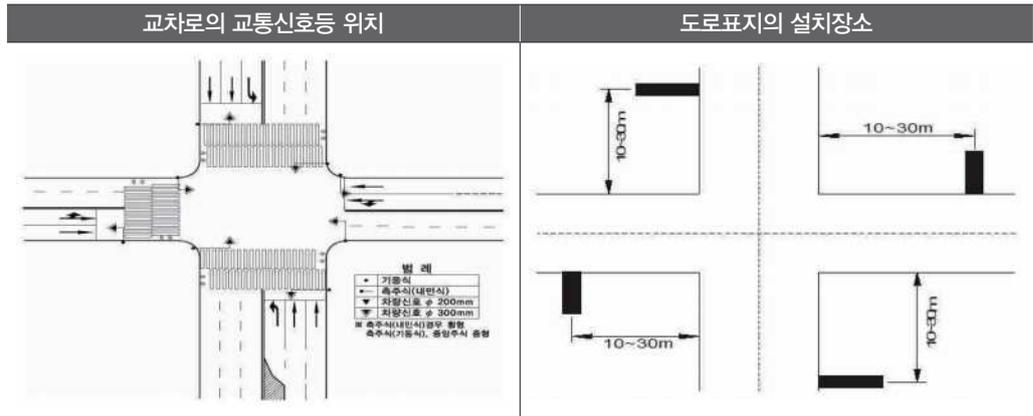
유형	내용		유형별 참고지표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일반현황	용도지역		비계량적	●	●	●	●	●	
	토지이용현황		비계량적	●	●				
편의성	시설입지	보행유발시설현황	보행유발시설의 수(개)		●				
안전성		교통약자이용시설현황	교통약자 이용시설의 수(개)				●		
접근성		주요 교통시설현황	교통시설의 수(개)					●	
장소성	문화·전통·관광명소 현황		특징적 건축물, 시설물수(개)						●
추가참고지표	시설입지	인구유발시설 현황			●				
		교통약자이용시설 현황					●		
		주요 교통시설 현황						●	
	문화·전통·관광명소 현황							●	

#### 나.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

- 법적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을 시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구성목적
  - 관리주체별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보행공간을 잠식하는 노상시설로 인한 보행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상시설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노상시설인 조명, 가로수, 전신주 등은 일정 공간 내에서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길에 대한 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 공간과 구분
  - 안전표지 등은 조명 지주 및 신호기 지주를 이용하여 통합함으로써 노상시설로 인한 충돌과 보도의 유효 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설치 시 고려사항
  -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통합
  - 각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고려
  - 통합할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
  - 보행등지주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시 유의
  - 교통신호등과 도로표지의 시인성에 유의

2) 행정안전부, 보행업무편람, 2013

표 2.35 교차로의 교통신호등 위치 및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 도로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전방 10~30m 지점의 오른쪽 길옆에 일면으로 설치

## II.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수립 및 기본구상

# 2.4 유니버설디자인 국내외 사례 조사

### 2.4.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상의 인증 등급제도



- 인증대상(규칙 제2조)
  - 개별시설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1. 읍면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지역
      -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 인증의 신청(규칙 제6조)
  -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가 신청
  - 시군구 및 지역에 대한 인증신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인증신청 시기
    1. 개별시설
      - 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나.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수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선박법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표 2.33 인증등급과 등급기준(별표 2)

등급	등급 기준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표 2.3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주요내용 요약

구분	주요내용		
BF 인증제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시군구, 읍면동,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개별 시설	장애인등 편의법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교통 약자법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시군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교통약자법상의 지역		읍면동, 사업지역 면적이 10만㎡ 이상인 각 지역(도시·군계획사업 지역,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택지개발사업 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법령상 10만㎡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지역	
인증업무 관련기관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인증기관 :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인증등급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구분		
인증신청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li> <li>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수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선박법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li> <li>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li> </ul>		

## 2.4.2 국내관련사례



### 1) 대전시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 도시 조성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 그 동안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범사업을 도로분야로 확대 추진**하여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2012년 2월 설계공모 시작, 주민설명회 · 전문가 자문 ·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설계 완료
- 설계과정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적용하여 중앙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함
- 사업계획
  - 실제 사업구간 : 대전 용전4가~중리4가 2.4km 구간
  - 사업계획상 고려사항
    1. 최소 도로폭 3.2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
    2. 자전거 도로 및 휴게공간 마련 등 시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
    3. 대상지가 위치한 지역의 낙후도, 최근 보행로 정비시점, 보행자통행량(보행자 서비스 수준), 시범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계획상 사업내용 : 도로상 각종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요인 제거, 안전시설 보완, 도로면 정비(단차 · 재질 · 색상 개선 등), 장애물 구역 녹지대 조성, 도로와 접해있는 주변건축물 진입로 개선, 파고라 ·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전신주 지중화, 가로등교체, 열린 화장실 조성 등 사업구간 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각종 시설개선 사업포함
  - 휠체어 이용자의 기존건물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보도 높이를 일부 상승,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경고용띠를 설치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조성
  - 횡단보도는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용하는 등 보행자 위주로 계획, 특히 동구 계족로는 경관 및 보행에 지장이 되는 전선지중화가 병행추진되고, 서구 보행자전용도로 광장부부에 간이무대를 설치하여 전시, 공연 등 문화공간을 제공

표 2.35 대전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 2) 제주 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2018년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팀(도시디자인담당관 소속)이 신설됨
- 2019년 8월,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알리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탐동 제2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시행
  -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신체적 조건에 따른 화장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요구를 수용해 리모델링에 반영
  - 주 출입구 진입로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램프(기울기 1/18)를 설치하고, 유아를 동반한 가족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을 만들었음

- 또한 휠체어가 화장실 내부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1.4m 이상의 내경을 확보하였고, 수유를 위한 수유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조건의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화장실로 개선함
- 기존 화장실의 리모델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우수등급을 인증 받았고 추후 본인증까지 받을 예정임

표 2.36 제주 탐동 제2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 서귀포초등학교 일대 안전웬스 설치 등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초등학교 주변에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인도 정비, 안전웬스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및 차량 속도 측정을 위한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및 차선 도색 등을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완료
  - 공사 완료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조사 후 사업평가 분석과 함께 향후 사업시행 시 문제점에 대해 개선

표 2.37 서귀포초등학교 일대 안전웬스 설치 등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2.4.3 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기준



### 1) 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관련기관<sup>3)</sup>

#### 가. 유럽 의회 장애인 행동계획 2006-2015

- 모두가 건축 환경, 교통, 제품 및 상품, 정보, 공공서비스, 교육, 고용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 접근함으로써 커뮤니티 라이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유럽의회 장애인 행동계획 2006-2015(the Council of Europe Disability Action Plan 2006-2015)’ 이 수립
- 이 행동계획은 전반적 행동계획부터 정치적 공공생활의 참여, 문화생활의 참여,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고용, 건축환경, 교통 등 15개의 행동방침으로 구성

#### 나. 북유럽 디자인 포 올 행동계획 2005-2007

- 이 행동계획은 북유럽 각료회의(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11))에 의해 2005년 채택

3)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2012.12, pp.67~78

- 장애인의 사회통합 원칙을 기본으로 한 이 행동계획은 북유럽국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발표
- 구성 및 기초
  - 북유럽 각료회의에서 제안된 17개의 유니버설디자인/디자인 포 올 대책들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 : 전반적 전략, 정보 전략, 북유럽 각료회의 산하 기관들에 대한 접근성
  - 이 행동계획은 북유럽장애인정책의회(the Nordic Council on Disability Policy) 사무국에 의해 작성된 제안서에 기초함
- 목표 : 이 행동계획은 디자인 포 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유럽각료회의, 관련 기관들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북유럽 국가 사회 전부가 완전한 접근성을 향해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표임

#### 다. 역사적이며 접근성이 좋은 도시 연맹(League of Historical and Accessible Cities : LHAC)

- 2010년 인권 및 장애 재단의 유럽 콘소시엄(the European Consortium of Foundations on Human Rights and Disability)내에 구성된 LHAC는 유럽재단센터(the European Foundation Center: EFC)의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역사적 도시의 문화유산과 조화되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임
- 유럽 전역의 지자체, 장애인 단체, 건축가와 역사적 도시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태리의 토리노(Torino), 루카(Lucca), 프랑스의 멀하우스(Mulhouse), 덴마크의 비보르그(Viborg), 스페인의 아빌라(Avila)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도시 중에서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 대해서 매년 상을 수여함
- 2012년 완료된 1단계 사업에서는 8개의 기관들이 지자체, 장애인단체, 건축가 및 도시계획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최소 1km의 여정을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상점, 음식점, 미술관과 그밖의 관광명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사업을 시행함

#### 라. 접근이 용이한 관광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 ENAT(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는 유럽지역에서의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관광에 대한 접근성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보장된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로 간주하여 관광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개선 노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음
- 접근성의 부족은 관광객 숫자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수 없으며 관광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
- ENAT멤버로서는 아영지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관계자, 접근성 관련 자문을 하는 단체 및 개인, 장애인·노인 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 건축가나 디자이너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함

#### 마.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계획 2025

- 이 행동계획은 노르웨이가 2025년까지 국가를 유니버설하게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노르웨이 아동 평등부(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가 발간한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The Norwegian government's action plan for universal design and increased accessibility 2009-2013(2009)'에 의하면 2025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노르웨이 국민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노르웨이 아동평등부의 주도로 단계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목표 및 전략과 함께 유니버설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분야를 수록하고 있음

## 바. 영국 Direct Enquires

- 최근 영국에서는 특정 공간이나 건물에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제공
- 2003년 설립된 '다이렉트 인콰이어리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헬체어사용자, 청각·시각 장애인, 유모차 사용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
- 구체적으로 접근성 있는 호텔, 헬스케어(병원), 화장실, 런던 지하철, 식당, 시티가이드, 주점, 관광명소, 교통수단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이곳에 자기들의 접근성 정보를 등록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이렉트인콰이어리스는 이 수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또 협력 파트너 장애인 단체들에 수익금 일부를 지원함

## 사. 미국 장애인법

-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 및 편의제고를 위한 틀을 마련하였음
- ADA는 주법(州法)보다 엄격한 연방법으로 장애인들을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공공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여행과 이동, 물품의 구입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ADA는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의 고용, 공공서비스, 공공교통, 대중이용시설과 장소,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는 전화서비스 등에 있어서 평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미국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됨
- 주요내용
  - 1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 작업환경, 작업절차 등에 적절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호텔, 식당, 상점 등 공공시설에서의 보조기와 서비스 제공 명시
  - 통신사업자의 통신 중계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무선 혹은 유선으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화기 및 서비스 데이터,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등에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아. 일본 국가정책

- 하트 빌딩법
  - 하트빌딩법(Heart Building法)의 정식명칭은 **고령자·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94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신법으로 통합
  - 이 법에서는 백화점, 호텔, 상점, 음식점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주는 건물의 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 단차 없는 출입구와 자동문, 폭넓은 복도, 완만한 경사 계단과 난간, 장애인용 화장실과 주차장, 경사로 등을 설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배리어프리법
  - 정식명칭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 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2000년 제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시행된 장애인신법으로 통합
  -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편의 및 안전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사업자에 의해 기차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또는 철도차량, 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기차역 등의 여객 시설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에서는 시(市)나 구(區)가 만든 기본구상에 따라 배리어프리화를 중점적 또는 일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

## 2) 외국의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 가. 일본

- 일본에서는 배리어프리를 물리적 장벽 개선뿐 아니라 사회의 인식이나 차별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운동, 즉 '복지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진행
- 일본의 동경도는 1996년부터 복지마을 만들기의 '적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가 아닌 자율신청에 의한 것으로 62개 동경도내 자치구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993개 단위건물에 발급되었음
- 일본에서 건축물은 하트빌딩법, 교통수단은 배리어프리법에 의해 관장되고 규제됨
- 2006년 12월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신법은 보다 강화된 건축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건물 면적이 2,000㎡이상인 규모의 건물에서는 배리어프리화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적합증 제도는 규정된 체크리스트로 대상건축물을 검사한 후, 복지마을 만들기 담당부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데 체크리스트 항목에 100%를 만족해야 적합증이 발급되며, 적합증을 발급받으면 도청 홈페이지에 발급받은 건축을 게시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홍보를 해 주고 유효기간은 5년임

### 나. 프랑스

- 프랑스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시설을 인증하는 TH(Tourism & Handicaps) 마크를 운영
-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이나 장애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관광부는 2001년부터 관광협회 및 장애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관광관련시설(숙박시설, 미술관, 다중 레저시설, 레스토랑 등)에 대한 라벨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실시
- TH(Tourism & Handicaps) 즉, 관광시설 인증은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에 4가지 유형의 장애에 대해 라벨을 부여하는데 라벨은 1개에서 4개까지 수준별 시설 평가에 의해 ATH(위원회)에서 제공
- 라벨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기준 2,191개 시설이 라벨이 부여됨

### 다. 독일

- 독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독일 건축법과 DIN(Deutsche Industrie Normen, 독일의 표준규격 규정이며 우리나라의 KS와 같은 규정)이라고 하는 표준제도임
- DIN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독일의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예외 없이 DIN을 적용하고 있으며 DIN 규정 적용에 의해 대부분의 건축물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어짐
- 독일의 표준 제정기관 DIN의 부속기구인 DIN CERTCO에서는 주거건물, 공공건물, 공공장소, 교통 분야, 제품 등이 배리어프리 기준을 만족할 경우 배리어프리 인증마크 DIN을 수여

표 2.38 외국의 배리어프리 인증제도 마크 障碍 適合證

일본 도쿄 無障碍空間 適合證	독일 Deutsche Industrie Normen	프랑스 Tourism & Handicaps
		

## 2.4.4 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1) 일본

#### 시즈오카 현 (静岡県)

- 시즈오카 현의 지역특성과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배경
  - 1996년에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현의 중심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
  - 일본 최초로 유니버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의 모든 부서가 업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전체에 대해 UD화를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배경 : 65세 이상 노인이 24.8%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외국인의 정주(거주)영향이 크며, 시즈오카현은 일본 굴지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혼다, 스즈키 등 자동차 제조와 부품공장이 밀집되어 브라질과 중국 등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후지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한국 등 외국관광객의 교류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 계층인구가 지역주민들과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
  - 시즈오카현의 유니버설디자인정책은 학계와 실천가를 포함하는 'UD위원회' 를 필두로 하여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12개 각 부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UD추진본부가 있고 17명의 사무국(본부 직원 7명, 검무직원 10명)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현의 전략적이며 포괄적인 도시 정책과 복지정책 사업으로 추진
- 버스정류장
  - 버스, 택시, 장애인 공간에서 승·하차 할 때 비에 젖지 않도록 **지붕을 차도 쪽으로 확장**
- 벤치
  - 높이가 다른 벤치를 설치해서, **선호하는 높이의 벤치를 선택**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함
- 다기능화장실
  - 접근 불편의 휠체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배설, 배뇨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도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접을 수 있는 베드를 설치하여 기저귀를 갈게 하는 등 **영유아와 여성,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기능화장실은 성인지 관점에서 남녀 화장실에 따로 설치
  - 다기능화장실은 장애를 강조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으로서 장애인 전용화장실의 개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인 다기능화장실로 개념을 확장하여 발전시킨 사례
- 블라드
  - 차량 등과 보행자간 차단하고 인식하는 역할의 블라드는 금속재나 석재의 경우 보행자의 부상이 우려 되는 바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탄성재질로 제작**
  - **블라드는 페타이어를 재활용**하였는데, 이는 유니버설디자인과 환경 친화적 녹색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됨
- 배수구
  -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보행하다가 많이 걸리고 다치게 하는 **배수로 덮개의 경우 간격을 촘촘히 하여 배수구를 지나가는데 안전하도록 계획**
- 점자블럭
  - 눈이 안좋은 사람들이 유도 블럭을 인식하기 쉽도록 **양측에 사이드 블럭을 설치**
  - **점자블록은 '노란색'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세노바 백화점 내 1층 공간에 짙은 회색 계열의 점자블록을 설치
  - 이는 백화점의 전체 컬러와 미(美)를 고려하여 회색으로 디자인한 것인데 **시각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노란색이 아닌 회색을 결정**함

표 2.39 일본 시즈오카 현(静岡県)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2)

- 일본 지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정책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 시즈오카 현, 구마모토 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일본 지자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정책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 2.4.5 주요유형별 사례



### 1) 공공공간

#### 가. 가로(보도, 차도)

- 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나라의 경우, 폭원 8m 이하 소로의 경우, 보도와 차도간 구분이 없는 반면, 외국사례에서는 폭이 좁은 도로라도 보도와 차도는 구분
  - 불법주차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방지
  - 차도 중심의 우리나라 도로와는 달리 외국사례에서는 보도중심의 도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도로에서 보도의 폭원이 차도폭원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큰 사례도 많은 있음
  - 폭이 넓은 보도의 경우, 2중, 혹은 3중의 교목류를 열식하여 보도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도록 계획
  - 좁은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도 달리 외국사례에서는 8미터 이하의 도로횡단부분에서도 신호등을 설치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도높이가 차도보다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보도에는 차도와 보도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사례가 다수
  - 차도의 폭원은 일정한 대신, 보도의 폭원은 가로폭원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함
  - 폭이 넓은 도로의 경우, 모두 차도로 활용하지 않고 중앙녹지대를 두어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가 동일 폭과 위계를 가지거나 차도보다 더 큰 폭원을 가지도록 구성
  - 우리나라 보도재료는 대부분 블록임에 비해 외국의 보도는 블록뿐 아니라 석재, 판석, 아스콘, 아스팔트 등 다양하게 사용

표 2.40 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좁은 이면도로의 보도(이태리 피렌체)	좁은 이면도로의 보도(스페인 세비아)	좁은 이면도로 보도(오스트리아 그라츠)
		
보행로 보호 볼라드(스페인 비토리아)	보행로 보호 볼라드(스페인 세비아)	보행로 보호 볼라드(프랑스 보르도)
		
2열식재 보도(프랑스 보르도)	2열식재 보도(스페인 부르고스)	좁은도로의 신호등설치(스페인 세비아)
		
같은 높이의 횡단보도와 차도(프랑스)	같은 높이의 횡단보도와 차도(이태리)	같은 높이의 횡단보도와 차도(일본)
		
폭이 가변적인 보도(스페인 부르고스)	폭이 가변적인 보도(스페인 비토리아)	중앙분리녹지대(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중앙분리 가로공원(독일 만하임)	중앙분리 가로공원(독일 만하임)	중앙분리 보도(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표 2.40 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차도축소 보도확대공사(일본 고베)	넓은 폭원의 보도(덴마크 코펜하겐)	차도보다 넓은 보도(영국 뉴캐슬)
		
블럭 보도포장(아일랜드 벨파스트)	석재 보도포장(영국 리버풀)	자연석재 보도포장(스웨덴 스톡홀름)
		

•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 유럽이나 일본, 뉴질랜드 등의 경우, 일방통행 도로가 도입된 사례가 많고, 좁은 도로에서는 보도폭원의 확대로 차도폭원이 1차선이 많음
- 보도변 혹은 중앙의 1차선에 버스 및 택시전용차선을 설치하거나, 1차선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일방전용차로 사례가 나타남
- 차량이 주행하는 차도에서 불법주정차나 불법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연석으로 차단하거나 보도를 설치하여 차량의 주행을 방지
- 불법주정차가 예상되는 역이나 터미널, 도로 등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선을 불라드나 연석, 가드레일 등으로 분리된 형태로 별도로 독립하여 설치
- 차도 이외 부분에 노면페인팅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도높이의 연석을 설치하여 차도의 안전한 주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

표 2.41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일방통행도로(일본 도쿄)	일방통행도로(뉴질랜드 오클랜드)	일방통행도로(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버스일방통행 도로(스위스 취리히)	버스 및 택시중앙차로(벨기에 브뤼셀)	중앙 버스전용차로(독일 함부르크)
		

표 2.41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차도의 과속방지 유니버설디자인

- 차량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삭제하여 교행차량끼리 자연스런 속도저감을 유도
-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는 크랭크형태 혹은 곡선형의 차도를 설치하거나 1차선을 막고 보행로로 활용
- 도로와 접속되는 급경사로는 과속방지를 위해 접속부 인접지점에서 커브형으로 계획하여 자동차의 과속을 방지
-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 차도는 과속방지를 위해 커브형 차도를 조성하여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횡단보도앞의 과속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차선 혹은 차로폭원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음

표 2.42 차도의 과속방지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표 2.42 차도의 과속방지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횡단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차량속도의 감소 등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설치
-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에서는 차선폭원을 축소하여 보행거리를 단축시키는 사례, 혹은 차선을 막는 사례가 나타남
- 백색실선을 도로면에 표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횡단보도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색이나 적색, 황색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두 보도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2개선만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례, 단차는 없으나 포장재료만 다르게 한 사례도 나타남
- 야간의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차도경계부 바닥, 혹은 중앙분리대 횡단보도부분에 조명설치
- 횡단보도의 차도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블라드에 신호등과 같은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 신호등처럼 사용
- 횡단보도 중앙의 분리대를 활용하여 보행신호 종료시 차도 중앙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분리대가 없을 경우, 교통섬을 설치하여 안전대기 장소를 구축하고 야간의 안전확보를 위해 조명 설치
- 보행신호 점멸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를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긋나게 배치하고 중간에 대기공간 확보

표 2.43 횡단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표 2.43 횡단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횡단보도의 길이 축소(호주 시드니)	횡단보도의 차선축소(스페인 빌바오)	횡단보도의 차선축소(룩셈부르크)
		
빨간색상의 횡단보도(스페인 세비아)	파란 색상의 횡단보도(스페인 톨레도)	노란 색상의 횡단보도(스위스 바젤)
		
차도부 단차제거 횡단보도(이태리 피렌체)	포장재료만 달린 횡단보도(미국 시애틀)	폭이 좁은 도로의 보행신호등(호주 멜버른)
		
횡단보도앞 야간 바닥조명(스페인)	횡단보도앞 야간 바닥조명(프랑스 리옹)	횡단보도 중앙부조명(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횡단보도앞 신호겸용 볼라드(스페인 빌바오)		
		
중앙분리대 설치 신호등(프랑스 파리)	횡단보도 중간의 대기공간(스위스 취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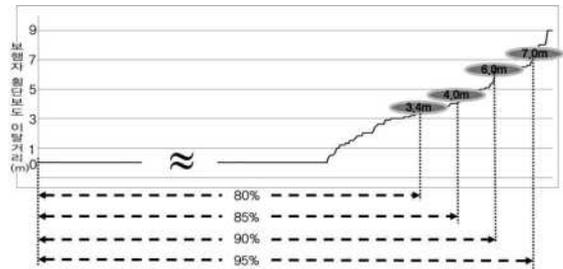
표 2.43 횡단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횡단보도 보행신호 점멸시 보행자가 멀리서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 인접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 횡단보도 교통사고 범위 검토<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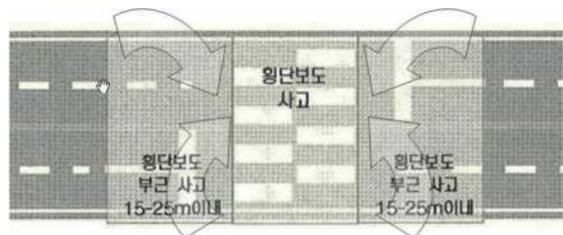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사고범위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실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통행하는 거리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통행하는 거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해본 결과 3.4~7.0m정도로 나타남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사고범위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통행하는 거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해본 결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탈거리는 3.0~5.3m로 분석됨



[그림 6] 보행자별 횡단보도 이탈거리

- 보행자의 보행횡단 행태 모형 분석 결과
  - 중앙분리대 시설이 높게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폭이 좁을수록 신호위반 확률은 높아짐
  - 중앙분리대 시설이 높게 설치되어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신호위반의 위험이 매우 높을 수 있음
  - **횡단보도를 벗어난 횡단 행태 모형**



[그림 7] 횡단보도 및 부근의 사고 범위

**분석 결과, 펜스가 없을 경우, 중앙분리대 시설이 높게 설치된 경우, 교통량이 적을수록, 보행 교통량이 적을수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뛰어서 횡단 행태 모형 결과, 중앙분리대 시설이 높게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폭이 좁을수록, 교통량이 적을수록 보행자가 뛰어서 횡단할 확률이 높아짐

4) 김장욱 외 4인, 횡단보도의 교통사고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1. 8, pp. 121~122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패턴

- 횡단보도 통행시 평균 정지선 거리인 3.3m 이상 떨어져 통행한 비율이 46.5%로 조사되었고, 최대 10m까지 벗어나서 통행함<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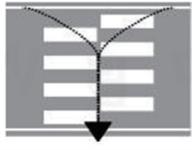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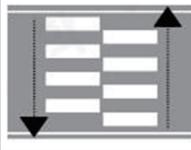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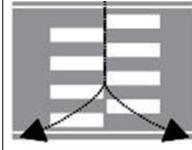
구 분	위반자수			
보행자(인)	637	162	97	414
위반율(%)	100	24.1	14.4	61.5

표 2.44 횡단보도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교차로의 유니버설디자인

- 좌회전 허용부분이 거의 없으며, 좌회전 차도의 경우 좌회전만 가능하도록 차도체계 구축
- 교차로를 보도와 같은 포장,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 교차로에서의 과속방지
- 불법적인 U턴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까지 중앙분리대 설치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 사고 방지
-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충분히 이격하는 한편, 교차로 인접하여 차도바닥 포장이나 색채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

표 2.45 교차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5) 정민영, 횡단보도 사고 범위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 p. 28

표 2.45 교차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 직진위주의 도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좌회전(영국, 일본, 호주 등은 우회전)은 최소한도나 비보호좌회전(혹은 비보호우회전) 위주로 운영하며, 일본의 경우, 우회전을 위해 교차로 중앙까지 차도바닥에 대기선을 표시
- 불법주정차와 무단횡단 방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이 비교적 좁은 도로는 연석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녹지분리대나 보행로, 혹은 가로공원을 설치
- 운전자의 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에 인접한 차도에는 돌포장 등으로 포장재료를 달리하여 설치
- 보행자 중심의 도로에서는 차도폭원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안전 위주로 차도를 구성하고 주행차량이 차선을 넘지 못하도록 보도형 분리대를 설치

표 2.46 차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표 2.46 차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보도분리대를 설치한 1개차선 및 2개차선의 양복 3차로 차선 (프랑스 보르도)	차도폭을 최소화한 도로 (스페인 부르고스)	교량의 차도와 보도 (스페인 바야돌리드)
		

- 보도뿐 아니라 차도 전체에 크게 자라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음의 터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여름에는 모두에게 시원한 가로를 제공
- 유럽에서 차도는 보도와 달리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하여 과속을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차도, 노면전차 등 도로 위 차량동선과 같은 폭원을 가지거나 오히려 더 큰 폭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차도보다 보행중심, 자전거 중심의 도로체계 구성

표 2.47 차로의 포장 및 차로의 위계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가로수 그늘을 드리운 차로 (프랑스 아비뇽)	가로수 터널(독일 만하임)	가로수 터널(일본 후쿠오카)
		
돌포장 차도(스페인 사라고사)	벽돌포장 차도(독일 프랑크푸르트)	옛 돌포장 차도(프랑스 툴루즈)
		
보도/차도/트램선로의 동등성 (스페인 빌바오)	차도/보도/식재공간/트램선로 (프랑스 몽펠리에)	넓은 보도폭원 사례 (프랑스 파리)
		
보도 중심의 도로 (스위스 취리히)	보도 중심의 도로 (프랑스 디종)	보도 중심의 도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표 2.47 차로의 포장 및 차로의 위계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육교 · 지하도의 유니버설디자인

- 비교적 횡단보도의 폭이 넓은 도로의 경우, 육교설치시 대부분 계단과 경사로를 모두 두어 일반인들뿐 아니라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하고, 주요교차로에 설치되는 육교는 교차로 전체를 순회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육교를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로 디자인하여 편의성과 도시의 랜드마크 요소로 활용하고, 도로의 하부 통로는 단순한 통과도로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통한 조형적인 공간으로 조성

표 2.48 육교 · 지하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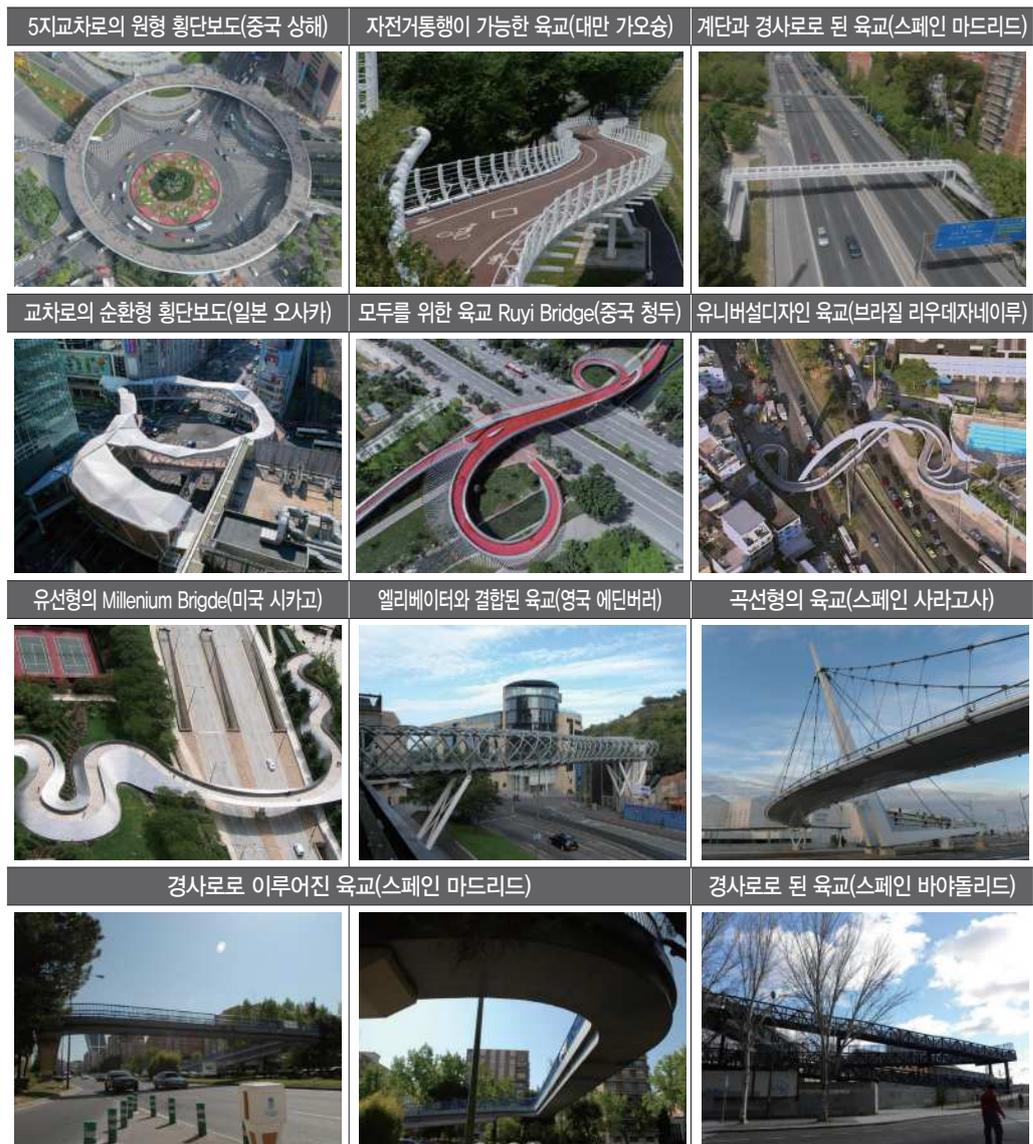


표 2.48 육교 · 지하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경사로의 유니버설디자인

-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 일반인 등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차가 발생하는 가로나 지역에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
- 급경사 지역에는 경사로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완경사 지역에는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되, 계단 내에 경사로를 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지의 경우,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경사로가 필요하므로 지그재그 형태로 구성

표 2.49 경사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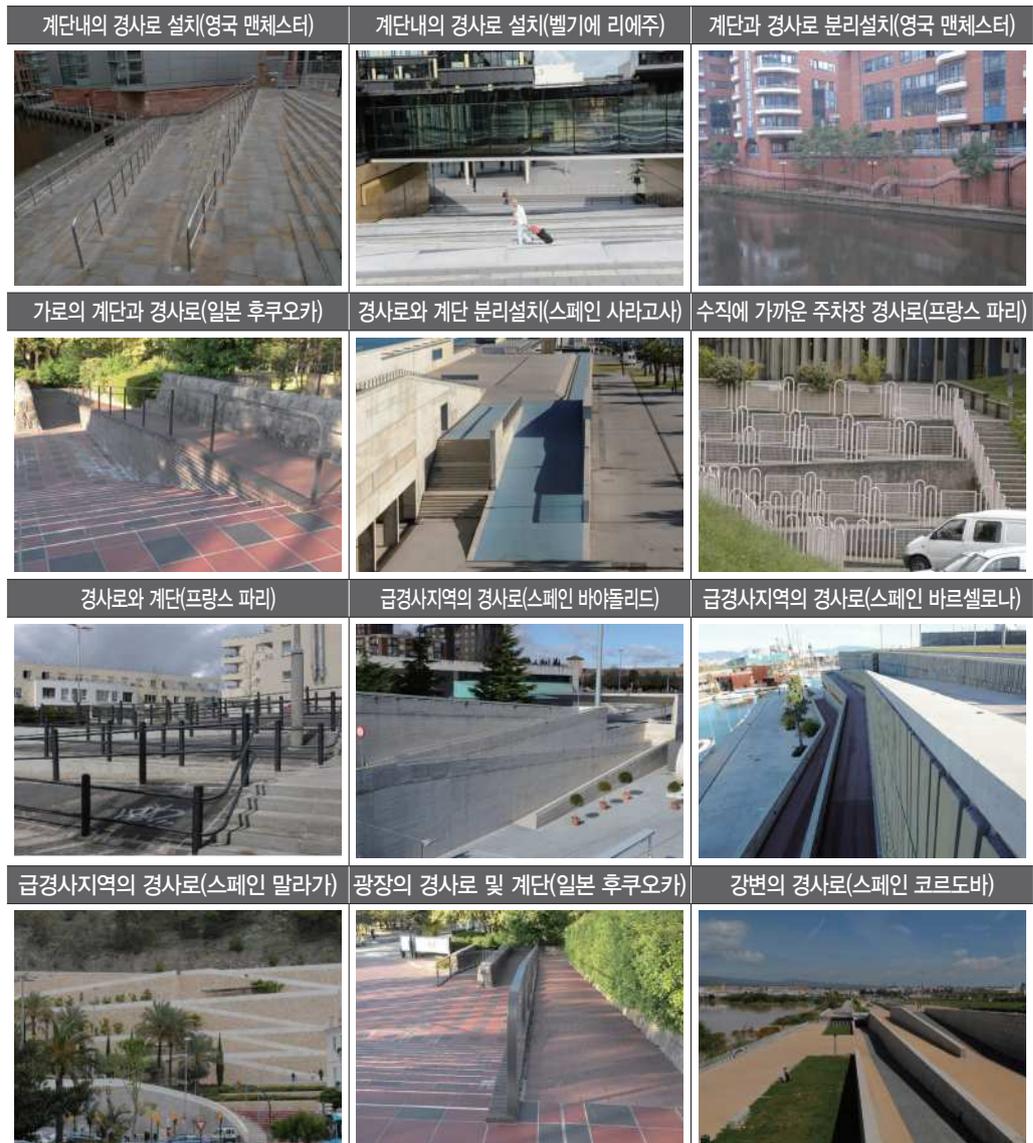


표 2.49 경사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도로의 진입방지 시설

- 차도나 보도, 자전거도로 등의 경우, 차량이나 자전거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나 장치들을 설치
- 진입방지시설의 대표적인 것이 볼라드(Bollard)이며, 다양한 형태의 볼라드가 존재하고 있는데, 고정막대형, 자동볼라드형, 연석형, 특정장치출입형 등이 있음
- 휠체어이용자와 보행자를 제외하고 공원·광장, 보행도로 등에 출입을 방지하는 시설 설치

표 2.50 도로의 진입방지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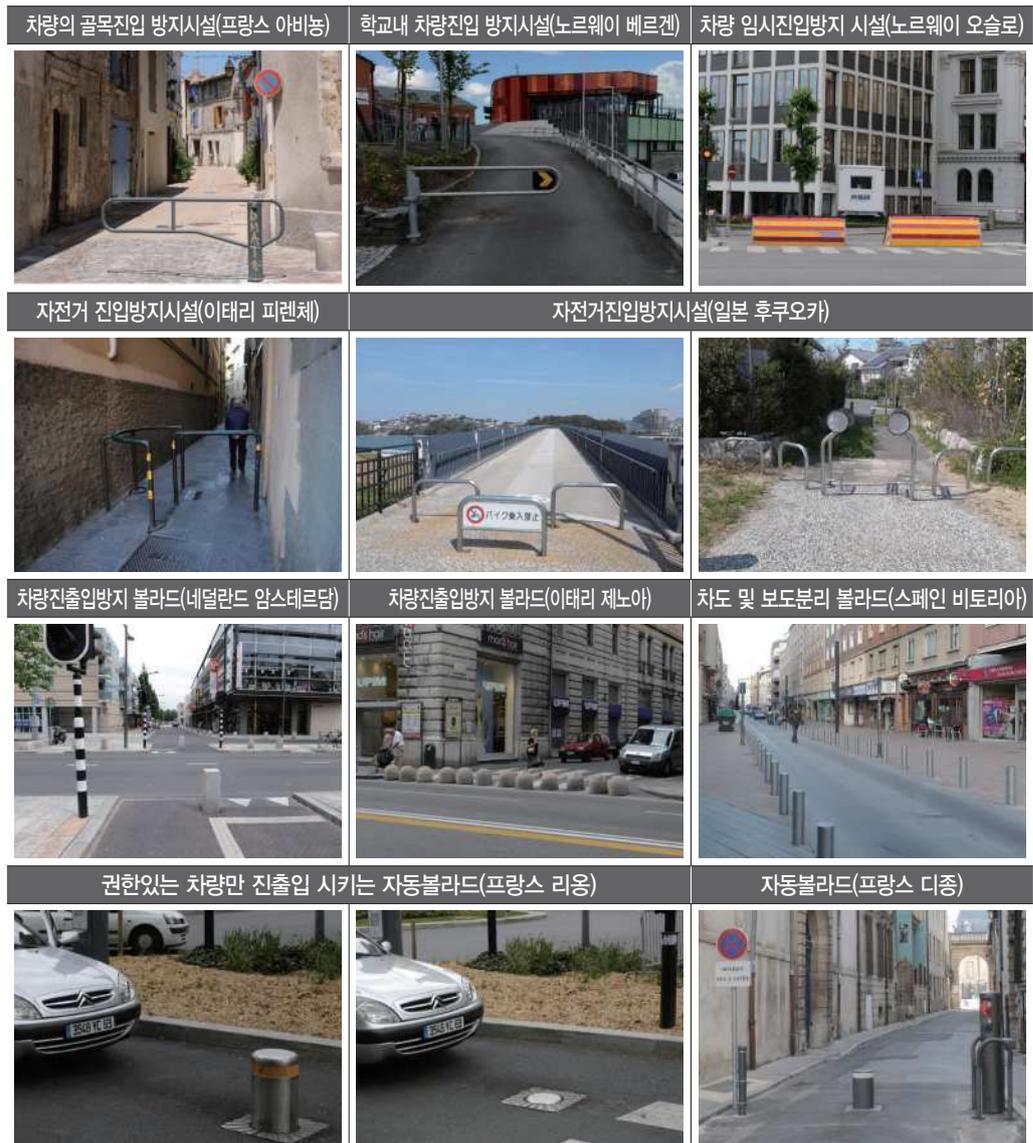


표 2.50 도로의 진입방지 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야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 일반적으로 야외의 엘리베이터는 경사로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나 경사도가 있더라도 높은 단차 때문에 경사도가 너무 길게 형성될 경우에 설치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계단도 함께 설치하여 신체의 장애정도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표 2.51 야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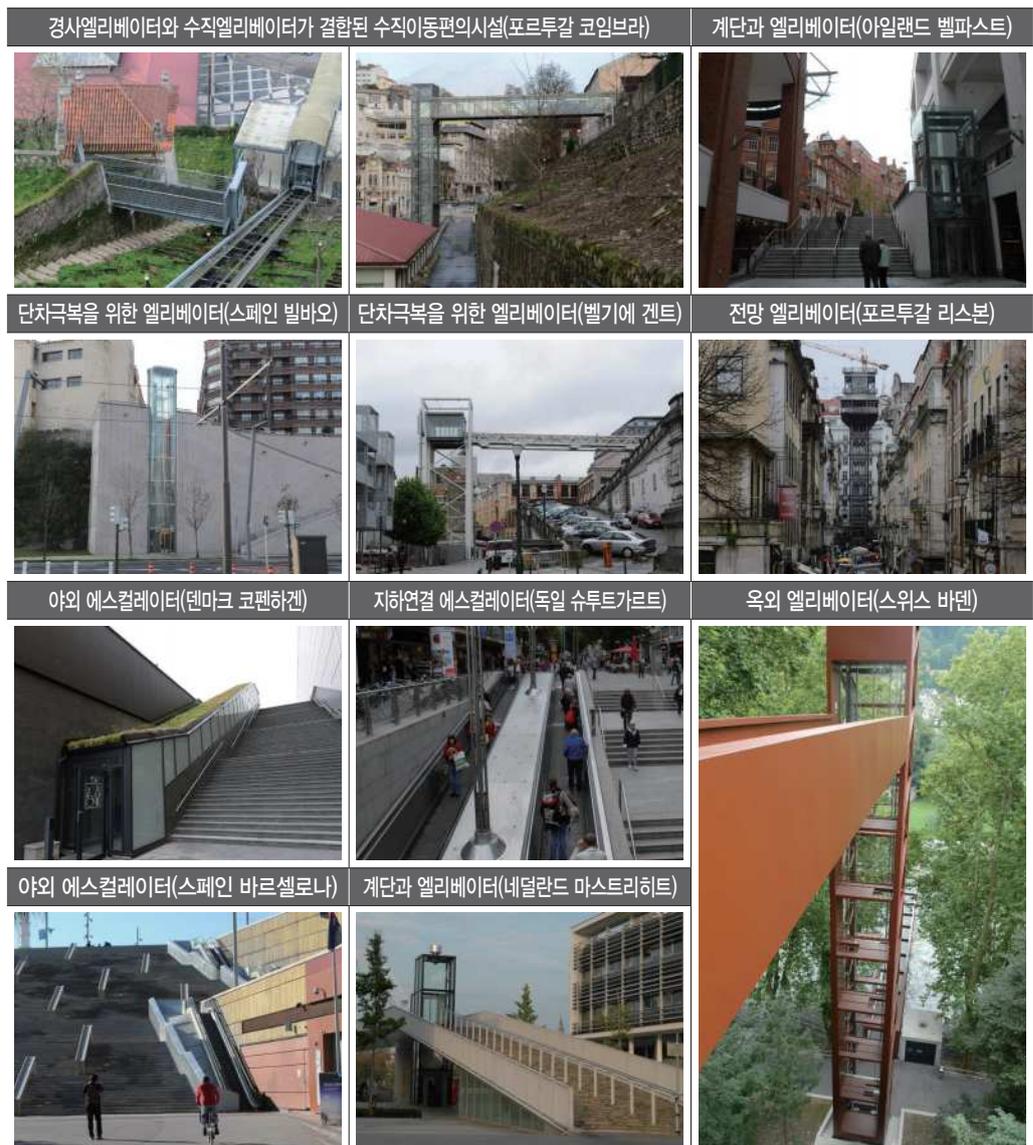


표 2.51 야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나.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 도로변 자전거도로

- 일본의 경우, 대부분 보도를 자전거겸용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에 비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전거를 위한 별도의 자전거도로체계를 구축
- 선진국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에 설치되는 경우라도 기존의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완전히 차도 및 보도와 분리되어 설치되는 사례도 있음
  1. 보도 설치
  2. 차도 설치 : 차로의 보도변에 설치, 차로 중앙에 설치
  3. 보도와 차도 사이 분리설치
  4. 자전거전용도로
-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통행이 버스대기자의 공간과 상충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표 2.52 자전거도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표 2.52 자전거도로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바닥사인

- 폭이 좁은 이면도로는 편측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의 1개 차선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차량주행과 반대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
- 차도나 보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바닥을 적색이나 청색, 녹색 등으로 포장
- 도로 편측으로 양방통행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양방도로의 경우, 각각 보도측으로 일방통행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일방통행과 양방통행 표시를 바닥에 분명하게 구분
- 도로여건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과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의 위치 또한 도로 중앙, 혹은 보도측 차도, 인도 등에 융통성있게 설치
- 자전거도로를 일반차도처럼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자전거표지를 주변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

표 2.53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바닥사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표 2.53 자전거도로의 포장과 바닥사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교차로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육교
  - 교차로의 자전거도로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전거통행의 연속성과 편의성 증진
  - 교차로 구간에서는 자전거도로 색상을 달리하거나 모두가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바닥 표시를 하여 통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를 차도와 동일한 위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는 별도로 자전거 대기공간을 차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
  - 교차로 등에서 자전거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를 탄채로 육교를 건너거나 자전거를 끌고 육교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 육교를 다양한 형태로 설치

표 2.54 교차로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육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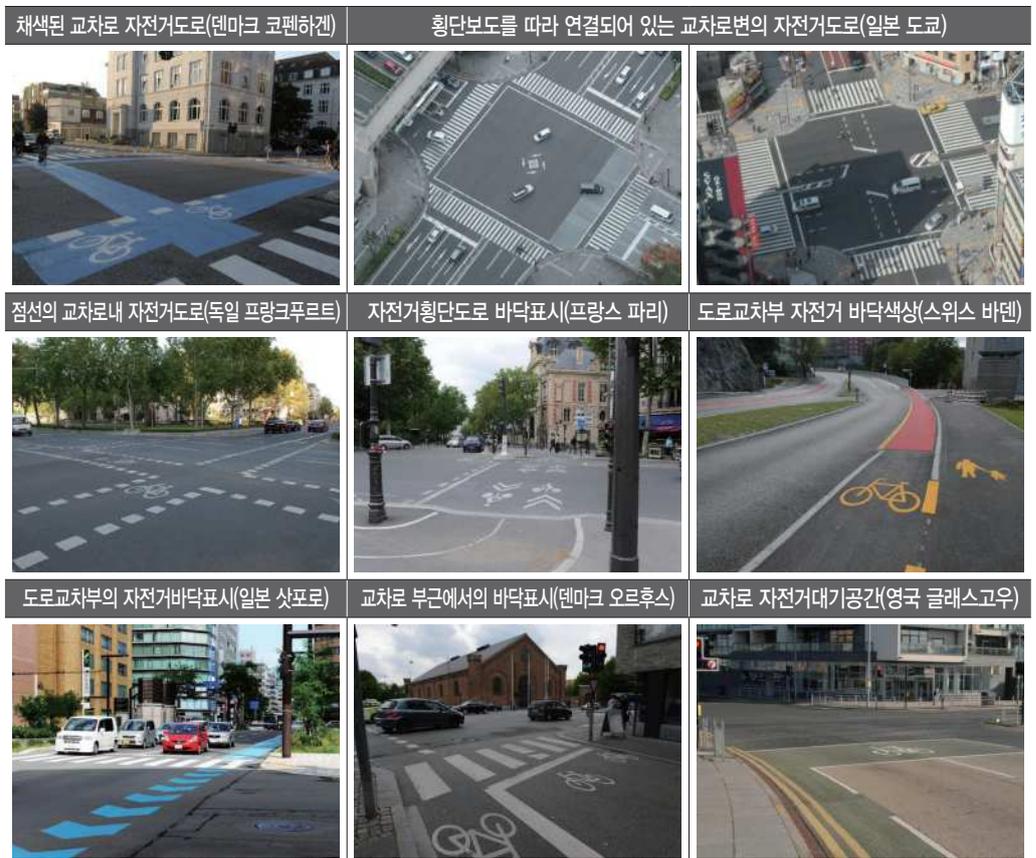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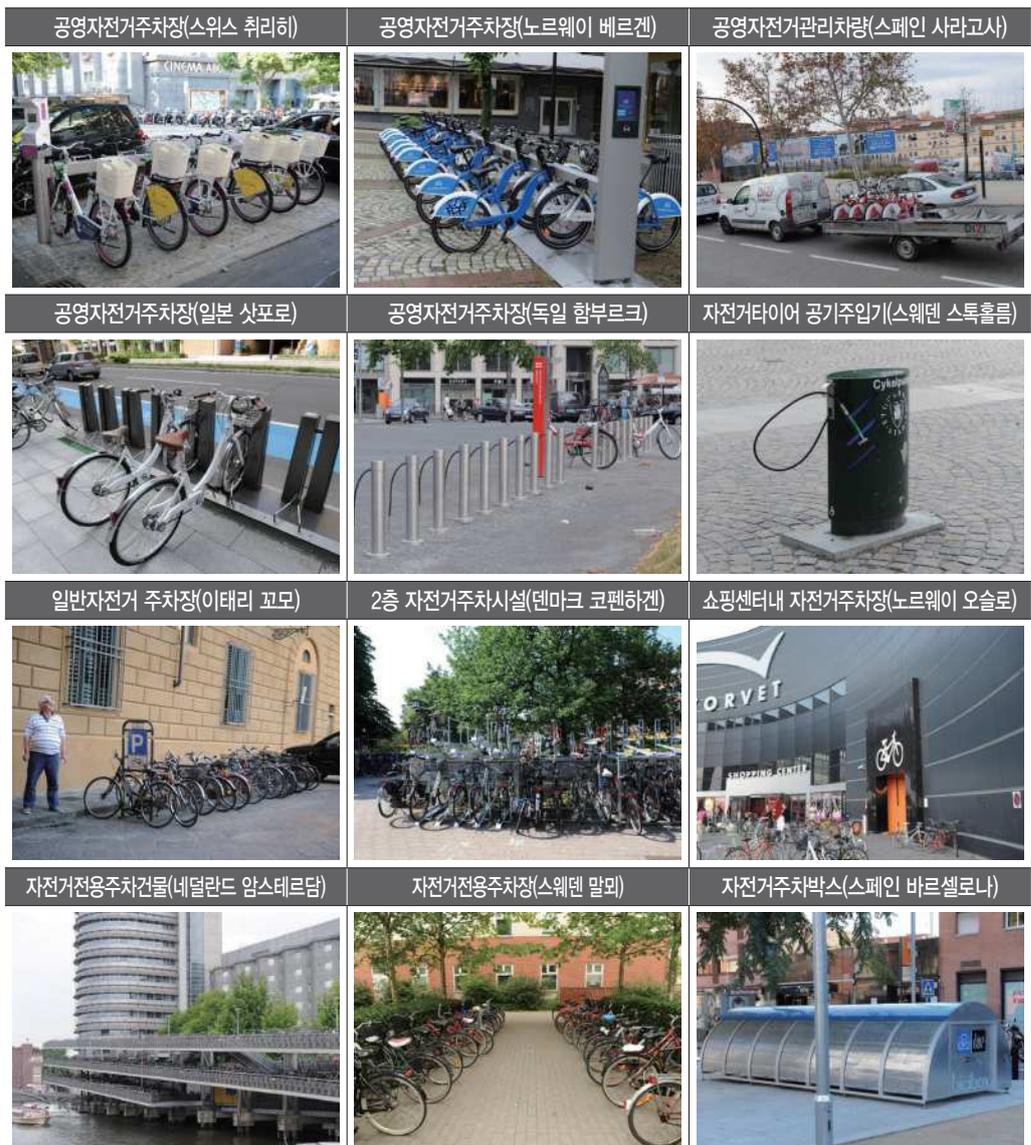
표 2.54 교차로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육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자전거주차장

- 자전거주차장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영 자전거주차장과 일반 자전거주차장으로 구분되며, 공영자전거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일반자전거와는 분명하게 구분됨
- 공영자전거주차장은 일반자전거주차장과 분리되어 설치되나 지역에 따라서는 통합하여 설치하기도 하며, 자전거 튜브 공기주입기도 함께 설치
- 자전거주차장을 위한 자전거거치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도로여건이나 주차장소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설치됨
- 자전거주차공간은 독립된 자전거주차전용구조(건축)물, 노상자전거전용주차장, 보도나 건물 한켠에 설치된 주차시설, 건축물내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주차박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표 2.55 자전거주차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GYEONGSANGNAMDO UNIVERSAL DESIGN  
GUIDELINE

## Part 2





# III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개발

## 3.1 경상남도 특성분석

- 3.1.1 경상남도 자연적 특성
- 3.1.2 경상남도 인문학적 특성
- 3.1.3 소결

## 3.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 구상

- 3.2.1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책과 비전
- 3.2.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및 구성
- 3.2.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3.3 각 영역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3.3.1 공공 공간
- 3.3.2 공공 건축물
- 3.3.3 공공 시설물
- 3.3.4 공공 서비스
- 3.3.5 공공정보 매체

## 3.4 경상남도 지역 특색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4대 적용 권역

- 3.4.1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4대 권역 설정
- 3.4.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4대 권역별  
가이드라인

## 3.5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 3.5.1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설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 3.5.2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구성방법과  
세부내용
- 3.5.3 각 영역별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 III.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개발

## 3.1 경상남도 특성분석

### 3.1.1 경상남도 자연적 특성



• 경상남도의 입지

-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부산·울산광역시와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해 있음
-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의 달성, 경북의 청도, 고령, 성주, 김천과 접경
- 서쪽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무주, 장수, 남원, 전라남도의 구례, 광양과 접해 있음
- 위도상 일본의 교토(京都)와 나고야(名古屋), 지중해상 키프로스(Kypros), 미국의 오클라호마(Oklahoma) 등과 비슷
- 경상남도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4도 29분에서 35도 54분, 동경 127도 34분에서 129도 13분에 걸쳐 있음

표 3.1 경상남도의 지리적 좌표

경도 및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방위	지명	극점	
극동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 66	동경129° 13' , 북위35° 24'	동서 150km, 남북 158km
극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372	동경127° 34' , 북위35° 18'	
극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2	동경128° 05' , 북위34° 29'	
극북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 17	동경127° 53' , 북위35° 54'	

• 행정구역 및 면적

- 행정구역 : 18개 시·군과 320개 읍·면·동으로 구성됨
- 경상남도의 현재 면적은 10,522.71 km<sup>2</sup>로서, 남한전체면적 99,678.12km<sup>2</sup>의 약 10.6%를 차지하며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강원·전남에 이어 4번째 크기
- 경남은 또 섬이 많은 도로서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400여 개의 섬이 전체 면적의 약 8.5%를 차지



[그림 3.1] 경남의 지리적 위치와 시·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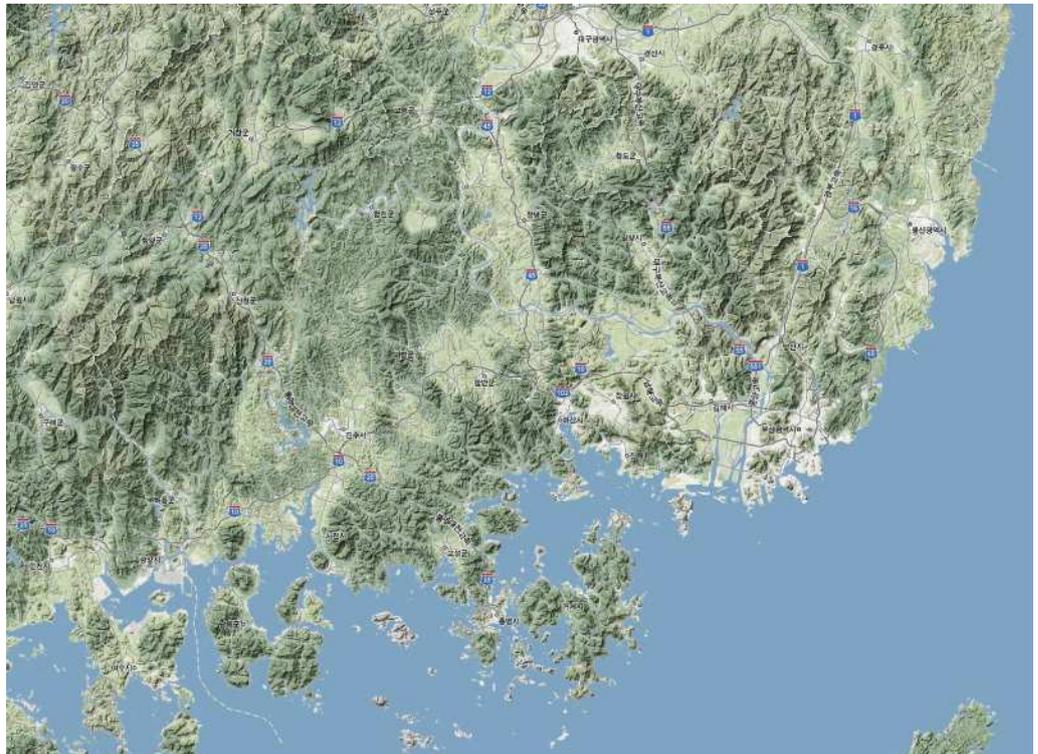
• 기후

-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저위도이고, 남쪽에는 바다에 접하여 바다의 영향이 크며 북서쪽에는 높은 산맥이 가로 놓여 있어 겨울의 찬 서북풍을 막음으로써 기후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하여 온화한 편
- 경남내륙지방의 연평균기온은 12~13℃, 강수량은 1,200~1,500mm이며 1월과 8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5℃, 25.1℃임

- 경남해안지방의 연평균기온은 14~15℃, 강수량은 1,400~1,800mm이며 1월과 8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2.3℃, 25.9℃임

#### • 지형

-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이 뻗어 있고, 중앙부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비교적 험준한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지대는 표고(標高) 100m 이하의 저지대가 37%, 100~500m 지대가 49%, 500~1,000m의 지대가 12%,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2%에 불과
- 동부 산악지대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인 천황산(1,189m), 신불산(1,209m) 등 발달
- 중앙 저지대는 낙동강 강변 지대로 낙동강은 본도에 들어와서 각 지류를 합하여 남해로 유입하는데 하류의 김해 지방에서 삼각주 평야를 이루고 있음
- 서부 산간지대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1,915m), 덕유산(1,614m), 백운산(1,279m) 등 고봉(高峯)이 이어 있으며, 특히 지리산 주변이 가장 험준한 것으로 나타남
- 남해안은 소백산맥의 남쪽 말단부가 침몰하여 수심이 깊고 출입이 심한 만입과 크고 작은 섬이 산재하는 다도해를 이루고 있음



[그림 3.2] 경남의 지형

### 3.1.2 경상남도 인문학적 특성



#### 1)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 및 가구현황

- 경상남도 인구는 2018년, 전국대비 6.5%이며, 주택은 7.0%를 차지(2010년과 동일함)
-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함안, 창녕, 김해, 거제, 의령, 고성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수는 김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원, 거제, 진주, 통영, 함안 순이어서 2010년 당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창원과 사천에서 신흥공단으로 많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3.2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 및 가구·주택현황(2017년, 단위 : 명, 호, 가구)

구분	인구(명)			가구				주택(호)	
	소계	내국인	외국인	계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전 국	현황	51,422,507	49,943,260	1,479,247	20,167,922	19,673,875	15,949	478,098	17,122,573
	비율	100.0	97.1	2.9	100.0	97.6	0.1	2.4	100.0
	읍부	9.3	96.5	3.5	9.2	97.4	0.1	2.5	10.2
	면부	9.4	95.0	5.0	10.2	97.1	0.2	2.7	12.1
	동부	81.3	97.4	2.6	80.7	97.6	0.1	2.3	77.7
전 국 대 비	현황	3,345,293	3,254,221	91,072	1,318,106	1,292,998	1,113	23,995	1,193,912
	전국대비	6.5	97.3	2.7	6.5	98.1	0.1	1.8	7.0
	읍부	14.8	97.8	2.2	14.3	98.3	0.1	1.7	15.5
	면부	20.5	95.3	4.7	22.4	97.4	0.2	2.4	25.8
	동부	64.7	97.8	2.2	63.3	98.3	0.1	1.6	58.7
경 남 대 비	현황	1,045,559	1,026,091	19,468	401,678	395,762	258	5,658	334,002
	경남대비	31.3	98.1	1.9	30.5	98.5	0.1	1.4	28.0
	의창	24.0	98.1	1.9	24.0	98.4	0.1	1.6	20.9
	성산	21.7	97.8	2.2	20.4	98.5	0.1	1.5	21.2
	합포	17.1	98.6	1.4	18.1	99.1	0.1	0.8	19.0
	회원	19.4	98.6	1.4	19.4	98.8	0.1	1.1	19.1
	진해	17.9	97.7	2.3	18.1	97.9	0.0	2.0	19.8
진주시	10.6	98.4	1.6	10.5	98.9	0.1	1.0	9.6	
통영시	4.0	96.7	3.3	4.1	97.7	0.1	2.2	4.1	
사천시	3.3	96.8	3.2	3.5	98.4	0.1	1.5	3.8	
김해시	16.0	95.6	4.4	15.1	96.7	0.1	3.2	14.2	
밀양시	3.1	97.1	2.9	3.4	98.1	0.1	1.8	3.9	
거제시	7.7	96.1	3.9	7.4	97.1	0.1	2.8	7.8	
양산시	9.9	97.8	2.2	9.7	98.4	0.1	1.6	10.3	
의령군	0.8	96.4	3.6	0.9	98.2	0.2	1.6	1.1	
함안군	2.0	93.7	6.3	2.1	96.5	0.2	3.3	2.4	
창녕군	1.9	95.2	4.8	2.1	97.4	0.2	2.4	2.3	
고성군	1.6	96.6	3.4	1.7	98.0	0.2	1.8	2.0	
남해군	1.3	97.8	2.2	1.5	98.8	0.1	1.1	1.9	
하동군	1.3	98.5	1.5	1.5	99.0	0.1	0.9	1.7	
산청군	1.0	97.8	2.2	1.2	98.6	0.2	1.2	1.4	
함양군	1.1	98.7	1.3	1.3	99.2	0.1	0.6	1.5	
거창군	1.8	99.0	1.0	1.9	99.2	0.1	0.7	2.2	
합천군	1.3	98.4	1.6	1.5	99.1	0.1	0.8	1.9	

※ 출처 :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괄호( )안은 가구수

- 시군별 외국인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2/3 가량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은 서울과 경기지역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수와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2011년과 비교하면 외국인 주민수는 급증하고 있음
- 경남지역을 18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과 김해, 거제가 경남 전체의 57% 정도로 절반을 훨씬 넘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군지역의 경우, 함안의 외국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zz

표 3.3 우리나라 시도별 및 경상남도 시군별 외국인 주민현황(2015년, 단위 : 명, %)

구 분	외국인 주민 수 및 비율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주민 세대수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외국인	소 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전국	수	1,711,013	1,363,712	573,378	144,912	82,181	216,213	347,028	149,751	93,249	56,502	197,550	299,241
	비율	3.35	79.70	42.05	10.63	6.03	15.85	25.45	8.75	62.27	37.73	11.55	100
서울		23.85	82.61	30.28	8.18	9.23	23.94	28.37	9.93	50.44	49.56	7.46	21.39
부산		3.39	75.88	37.27	14.81	13.98	8.37	25.57	8.36	70.95	29.05	15.77	4.29
대구		2.27	75.28	39.96	15.54	9.74	7.96	26.81	8.21	73.64	26.36	16.51	2.86
인천		5.23	75.80	40.54	12.87	3.57	14.57	28.45	10.97	60.09	39.91	13.23	6.15
광주		1.70	74.12	34.48	14.61	15.77	7.83	27.31	8.41	78.03	21.97	17.47	2.07
대전		1.51	73.71	17.36	17.64	26.99	9.21	28.80	8.67	71.49	28.51	17.62	2.04
울산		2.16	80.81	46.24	10.19	3.36	16.53	23.68	7.35	73.10	26.90	11.84	2.03
세종		0.33	80.27	43.01	11.72	11.68	11.07	22.52	6.64	70.54	29.46	13.09	0.31
경기		32.12	82.37	47.24	8.79	2.19	17.15	24.64	8.47	59.45	40.55	9.16	28.17
강원		1.59	67.17	34.17	20.03	11.24	8.71	25.85	10.66	75.22	24.78	22.17	2.44
충북		3.04	78.27	46.80	12.02	5.65	12.65	22.88	8.12	70.99	29.01	13.61	3.12
충남		5.15	80.60	47.44	11.02	5.85	13.26	22.42	7.03	69.74	30.26	12.37	4.92
전북		2.58	67.74	37.31	19.13	9.14	6.66	27.75	10.21	79.29	20.71	22.05	3.77
전남		2.97	68.05	48.61	19.57	3.55	6.38	21.89	9.30	78.01	21.99	22.66	4.26
경북		4.38	76.84	50.46	12.87	7.63	7.34	21.71	7.45	74.57	25.43	15.72	4.77
제주		1.14	77.58	42.14	13.99	6.95	9.71	27.21	6.80	64.58	35.42	15.63	1.32
경남	수	112,387	90,361	52,900	9,249	1,671	7,040	19,501	7,550	5,883	1,667	14,476	18,238
	비율	6.57	80.40	58.54	10.24	1.85	7.79	21.58	6.72	77.92	22.08	12.88	6.09
창원		21.98	79.05	53.78	12.72	2.92	10.11	20.48	7.59	77.92	22.08	13.36	1.56
진주		6.14	71.41	44.23	14.78	11.86	5.02	24.11	9.17	80.22	19.78	19.42	0.51
통영		5.60	80.93	67.03	10.00	0.16	8.13	14.68	6.41	78.16	21.84	12.66	0.33
사천		3.94	81.12	64.45	9.52	*	5.87	20.07	6.14	79.78	20.22	12.74	0.23
김해		22.21	86.57	66.09	6.84	1.35	8.61	17.12	5.04	75.46	24.54	8.39	0.96
밀양		2.73	75.42	61.09	13.23	1.17	5.19	19.33	7.11	81.65	18.35	17.48	0.20
거제		12.80	86.18	52.69	7.12	0.19	4.91	35.08	4.38	75.40	24.60	9.44	0.55
양산		7.87	78.14	54.32	11.59	1.45	9.61	23.04	8.12	72.98	27.02	13.74	0.54
의령		1.06	77.12	64.01	12.10	*	7.42	16.25	7.65	84.62	15.38	15.22	0.07
함안		4.64	85.80	69.58	6.57	0.33	5.56	17.95	4.96	78.38	21.62	9.24	0.19
창녕		2.63	81.07	63.74	9.31	*	9.27	17.50	6.47	83.77	16.23	12.46	0.15
고성		2.45	80.64	60.88	10.33	0.32	6.63	21.84	6.19	78.24	21.76	13.17	0.14
남해		1.20	71.60	65.08	13.64	0.93	6.61	13.74	10.06	80.88	19.12	18.34	0.10
하동		0.97	60.33	45.97	26.94	-	3.81	23.29	11.20	81.97	18.03	28.47	0.11
산청		0.87	65.07	57.14	17.58	*	6.75	18.21	10.11	83.84	16.16	24.82	0.08
함양		0.98	50.68	37.77	25.18	-	6.65	30.40	15.22	82.63	17.37	34.09	0.12
거창		0.96	48.70	33.08	28.87	4.40	7.27	26.39	15.64	80.95	19.05	35.66	0.12
합천		0.99	58.49	39.48	23.04	*	7.53	29.80	12.58	82.86	17.14	28.93	0.11

※ 출처 : 통계청, 주제별통계, 인구가구<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2015년(이후)총괄>시군구별 외국인주민현황  
\*은 5인 미만

2) 경상남도  
각 시군  
연령별  
분포현황

- 경남의 연령분포는 전국대비 15세미만 인구와 65세이상 인구비율이 높고 15~65세 인구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이거나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령화정도가 크게 나타남
- 경남의 시군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시지역은 군지역에 비해 40대까지의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의 비율은 낮아 2010년과 비교하여 연령별 분포는 유사한 현황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타연령층에 비해 경남 각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시지역이 12.5%(2010년 9.3%)인 반면 군지역은 30.2%(2010년 31.4%)로 높아 농촌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하나 2010년과 비교하면 15세미만 비율이 높고 65세이상 비율이 낮아 고령화 현상이 약화되었음
- 15세 미만 인구비율은 거제(18.4%)가 제일 높고 합천(7.3%)이 제일 낮으며, 65세 이상은 거제(8.6%)가 가장 낮고 합천(37.8%)이 가장 높음

표 3.4 경상남도 각 시군의 연령별 인구분포 현황(2017년, 단위 : %)

구분	연령별 인구분포비율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평균 연령	중위 연령
	0~9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b>전국</b>	8.7	10.3	13.1	14.3	16.7	16.4	10.9	6.6	3.1	13.3	72.5	14.2	41.4	42.4
읍부	10.0	11.0	11.2	13.8	16.7	15.7	10.7	7.2	3.7	15.0	69.5	15.5	41.5	42.6
면부	6.1	7.3	9.5	9.7	12.2	17.7	16.2	13.2	8.0	9.1	62.3	28.6	49.8	53.4
동부	8.9	10.6	13.7	14.8	17.2	16.3	10.4	5.8	2.5	13.6	74.0	12.5	40.5	41.3
<b>경남</b>	9.4	10.5	11.1	13.7	16.8	16.9	11.4	6.7	3.5	14.1	70.8	15.0	41.9	43.5
읍부	10.8	11.2	10.5	14.2	17.0	15.8	10.7	6.4	3.4	16.0	69.7	14.4	40.9	42.2
면부	7.2	7.1	7.7	10.5	12.8	17.6	16.3	12.8	8.0	10.5	61.3	28.2	49.6	53.1
동부	9.7	11.4	12.4	14.5	18.0	16.9	10.0	4.9	2.1	14.9	74.0	11.1	39.8	41.3
<b>창원</b>	9.1	10.5	12.6	14.4	17.0	17.8	11.0	5.2	2.3	13.8	74.2	12.0	40.7	42.3
의창	8.6	10.3	14.2	14.0	16.9	18.9	10.4	4.5	2.2	12.8	76.5	10.7	40.5	42.2
성산	8.9	12.1	14.7	14.6	18.9	19.6	7.6	2.6	1.2	14.2	79.5	6.3	38.1	39.8
합포	7.9	9.0	11.4	13.4	14.7	17.2	14.6	8.0	3.7	11.7	70.5	17.9	44.0	46.0
회원	8.2	10.4	12.0	13.1	16.7	17.8	13.1	6.3	2.4	13.0	72.9	14.2	42.2	44.1
진해	12.2	10.7	9.6	16.9	17.6	14.5	10.4	5.6	2.5	17.8	69.8	12.4	39.5	40.3
진주	8.8	11.5	13.6	12.8	16.3	16.0	11.0	6.6	3.2	13.7	71.8	14.5	41.1	42.3
통영	10.0	9.8	8.4	13.9	16.8	17.2	13.2	7.4	3.4	14.8	68.7	16.5	43.0	44.9
사천	9.4	9.4	8.9	12.9	16.1	16.0	13.1	9.1	5.1	13.9	66.0	20.0	44.4	46.0
김해	10.6	12.4	12.0	14.4	19.5	16.3	8.5	4.4	2.0	16.4	73.8	9.8	38.7	40.4
밀양	6.5	8.2	8.8	9.8	13.1	18.9	17.1	11.3	6.3	10.2	64.7	25.1	48.4	52.2
거제	13.0	11.1	9.8	19.0	19.0	14.5	8.1	3.6	1.9	18.4	72.9	8.6	37.5	38.5
양산	11.2	10.5	11.4	15.9	17.6	16.0	9.9	5.3	2.3	16.0	72.4	11.7	39.6	40.7
<b>시평균</b>	<b>9.9</b>	<b>10.9</b>	<b>11.7</b>	<b>14.5</b>	<b>17.4</b>	<b>16.7</b>	<b>10.6</b>	<b>5.6</b>	<b>2.6</b>	<b>14.9</b>	<b>72.6</b>	<b>12.5</b>	-	-
의령	5.1	6.6	6.9	7.4	11.4	17.4	17.4	16.1	11.7	7.9	56.0	36.0	53.7	57.6
함안	8.7	9.4	8.6	11.2	15.4	17.2	14.1	9.8	5.7	13.2	65.3	21.6	45.7	48.0
창녕	6.3	7.8	8.4	9.4	12.2	18.2	16.7	13.3	7.6	9.3	62.2	28.5	49.8	53.8
고성	6.8	8.8	7.2	9.8	13.3	17.4	16.2	12.6	7.9	10.4	61.6	28.0	49.3	52.7
남해	4.4	8.0	7.1	6.3	11.7	17.5	17.5	16.0	11.4	7.4	56.6	36.0	53.6	57.4
하동	5.4	7.0	7.3	7.4	12.8	18.7	17.1	14.6	9.7	8.7	59.1	32.2	52.2	55.9
산청	5.3	7.1	6.4	7.3	11.5	18.3	17.7	16.1	10.2	8.4	57.4	34.3	53.1	57.0
함양	5.8	8.4	6.4	7.8	12.9	17.5	16.5	15.1	9.4	9.6	58.2	32.2	51.6	55.4
거창	7.3	10.3	8.8	9.1	13.8	16.9	14.4	11.8	7.5	11.5	62.7	25.8	47.5	50.4
합천	4.5	6.4	6.3	6.9	11.1	17.8	17.9	17.7	11.4	7.3	54.9	37.8	54.7	58.5
<b>군평균</b>	<b>6.2</b>	<b>8.2</b>	<b>7.5</b>	<b>8.6</b>	<b>12.9</b>	<b>17.7</b>	<b>16.3</b>	<b>13.8</b>	<b>8.8</b>	<b>9.7</b>	<b>60.1</b>	<b>30.2</b>	-	-

※ 출처 :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내국인(특별조사구, 집단가구(집단시설가구 포함) 포함) 대상 집계(외국인 제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5인미만 자료는 x로 표기

3) 경상남도  
각 시군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  
분포현황

-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파트, 주택이외의 거처 (주로 오피스텔이 많음), 다세대, 비거주용, 연립주택 순으로 전국과 경남이 동일함
- 경남의 단독주택 1인가구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반면, 아파트는 유사하며, 주택이외의 거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단독주택의 1인가구 거주비율은 남해가 가장 높고 양산이 가장 낮은 반면, 아파트 거주비율은 양산이 가장 높고 합천이 가장 낮음

표 3.5 경상남도 각 시군별 1인가구 거처의 종류별 분포 현황(2017년, 단위 : 호, %)

구분	일반 가구수	1인 가구수	일반가구대비		주택(가구)						주택이외거처
			비율	점유율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전국	19,673,875	5,618,677	28.56	100.0	90.6	49.21	28.58	1.67	8.92	2.18	9.44
읍부	1,798,810	499,489	27.8	8.9	93.0	52.46	30.91	2.72	5.13	1.83	6.96
면부	1,993,849	677,415	34.0	12.1	92.9	77.44	10.96	0.98	2.15	1.40	7.08
동부	15,881,216	4,441,773	28.0	79.1	89.9	44.55	31.01	1.66	10.37	2.34	10.08
경남	1,292,998	370,293	28.64	100.0	93.4	60.57	27.58	1.39	2.16	1.74	6.57
읍부	185,079	48,247	26.1	13.0	95.0	53.60	35.90	1.68	2.13	1.65	5.05
면부	288,142	96,941	33.6	26.2	94.5	80.98	10.84	0.71	0.79	1.17	5.51
동부	819,777	225,105	27.5	60.8	92.6	53.27	33.01	1.62	2.75	2.00	7.36
창원	395,762	105,702	26.7	28.5	91.0	55.62	29.98	1.79	1.99	1.61	9.02
의창	94,883	26,485	27.9	25.1	95.4	67.69	22.71	1.14	2.28	1.59	4.58
성산	80,694	18,511	22.9	17.5	80.2	36.81	42.09	0.19	0.06	1.04	19.82
합포	71,860	21,519	29.9	20.4	88.0	56.52	26.27	1.51	1.37	2.32	12.00
회원	77,179	20,165	26.1	19.1	92.9	55.83	28.89	3.08	3.08	2.00	7.12
진해	71,146	19,022	26.7	18.0	96.7	55.87	33.67	3.18	3.00	0.96	3.32
진주	137,521	41,623	30.3	11.2	95.7	64.33	25.67	0.64	1.99	3.03	4.34
통영	53,306	15,801	29.6	4.3	93.9	61.04	27.52	1.45	2.09	1.78	6.11
사천	44,894	13,688	30.5	3.7	94.9	59.89	29.50	2.52	1.40	1.61	5.07
김해	192,078	47,240	24.6	12.8	92.4	50.57	35.22	0.94	4.30	1.36	7.61
밀양	44,465	15,043	33.8	4.1	95.7	70.13	20.31	1.75	1.74	1.78	4.29
거제	95,116	26,821	28.2	7.2	92.6	56.69	28.70	2.40	2.18	2.64	7.38
양산	125,887	32,744	26.0	8.8	95.3	38.62	52.76	0.81	2.16	0.92	4.72
<b>시평균</b>	<b>136,129</b>	<b>37,333</b>	<b>27.4</b>	<b>80.7</b>	<b>93.0</b>	<b>55.48</b>	<b>31.95</b>	<b>1.46</b>	<b>2.36</b>	<b>1.80</b>	<b>6.95</b>
의령	12,057	4,851	40.2	1.3	94.6	87.73	3.81	0.80	1.30	0.99	5.36
함안	26,869	8,625	32.1	2.3	93.7	67.42	22.19	1.24	1.19	1.61	6.34
창녕	26,652	9,341	35.0	2.5	93.2	77.59	10.31	1.62	2.53	1.20	6.76
고성	22,176	7,664	34.6	2.1	94.9	78.60	11.55	1.15	1.97	1.66	5.08
남해	19,431	6,999	36.0	1.9	97.5	89.57	4.47	0.74	1.00	1.70	2.51
하동	19,254	6,584	34.2	1.8	94.9	86.47	5.13	0.99	0.73	1.55	5.13
산청	15,275	5,644	36.9	1.5	94.6	88.11	3.47	0.76	0.37	1.91	5.37
함양	16,916	6,154	36.4	1.7	94.7	83.21	8.63	0.37	1.25	1.22	5.31
거창	25,105	7,984	31.8	2.2	96.4	77.87	13.94	1.19	1.63	1.74	3.63
합천	20,234	7,785	38.5	2.1	96.0	89.35	3.29	1.67	0.59	1.10	3.99
<b>군평균</b>	<b>20,397</b>	<b>7,163</b>	<b>35.1</b>	<b>19.3</b>	<b>95.0</b>	<b>81.77</b>	<b>9.35</b>	<b>1.11</b>	<b>1.32</b>	<b>1.47</b>	<b>4.99</b>

※ 출처 : 통계청, 국내통계>주택별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가구부문>총조사가구(2015년이후)>전수부문>1인가구  
 주1)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제외, 내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 가구원으로 집계  
 주2)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이 있음 / 비거주용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4) 경상남도 인구 및 가구 추이

- 통계청 연령별(시도) 추계인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1,946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경상남도의 인구는 2020년 3,350,151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감소 시작
- 전국 및 경남의 장래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29년부터 감소되는 전국인구와는 달리 경남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서 전국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
- 전국 및 경남의 장래가구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장래가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나 경남은 204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감소 시점보다 가구감소 시점이 훨씬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국과 비교하여 경남의 인구점유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가구점유비율은 가구수 증가와 마찬가지로 204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3.6 전국 및 경남의 인구 및 가구 추이(2019~2045년) (단위 : 인, %)

연도	전국					경남					전국대비	
	인구	가구	가구 원수	인구 증가율	가구 증가율	인구	가구	가구 원수	인구 증가율	가구 증가율	경남 인구 비율	경남 가구 비율
2019	51,709,098	19,971,359	-	-	-	3,349,656	1,312,888	-	-	-	6.48	6.57
2020	51,780,579	20,174,317	2.57	0.14	1.02	3,350,151	1,326,670	2.53	0.01	1.05	6.47	6.58
2021	51,821,669	20,366,414	2.54	0.08	0.95	3,348,591	1,339,667	2.50	-0.05	0.98	6.46	6.58
2022	51,846,339	20,545,775	2.52	0.05	0.88	3,345,692	1,351,807	2.47	-0.09	0.91	6.45	6.58
2023	51,868,100	20,714,305	2.50	0.04	0.82	3,344,467	1,363,270	2.45	-0.04	0.85	6.45	6.58
2024	51,887,623	20,869,265	2.49	0.04	0.75	3,342,701	1,373,959	2.43	-0.05	0.78	6.44	6.58
2025	51,905,126	21,013,656	2.47	0.03	0.69	3,340,494	1,384,056	2.41	-0.07	0.73	6.44	6.59
2026	51,920,462	21,156,816	2.45	0.03	0.68	3,337,863	1,394,015	2.39	-0.08	0.72	6.43	6.59
2027	51,933,215	21,290,091	2.44	0.02	0.63	3,334,755	1,403,575	2.38	-0.09	0.69	6.42	6.59
2028	51,941,946	21,414,812	2.43	0.02	0.59	3,331,197	1,412,652	2.36	-0.11	0.65	6.41	6.60
2029	51,940,598	21,532,010	2.41	0.00	0.55	3,326,803	1,421,379	2.34	-0.13	0.62	6.41	6.60
2030	51,926,953	21,640,586	2.40	-0.03	0.50	3,321,405	1,429,572	2.32	-0.16	0.58	6.40	6.61
2031	51,899,896	21,738,986	2.39	-0.05	0.45	3,314,828	1,436,497	2.31	-0.20	0.48	6.39	6.61
2032	51,858,138	21,829,822	2.38	-0.08	0.42	3,307,035	1,443,010	2.29	-0.24	0.45	6.38	6.61
2033	51,800,130	21,915,784	2.36	-0.11	0.39	3,297,984	1,449,032	2.28	-0.27	0.42	6.37	6.61
2034	51,724,407	21,995,028	2.35	-0.15	0.36	3,287,575	1,454,544	2.26	-0.32	0.38	6.36	6.61
2035	51,629,895	22,067,468	2.34	-0.18	0.33	3,275,784	1,459,468	2.24	-0.36	0.34	6.34	6.61
2036	51,515,697	22,131,677	2.33	-0.22	0.29	3,262,681	1,463,726	2.23	-0.40	0.29	6.33	6.61
2037	51,381,324	22,188,221	2.32	-0.26	0.26	3,248,231	1,467,292	2.21	-0.44	0.24	6.32	6.61
2038	51,226,482	22,236,438	2.30	-0.30	0.22	3,232,511	1,470,067	2.20	-0.48	0.19	6.31	6.61
2039	51,051,053	22,275,804	2.29	-0.34	0.18	3,215,590	1,472,249	2.18	-0.52	0.15	6.30	6.61
2040	50,855,376	22,306,364	2.28	-0.38	0.14	3,197,504	1,473,753	2.17	-0.56	0.10	6.29	6.61
2041	50,639,882	22,327,706	2.27	-0.42	0.10	3,178,358	1,474,455	2.16	-0.60	0.05	6.28	6.60
2042	50,404,693	22,339,113	2.26	-0.46	0.05	3,158,169	1,474,478	2.14	-0.64	0.00	6.27	6.60
2043	50,149,334	22,341,405	2.24	-0.51	0.01	3,136,847	1,473,496	2.13	-0.68	-0.07	6.26	6.60
2044	49,872,642	22,334,151	2.23	-0.55	-0.03	3,114,235	1,471,704	2.12	-0.72	-0.12	6.24	6.59
2045	49,574,038	22,317,526	2.22	-0.60	-0.07	3,090,213	1,469,109	2.10	-0.77	-0.18	6.23	6.58

※ 출처 : 통계청,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가구(장래인구추계/장래가구추계 (2019.6 공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  
중위추계(기본 추계: 출산율-중위 / 기대수명-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제이동-중위) / 국내이동-중위)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5) 경상남도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장래추이

- 경상남도의 1인가구 증가율은 향후 전국 타시도에 비해 높지 않으나 1인가구수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경남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9.5%에서 2045년 35.2%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3.7 전국 및 시도별 1인가구 증가추이(2019~2045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전국	전체가구	19,971,359	20,174,317	21,013,656	21,640,586	22,067,468	22,306,364	22,317,526
	1인가구	5,907,077	6,067,878	6,700,512	7,196,471	7,634,774	7,953,010	8,098,369
	증가율	100.0	102.7	113.4	121.8	129.2	134.6	137.1
	점유비율	29.6	30.1	31.9	33.3	34.6	35.7	36.3
경남	전체가구	1,312,888	1,326,670	1,384,056	1,429,572	1,459,468	1,473,753	1,469,109
	1인가구	387,319	397,197	437,067	471,107	499,555	516,013	517,340
	증가율	100.0	102.6	112.8	121.6	129.0	133.2	133.6
	점유비율	29.5	29.9	31.6	33.0	34.2	35.0	35.2
서울	1인가구	1,209,379	1,229,080	1,292,914	1,315,387	1,329,942	1,341,638	1,339,015
	증가율	100.0	101.6	106.9	108.8	110.0	110.9	110.7
부산	1인가구	405,200	414,092	447,023	473,344	497,065	508,064	505,546
	증가율	100.0	102.2	110.3	116.8	122.7	125.4	124.8
대구	1인가구	269,676	276,046	299,351	316,293	330,681	338,511	338,284
	증가율	100.0	102.4	111.0	117.3	122.6	125.5	125.4
인천	1인가구	282,399	291,924	337,553	378,400	416,642	447,747	466,837
	증가율	100.0	103.4	119.5	134.0	147.5	158.6	165.3
광주	1인가구	186,052	191,725	212,327	224,605	234,146	240,063	241,841
	증가율	100.0	103.0	114.1	120.7	125.8	129.0	130.0
대전	1인가구	194,724	200,135	217,771	232,135	248,271	262,617	272,753
	증가율	100.0	102.8	111.8	119.2	127.5	134.9	140.1
울산	1인가구	115,440	118,620	130,065	137,927	142,996	144,669	142,140
	증가율	100.0	102.8	112.7	119.5	123.9	125.3	123.1
세종	1인가구	41,312	44,378	53,437	61,568	70,961	78,916	86,339
	증가율	100.0	107.4	129.3	149.0	171.8	191.0	209.0
경기	1인가구	1,212,586	1,258,898	1,468,510	1,632,698	1,765,572	1,861,476	1,908,408
	증가율	100.0	103.8	121.1	134.6	145.6	153.5	157.4
강원	1인가구	215,684	221,670	243,456	263,382	284,598	302,076	313,490
	증가율	100.0	102.8	112.9	122.1	132.0	140.1	145.3
충북	1인가구	202,557	209,193	237,393	263,201	289,293	311,104	325,643
	증가율	100.0	103.3	117.2	129.9	142.8	153.6	160.8
충남	1인가구	272,236	281,099	315,406	348,008	379,658	406,363	423,866
	증가율	100.0	103.3	115.9	127.8	139.5	149.3	155.7
전북	1인가구	240,261	245,870	262,043	278,092	293,429	303,959	308,984
	증가율	100.0	102.3	109.1	115.7	122.1	126.5	128.6
전남	1인가구	241,233	246,078	264,356	282,193	300,181	314,362	322,584
	증가율	100.0	102.0	109.6	117.0	124.4	130.3	133.7
경북	1인가구	358,783	366,042	391,648	415,652	439,160	455,480	461,383
	증가율	100.0	102.0	109.2	115.9	122.4	127.0	128.6
제주	1인가구	72,236	75,831	90,192	102,479	112,624	119,952	123,916
	증가율	100.0	105.0	124.9	141.9	155.9	166.1	171.5

※ 출처 : 통계청,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가구>장래인구추계/장래가구추계 (증가율 : 2019년 인구기준 = 100)

- 향후 2045년까지 경남의 가구원수별 가구특성은 1인 가구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점점 낮아지는 반면, 2인 가구는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전국평균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5인 이상 가구는 2030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아지게 됨
-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의 경우, 전국평균과 유사하게 향후 2045년까지 1~2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표 3.8 전국 및 경남의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점유비율(단위 : %)

연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2018년	19,751,807	1,298,070	29.1	29.1	27.4	28.3	21.3	21.1	16.8	16.3	4.2	4.0	1.2	1.2
2009년	19,971,359	1,312,888	29.6	29.5	27.8	28.7	21.3	21.1	16.2	15.7	3.9	3.8	1.2	1.1
2020년	20,174,317	1,326,670	30.1	29.9	28.3	29.2	21.2	21.1	15.6	15.2	3.7	3.6	1.1	1.0
2025년	21,013,656	1,384,056	31.9	31.6	30.5	31.2	21.0	21.0	13.0	12.7	2.8	2.8	0.8	0.8
2030년	21,640,586	1,429,572	33.3	33.0	32.2	32.7	20.7	20.7	11.0	10.8	2.2	2.2	0.6	0.6
2035년	22,067,468	1,459,468	34.6	34.2	33.4	33.7	20.2	20.4	9.5	9.3	1.8	1.9	0.5	0.5
2040년	22,306,364	1,473,753	35.7	35.0	34.2	34.4	19.9	20.2	8.3	8.3	1.5	1.6	0.4	0.4
2045년	22,317,526	1,469,109	36.3	35.2	35.0	35.1	19.8	20.3	7.4	7.6	1.2	1.4	0.3	0.4

※ 출처 : 통계청,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인구가구>장래인구추계/장래가구추계> 시도>가구원수별 추계가구

## 6) 경상남도 및 시군별 재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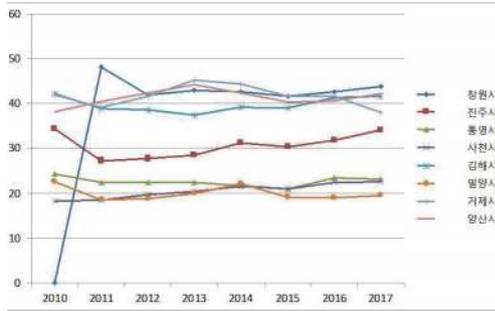
### ① 재정자립도 현황과 추이

-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광역도 중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전국적으로 광역시와 광역도를 구분해 보면 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광역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에서는 서울, 경기, 울산 순이며, 경남은 전국 9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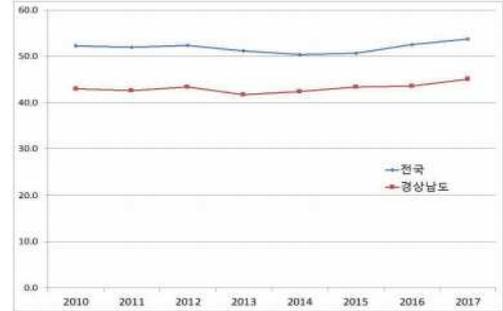
표 3.9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과 추이(단위 : %)

행정구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52.2	51.9	52.3	51.1	50.3	50.6	52.5	53.7	
광역도	경남	42.9	42.6	43.3	41.7	42.4	43.3	43.5	45.0
	경기	72.8	72.5	72.6	71.6	67.7	66.6	67.4	70.1
	강원	27.1	27.5	26.9	26.6	26.6	25.9	27.1	29.1
	충북	33.7	32.7	34.2	34.2	33.6	34.8	35.2	38.1
	충남	36.6	35.4	35.5	36.0	35.6	35.2	38.7	39.3
	전북	24.6	24.5	26.0	25.7	27.0	27.6	29.7	28.6
	전남	20.6	20.7	21.4	21.7	22.2	22.8	23.8	26.2
	경북	29.3	28.1	28.3	28.0	29.1	30.0	33.3	32.7
	제주	26.1	25.1	28.5	30.6	34.0	36.4	38.2	39.6
광역시	서울	85.8	90.3	90.2	88.8	84.2	84.3	84.7	85.0
	부산	57.6	56.4	57.4	56.6	57.4	56.8	60.1	60.1
	대구	56.3	53.5	52.8	51.8	51.7	53.1	57.1	56.6
	인천	70.4	69.3	71.0	67.3	66.9	64.4	67.0	65.4
	광주	47.5	47.5	46.6	45.4	46.0	49.3	51.5	49.2
	대전	56.3	57.2	58.3	57.5	54.9	54.9	55.0	57.1
	울산	67.2	69.1	71.2	70.7	70.2	72.0	72.2	69.9
	세종	-	-	-	38.8	50.6	54.8	59	70.5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e-지방지표>주제별>재정 및 행정서비스>재정자립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행정안전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그림 3.3] 전국 시도별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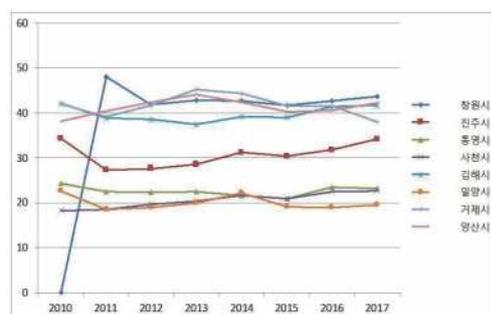
[그림 3.4] 전국 및 경상남도 재정자립도 추이(%)

- 경상남도 시군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지역 재정자립도가 군지역보다 훨씬 높음
- 지난 8년간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시지역의 경우는 거의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군지역의 경우,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에서는 창원(43.7%), 김해(41.6%) 순으로 높고 밀양(19.5%)이 가장 낮은 반면, 군지역에서는 함안(27.3%)이 타 군에 비해 월등히 높고 산청(13.2%)이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남
- 경상남도 18개 시군전체로 보면, 창원이 가장 높고 산청이 가장 낮으며, 대부분 시지역의 재정자립도 군지역보다 높으나 밀양과 사천, 통영의 경우, 군지역인 함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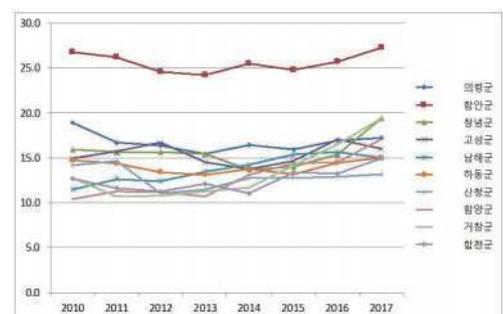
표 3.10 경남 시군별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과 추이(단위 : %)

행정구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남도	42.9	42.6	43.3	41.7	42.4	43.3	43.5	45.0	
시 지역	창원	-	48.0	41.8	42.8	42.6	41.6	42.6	43.7
	진주	34.3	27.3	27.6	28.4	31.2	30.3	31.7	34.1
	통영	24.4	22.5	22.4	22.5	21.7	21.0	23.5	23.2
	사천	18.3	18.6	19.7	20.4	21.6	21.0	22.5	22.6
	김해	42.1	38.8	38.5	37.4	39.1	39.0	41.3	41.6
	밀양	22.6	18.6	18.9	20.0	22.2	19.1	19.0	19.5
	거제	41.9	39.1	41.6	45.2	44.3	41.5	41.5	37.9
	양산	38.1	40.4	42.3	44.1	42.3	40.3	40.5	42.2
군 지역	의령	18.9	16.7	16.3	15.4	16.4	15.9	16.9	17.2
	함안	26.8	26.2	24.6	24.2	25.5	24.8	25.7	27.3
	창녕	15.9	15.6	15.6	15.4	13.7	14.0	15.3	19.4
	고성	14.9	15.7	16.7	14.5	13.8	14.6	17.0	16.0
	남해	11.5	12.6	12.4	13.5	14.2	15.3	15.6	15.0
	하동	14.7	14.3	13.4	13.1	13.8	13.2	14.4	15.0
	산청	14.1	14.6	11.1	11.5	12.8	12.8	12.9	13.2
	함양	10.4	11.3	11.2	10.7	13.1	14.3	14.5	17.0
	거창	12.8	10.7	10.8	11.3	11.7	14.1	16.5	19.4
	합천	12.7	11.6	11.3	12.1	11.1	13.4	13.3	14.9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e-지방지표)주제별>재정 및 행정서비스>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100



[그림 3.5] 경상남도 시지역 재정자립도 추이(%)



[그림 3.6] 경상남도 군지역 재정자립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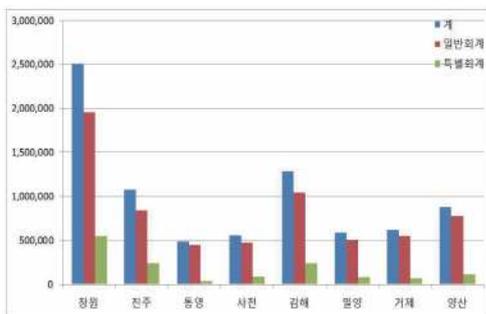
## ② 경상남도 및 시군별 예산현황과 추이

- 18개 시군 전체를 살펴보면, 창원시의 예산규모가 가장 많고(2017년 기준, 18개 시군 전체예산의 20.9% 차지), 산청군의 예산(18개 시군 전체예산의 2.9%)이 가장 적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창원시(19.4%)가 가장 많으나 하동군의 특별회계가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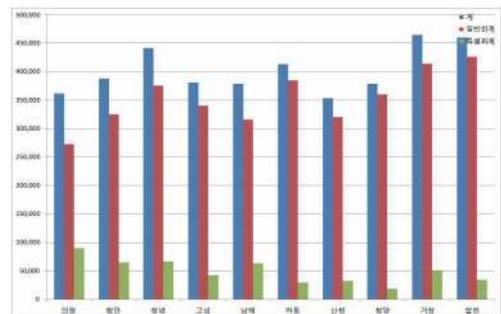
표 3.11 경상남도 및 시군별 예산현황 연도별 현황과 추이(단위 : 백만원)

행정구역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	18,999,377	16,605,862	2,393,515	18,897,926	15,896,538	3,001,388	101,451	709,324	-607,873	
경상남도	6,957,854	6,462,903	494,951	7,296,338	6,208,197	1,088,141	-338,484	254,706	-593,190	
시군	12,041,523	10,142,959	1,898,564	11,601,588	9,688,341	1,913,247	439,935	454,618	-14,683	
시	창원	2,510,738	1,966,700	544,038	2,530,810	1,913,574	617,236	-20,072	53,126	-73,198
	진주	1,080,085	839,142	240,943	1,039,369	813,191	226,178	40,716	25,951	14,765
	통영	486,230	450,876	35,354	451,173	414,271	36,902	35,057	36,605	-1,548
	사천	559,400	473,002	86,398	534,241	454,769	79,472	25,159	18,233	6,926
	김해	1,288,519	1,045,662	242,857	1,172,524	969,017	203,507	115,995	76,645	39,350
	밀양	588,252	509,067	79,185	562,541	472,716	89,825	25,711	36,351	-10,640
	거제	618,674	549,683	68,991	646,803	573,572	73,231	-28,129	-23,889	-4,240
	양산	885,082	772,315	112,767	841,074	740,185	100,889	44,008	32,130	11,878
군	의령	361,993	272,607	89,386	342,910	257,400	85,510	19,083	15,207	3,876
	함안	388,596	324,485	64,111	384,096	315,350	68,746	4,500	9,135	-4,635
	창녕	441,721	375,778	65,943	414,594	352,164	62,430	27,127	23,614	3,513
	고성	381,862	340,051	41,811	371,841	333,490	38,351	10,021	6,561	3,460
	남해	378,678	315,961	62,717	343,438	289,695	53,743	29,270	25,550	3,720
	하동	414,109	385,119	28,990	341,981	320,671	21,310	42,034	38,997	3,037
	산청	352,898	320,494	32,404	347,056	304,672	42,384	5,842	15,822	-9,980
	함양	378,903	360,345	18,558	350,200	324,338	25,862	28,703	36,007	-7,304
	거창	465,268	414,710	50,558	447,910	399,803	48,107	17,358	14,907	2,451
	합천	460,515	426,962	33,553	442,963	413,296	29,667	17,552	13,666	3,886

※ 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개개방, 공공정보 공개개방, 재정정보)  
예산규모 [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jsp](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jsp) (당초예산 기준임)



[그림 3.7] 경상남도 시지역 예산 규모(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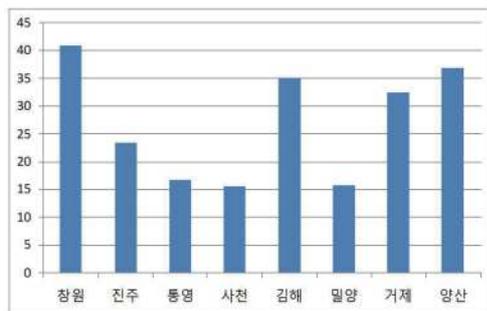
[그림 3.8] 경상남도 군지역 예산 규모(2017년)

- 2017년 기준, 경상남도의 일반회계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40.7%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2.8% 증가하였으나 시군의 경우 23.6%로 전년과 비교하여 0.5% 증가에 그침
-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일반회계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창원(41.0%)이 가장 높고 함양(6.6%)이 가장 낮으며, 군지역중 함안(19.5%)이 가장 높고 시지역중 사천(15.5%)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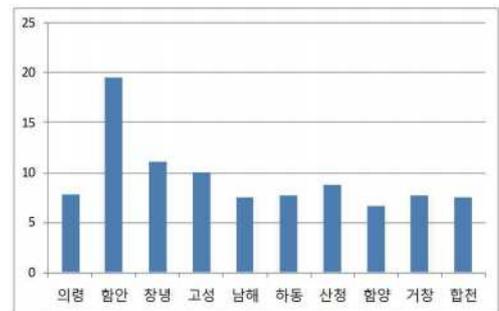
표 3.12 경상남도 및 시군별 자체재원 현황(단위 : 백만원)

행정 구역	2017년도 당초예산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자체재원	자립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자립도(%)	
총 계	16,605,862	5,019,637	30.2	15,896,538	4,592,876	28.9	
경상남도	6,462,903	2,628,417	40.7	6,208,197	2,352,196	37.9	
시 군	10,142,959	2,391,220	23.6	9,688,341	2,240,680	23.1	
시 지역	창원	1,966,700	805,997	41.0	1,913,574	760,617	39.7
	진주	839,142	196,233	23.4	813,191	175,430	21.6
	통영	450,876	75,308	16.7	414,271	68,383	16.5
	사천	473,002	73,080	15.5	454,769	71,513	15.7
	김해	1,045,662	367,975	35.2	969,017	341,570	35.2
	밀양	509,067	79,939	15.7	472,716	70,633	14.9
	거제	549,683	178,112	32.4	573,572	196,494	34.3
	양산	772,315	284,944	36.9	740,185	236,584	32.0
	시계	<b>6,606,447</b>	<b>2,061,588</b>	<b>31.2</b>	<b>6,351,295</b>	<b>1,921,224</b>	<b>30.2</b>
군 지역	의령	272,607	21,234	7.8	257,400	24,800	9.6
	함안	324,485	63,119	19.5	315,350	58,828	18.7
	창녕	375,778	41,786	11.1	352,164	37,633	10.7
	고성	340,051	34,133	10.0	333,490	32,477	9.7
	남해	315,961	23,662	7.5	290,411	23,244	8.0
	하동	385,119	29,805	7.7	346,122	27,239	7.9
	산청	320,494	28,129	8.8	304,672	29,368	9.6
	함양	360,345	23,872	6.6	324,338	23,467	7.2
	거창	414,710	32,007	7.7	399,803	30,381	7.6
	합천	426,962	31,885	7.5	413,296	32,019	7.7
	군계	<b>3,536,512</b>	<b>329,632</b>	<b>9.3</b>	<b>3,337,046</b>	<b>319,456</b>	<b>9.6</b>

※ 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개개방, 공공정보 공개개방, 재정정보)  
 예산규모 [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_05.jsp](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_05.jsp) 기준 /  
 지방교육세(도) 2016년 : 386,850백만원, 2017년 : 393,234백만원



[그림 3.9] 경상남도 시지역 자체예산 비율(2017년)



[그림 3.10] 경상남도 군지역 자체예산 비율(2017년)

- 경상남도 시군별 일반회계 대비 자체재원 비율(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함
  - 자체재원 비율 30%이상 지역 : **창원, 김해, 양산, 거제**
  - 자체재원 비율 20%내외 지역 : **진주, 함안**
  - 자체재원 비율 10~19% 지역 : **통영, 사천, 밀양, 창녕, 고성**
  - 자체재원 비율 10%미만 지역 :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일반회계 규모가 작고 자체재원 비율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교통수단의 배려가 필요함

### ③ 경상남도 예산전망

- 경상남도의 향후 5년간(2017~2021) 중기 세입전망(총괄)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2.4%이며 일반회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표 3.13 경상남도의 향후 5년간(2017~2021) 중기 세입전망(총괄)(단위 :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증가율(%)
계	8,241,606	8,404,979	8,526,543	8,725,920	9,063,509	42,962,557	2.4
일반회계	6,976,132	7,160,146	7,321,434	7,512,265	7,776,030	36,746,007	2.8
특별회계	494,951	502,069	505,699	511,065	516,690	2,530,474	1.1
기금	770,523	742,764	699,410	702,590	770,789	3,686,076	0.0

※ 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개개방, 공공정보 공개개방, 재정정보>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 세입전망(총괄)  
[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_06.jsp](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_06.jsp) 기준

- 경상남도의 향후 5년간(2017~2021) 중기 재원배분 세출전망(총괄)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세입전망과 동일하며,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표 3.13 경상남도의 향후 5년간(2017~2021) 중기 세입전망(총괄)(단위 :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증가율(%)
계	8,241,606	8,404,979	8,526,543	8,725,920	9,063,509	42,962,557	2.4
사업예산	7,079,661	7,194,636	7,350,867	7,605,398	7,890,353	37,120,915	2.7
경상지출	1,161,945	1,210,343	1,175,676	1,120,522	1,173,156	5,841,642	0.2

※ 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개개방, 공공정보 공개개방, 재정정보>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 재원배분 세출전망(총괄)  
[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_06.jsp](http://open.gyeongnam.go.kr/jsp/sub01/01_02_06.jsp) 기준



[그림 3.11] 경상남도 중기 세입전망(총괄)



[그림 3.12] 경상남도 중기 재원배분 세출전망(총괄)

## III.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개발

## 3.2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 구상

## 3.2.1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4.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
3.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4.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 ·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장 · 군수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 · 변경된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범사업 시행)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 · 군수 또는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 · 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 가로시설물 · 공원 등 공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 · 개축, 용도변경 등의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할 사항은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 ·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도민참여 등)**

-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목표 및 실천방안 전략

#### 가. 기본 이념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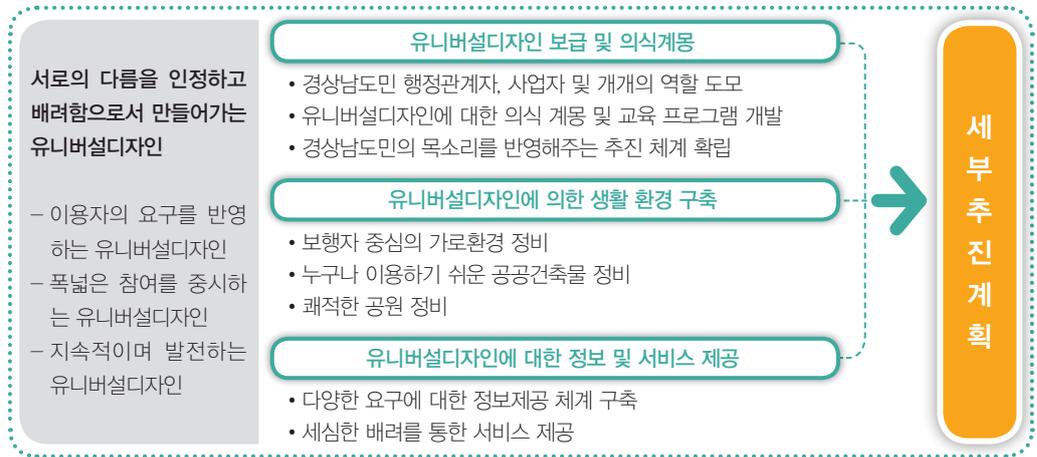


-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인식 계몽
-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생활 환경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 3가지 중점 정책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 나. 키워드와 비전 도출 과정



####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 도출 방침

-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공유하게 될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비전은 경상남도가 추구하는 목표와 현황분석, 현재 각 도시마다 적용된 디자인의 특성과 공공물 이용 사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체성 있는 비전 설정
-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의 다양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특색을 반영하여 정체성있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다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에 재치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

####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비전 도출 요소

– 경상남도 미래상 :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남

- 경상남도 일반현황 분석 : 다수의 시군이 국가차원의 낙후지역으로 진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성장촉진지역(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지정, 2009)으로 전국 70개 대상지역 중 경남의 경우 10개시·군(밀양·창녕·합천·거창·함양·산청·하동·의령·남해·고성)이 선정되어 있음

- 경상남도 기존 공공/도시 디자인 현황 분석
  - : 산·바다·하천·평야 등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지형·지세의 차이 고려
  - : 유니버설디자인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미약하여 관련된 각각의 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경관, 공공디자인 조례 등)
  -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과제
  - : 도민 모두를 위한 디자인 및 시민 참여 유도
  - : 지속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 키워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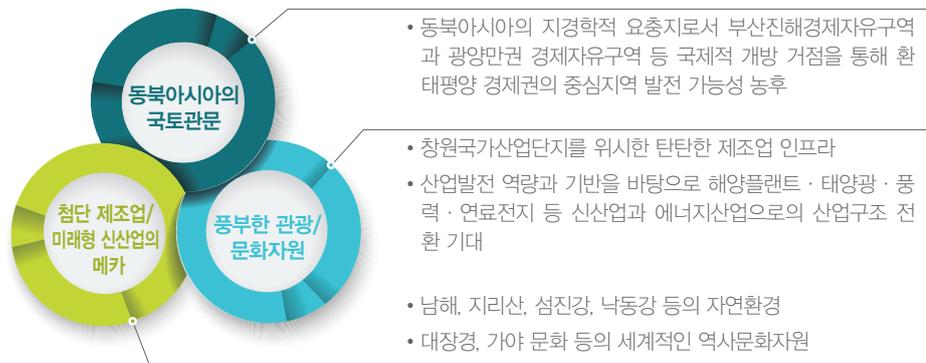
-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보편적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와 디자인 마련
- 경남지역 내 모든 시/군의 자연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조화로운 유니버설디자인 도출
- 사회 경제적 변화(인구 구조, 산업발전)에 맞춰 경관/도시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모두가 안전하고 쉽게 사용가능한 사람 중심의 디자인

| 보편적, 조화로운, 새로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안전한, 편리한, 사람 중심의, 쾌적한 |



• 경남지역의 특성

자료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2012~2020) 요약보고서



•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 문화 중심지역, 첨단산업 중심지역, 교육/연구 중심지역
  - ▶ 지금의 제조업 중심지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희망
-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사회복지
  - ▶ 불균형발전을 개선하고 지속적 경제성장 효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정책 강화 요구
- 조선/기계/항공산업, 금융/교육/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강화
  - ▶ 현재의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3차 산업의 강화,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대
-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 과학 첨단 농업 육성, 전원지역으로 개발
  - ▶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의 미래발전방향과 유사한 흐름



#### 다. 비전과 슬로건

**비전**  
(Vision)

###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상생"

-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보편적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와 디자인 마련
- 경남지역 내 모든 시/군의 자연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조화로운 유니버설 디자인 도출
- 사회 경제적 변화인구 구조, 산업발전예 맞춰 경관/도시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모두가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

**슬로건**  
(Slogan)

### "공감으로 바어낸 보편적 경남"

#### 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로드맵

-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 수립의 목적 및 의의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으로 인한 경상남도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을 위한 단계별 세부 과제 도출
  - 경상남도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전략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성과를 극대화
  - 경상남도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맞춤형 사업 추진
  - 장기적인 유니버설 도시 이미지 구상을 통한 모범이 되는 도시위상 정립
- 유니버설디자인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 유니버설 도시 이미지 및 비전을 표출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과제 제시 필요
  - 시대적·행정적 여건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경상남도 경관조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 중장기 개념의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및 유관사업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 접근과 필요성 대두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계획 필요

### 3.2.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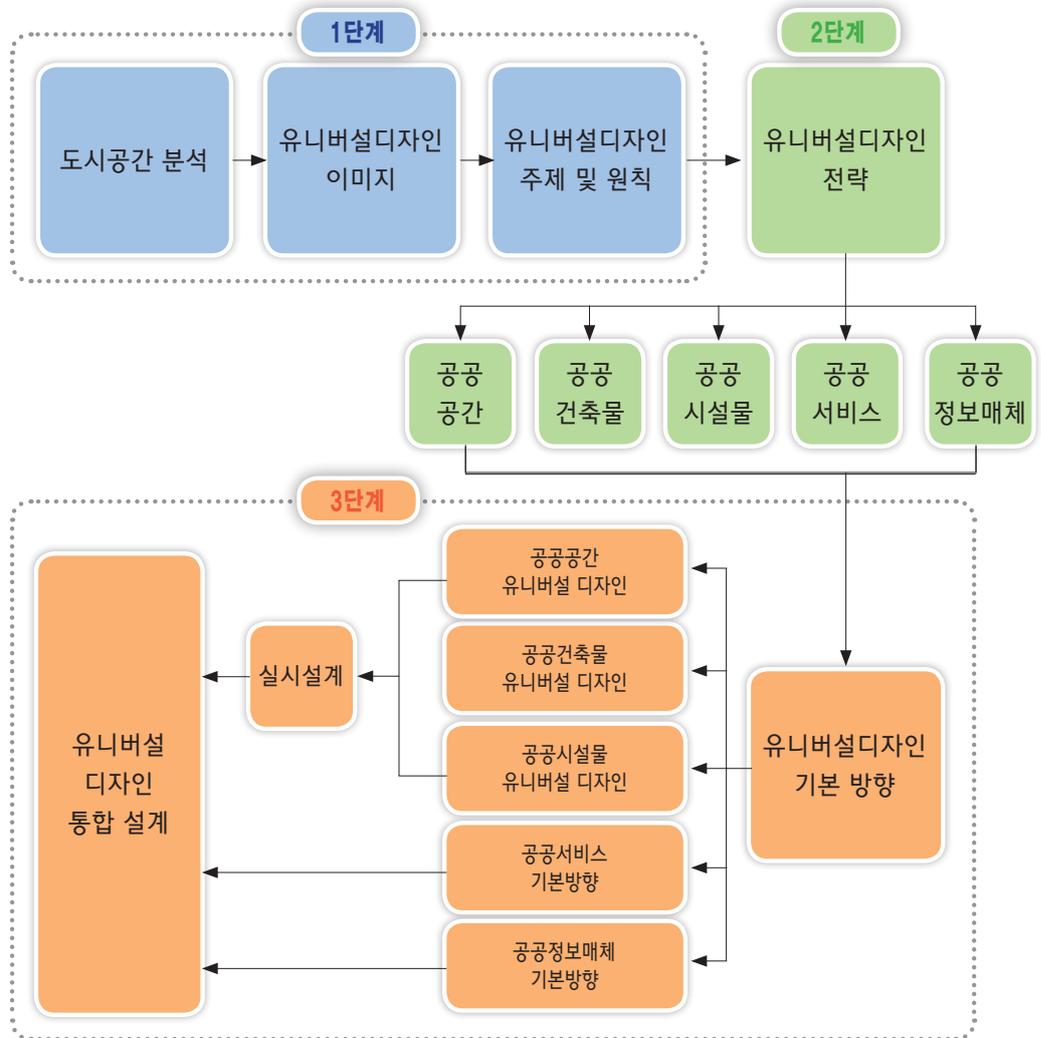
• 적용 범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서비스, 공공정보 매체의 5개 부문과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설정한다.

적용대상		세부항목	주요 체크리스트	
공공공간	가로	보도	보행공간	• 유효폭, 유효높이, 단차, 기울기, 바닥 마감, 배수, 점자블럭
			차량진입구역	• 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대지안의 공지	• 건축물 전면부 영역, 건축물 전면부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이용편의시설	
		시설물 구역	• 식재, 띠 녹지,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	국지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안내시설	
		속도 저감방안	• 도로형태, 도로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 설치, 고원식 건널목 · 교차로, 교통섬, 스크램블 교차로	
		진입공간	•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이동공간	• 산책로	
공원 및 광장	위생공간	• 화장실		
	편의공간	•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공간	• 휴게구역, 놀이터		
	공통공간	접근공간	대지출입구	• 대지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
			보행접근로	• 접근로 유효폭 및 높이, 바닥마감, 연결공간, 유도 및 안내
			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장내 보행안전통로, 유도 및 안내
		진입공간	주출입구	• 위치 및 전면공간, 문의 형태
로비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유도 및 안내	
이동공간			복도	• 유효폭,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실내출입문	• 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경사로	• 형태 및 구조, 안전		
	계단	• 형태, 구조, 식별		
엘리베이터	• 구조, 대기공간, 엘리베이터문,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에스컬레이터	• 구조, 승강장			
방재및피난시설	• 피난방법 및 피난구, 피난동선			
공통공간	위생공간	화장실	• 접근 및 안내, 출입구, 마감 및 조명, 대변기 부스, 위생설비, 영유아설비	
		다목적 화장실	• 기능 및 구조, 설비	
		수유실	• 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욕조 및 활동공간,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및 접이식의자, 탈의 및 수납공간		
	개별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 · 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체육시설		•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 경기장, 공연 · 전시장, 도서관 등		
복지시설		•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등		
기타		•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 대중교통정류소(버스 · 택시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시설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전용 유도블록, 가로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 벤치, 가로판매대, 퍼걸러, 쉼터, 음수대, 공중전화,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제어함, 가로등제어함 등		
	녹지시설물	• 가로수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도로시설물	• 교량(철교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터널, 생태통로 등		
공공서비스	도로부속시설물	• 보도육교, 지하보도, 방음벽, 공개 · 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 요금소 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상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	• 택시, 버스차량, 도시철도,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공공정보매체	환경방재시설	•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안내표지	•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교통 표지, 각종 공공 안내사인 등		
공공정보매체	정보표지	•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지정 벽보판(광고판) 등		

• 구성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상남도만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경상남도의 정체성을 담고, 사회적·경제적으로 다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에 재치있게 대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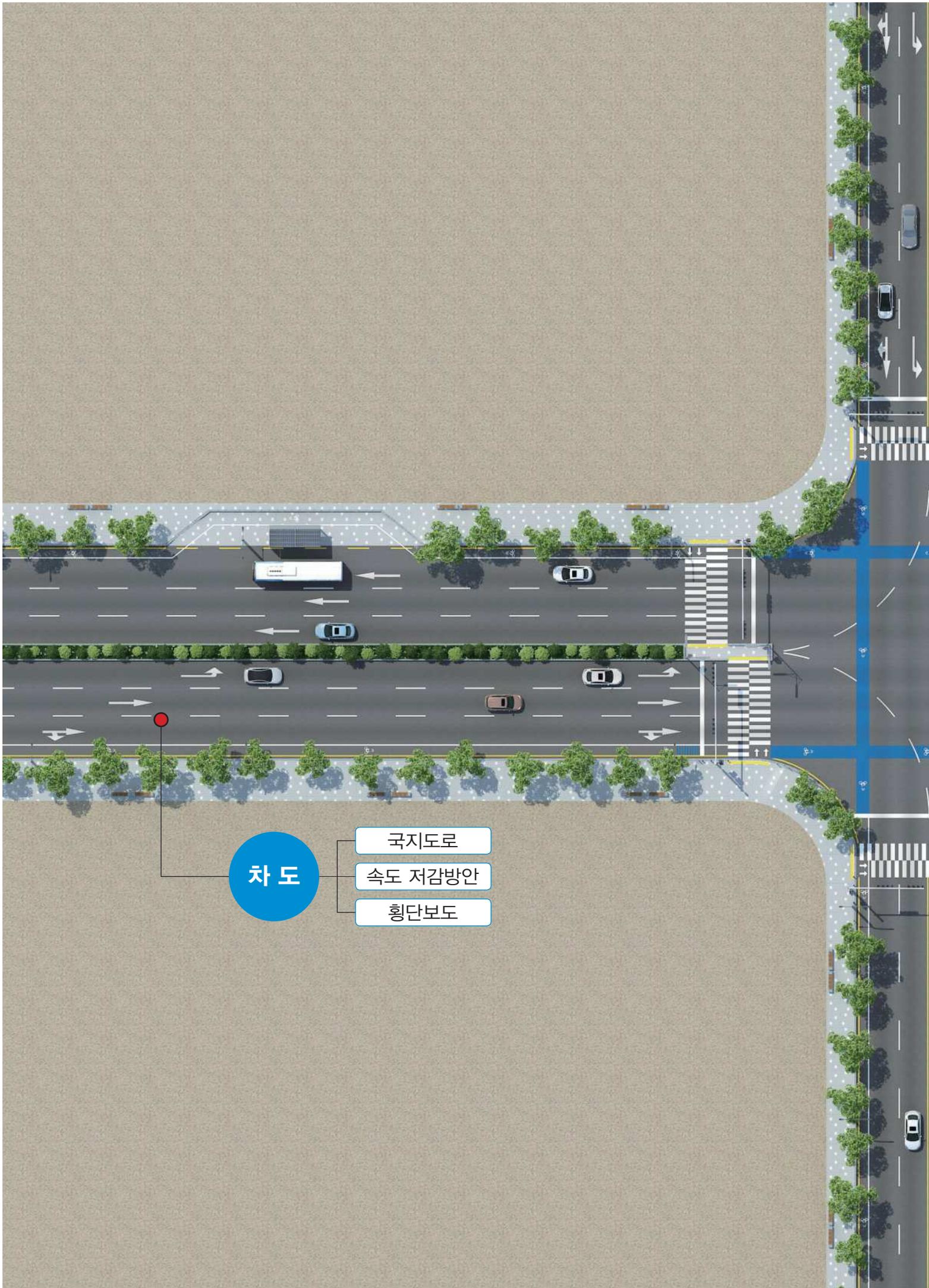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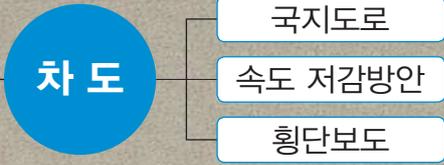
〈그림. 3〉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통합 설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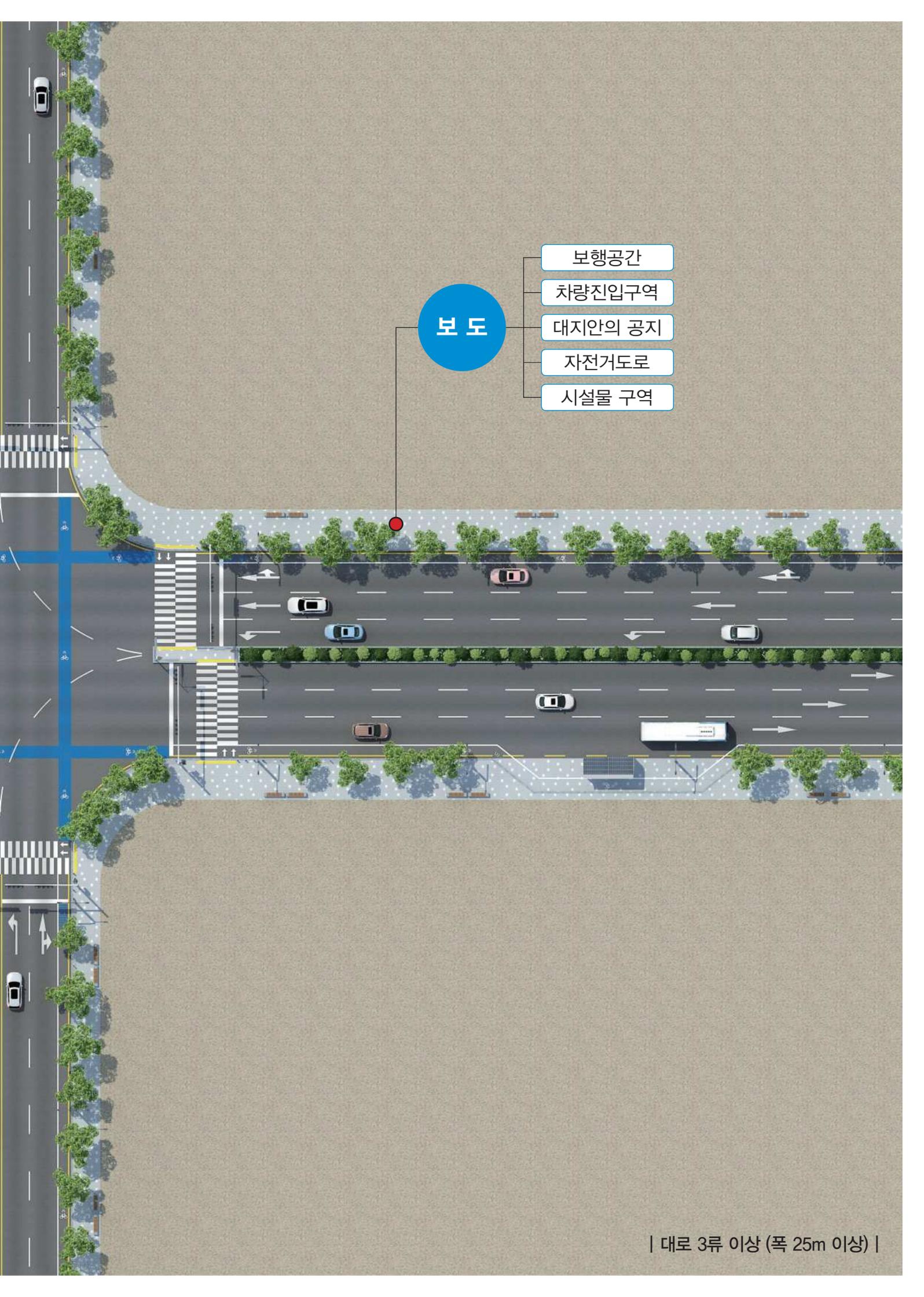
# I . 공공공간

---

- 1. 가로 - 보도  
- 차도
- 2. 공원 및 광장







보도

- 보행공간
- 차량진입구역
- 대지안의 공지
- 자전거도로
- 시설물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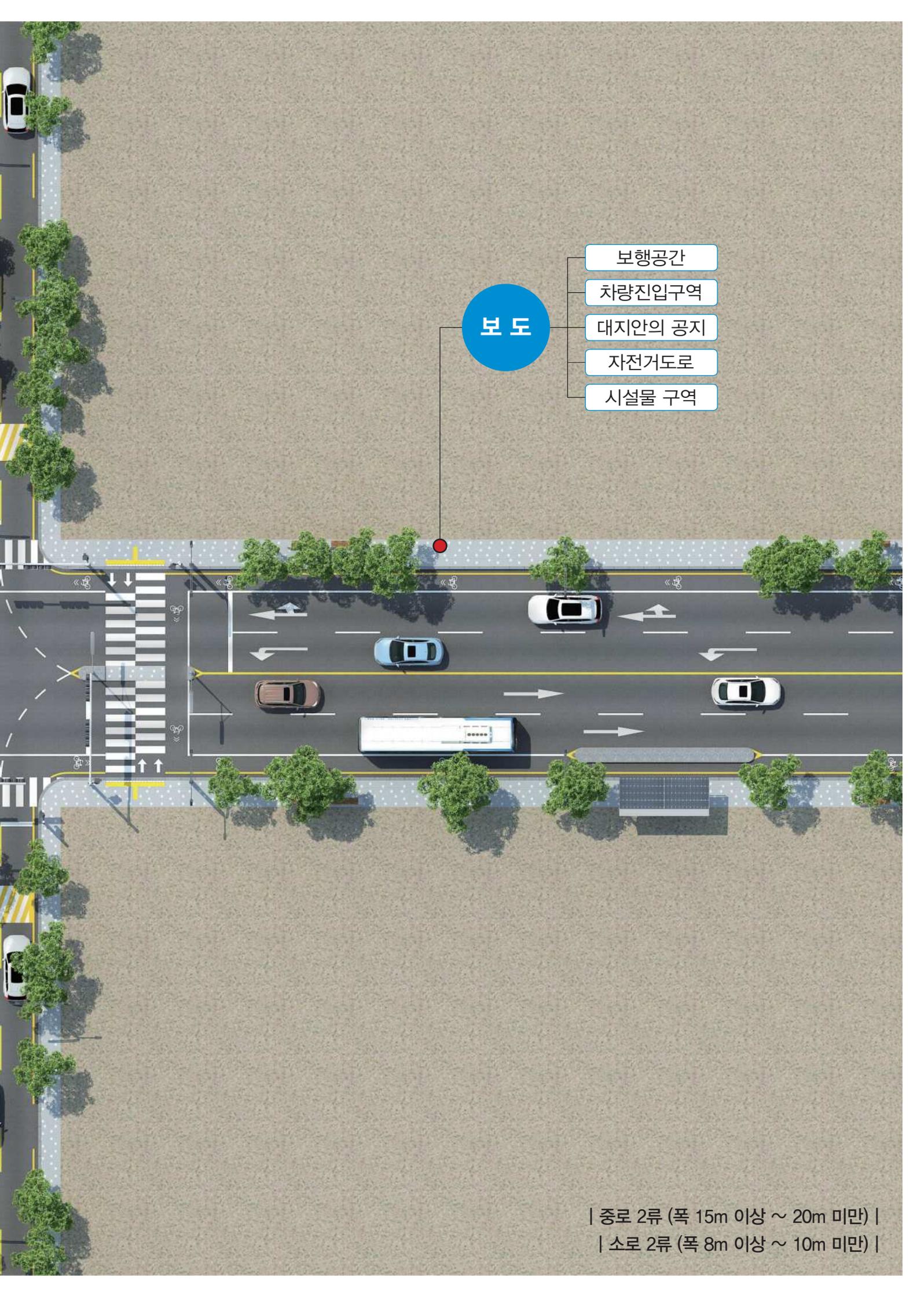
차도

국지도로

속도 저감방안

횡단보도





보도

보행공간

차량진입구역

대지안의 공지

자전거도로

시설물 구역

| 중로 2류 (폭 15m 이상 ~ 20m 미만) |

| 소로 2류 (폭 8m 이상 ~ 10m 미만) |

### III.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개발

## 3.3 각 영역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3.3.1 공공 공간 (가로 : 보도 + 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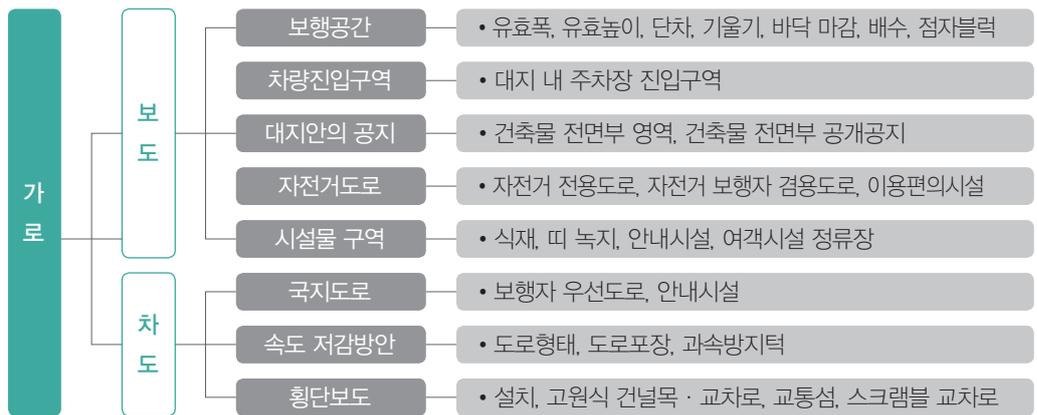
#### 1) 정의 및 적용대상

##### 정의

- 가로는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공공간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경상남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경남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가로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보행자가 불편함 없이 연속적인 통행 동선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구현되도록 단차 없는 보도, 보차도 분리, 턱 낮추기 등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설치·관리한다.

#####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에 지정하는 가로는 차량통행이 위주인 고속도로 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과 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일반도로를 말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 본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보도 폭이나 기울기 등의 설계지침을 지형상 등의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기존 도로는 예외로 하지만,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하여 다른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그림. 01 | 가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1-1) 보도

### 1) 보행공간

#### 기본지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나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하며, 일방통행이면 예외로 한다.
-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보도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해 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보행 장애물이 보도의 유효 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는 고정 차가 없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가능한 경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 등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수단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하며, 인근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투수성 재료나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어린이, 유모차,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
- 우천,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를 반영한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 가) 유효 폭

-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휠체어 또는 유모차 사용자 상호 간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2.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보도 펜스, 가로 등, 가로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유효 폭이 1.5m 미만이면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30m 이내(법적 치수 50m)마다 폭 1.5m 이상, 길이 2.5m 이상(법적 치수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교행 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보도의 유효 폭의 양 측면에는 측방여유폭을 0.3m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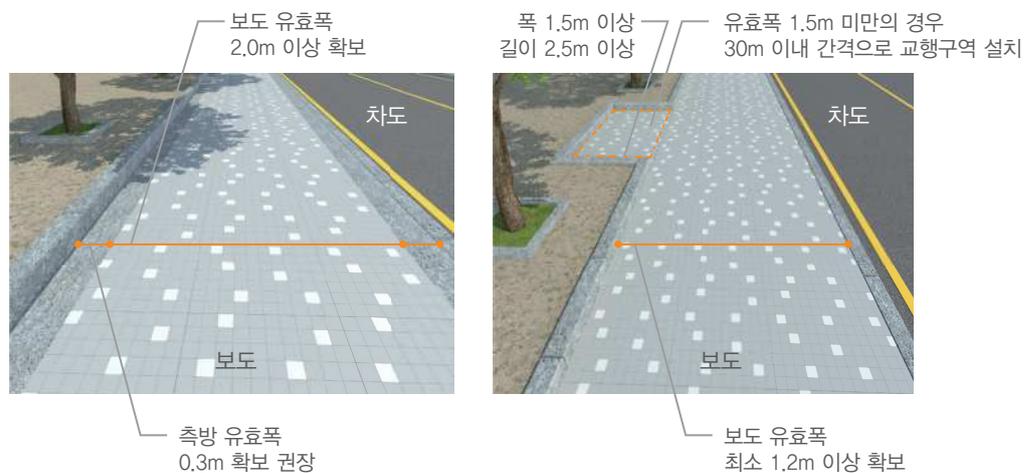


### | 권장 사례 |



■ 보도 유효폭이 2.0m인 경우

■ 보도 유효폭이 1.5m 미만인 경우



| 그림. 02 | 다양한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한 보도 유효폭

나) 유효높이

- 전방의 장애물 여부를 주시하지 않고 보행할 때에도 안전에 위험이 없는 충분한 유효높이를 확보한다.
- 유효높이는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보행할 때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므로 법적 기준<sup>1)</sup> 2.1m보다 상향된 유효높이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 유효높이는 보행 안전구역뿐만이 아닌 인접 구역(공개공지 및 시설물 설치구역)까지 적용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가로시설물로 인해 유효높이를 확보하지 못해 통행에 방해하는 경우



| 권장 사례 |

보행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높이 확보



다) 단차와 기울기

-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마감한다.
-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할 시에는 진행 방향 모 따기 가공으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종 · 횡단기울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설치한다.
-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구 바닥 높이와 보행 안전구역의 높이에서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하면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 영역에서 경사를 보완한다.
- 진행 방향 횡단기울기는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지물상 혹은 배수의 경우에는 1/25 이하를 유지한다.
- 진행 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4 이하(법적 치수<sup>2)</sup> 1/18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1/18 이하는 50m 마다 1/12은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 참을 설치한다.
- 경사로 전체에 대한 구매 안내 및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취지의 안내 사인을 설치한다.
- 경사가 연속되는 지역의 평탄한 구간을 활용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 유효 폭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3m 이상, 집산도로 2.25m 이상 확보(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교형 구역 50m 이내 폭 1.5mX1.5m 이상(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유효 폭 2.0m 이상 확보, 부득이 지방 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 1.5m 이상 확보(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유효안전높이 : 높이 2.1m의 유효높이 확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급격한 경사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이 불편한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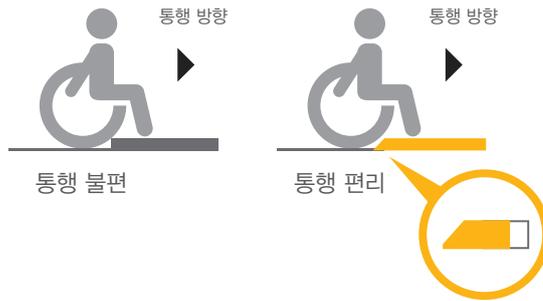


| 권장 사례 |

다양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단차와 기울기 적용



■ 단차 계획을 통한 보행 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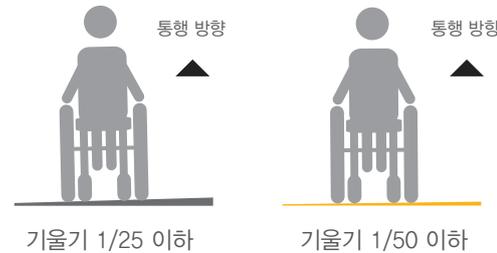


■ 기울기 계획을 통한 보행 편의 제공

중단 기울기



횡단 기울기



| 그림. 03 | 단차와 기울기 계획을 통한 보행 편의 제공

2)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 기울기 : 횡단기울기 1/50 이하,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5 이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 안전구역의 좌우 기울기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지물상 불가피한 경우 혹은 배수의 경우에는 1/50m 이하 유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최우수 BF 인증 기준 : 종단기울기 1/24 이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유도방식 : 폭 0.3M 이상의 유도 및 경고용 띠 설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라) 바닥 마감

-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일체성을 가진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유모차가 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며, 이음새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좁고 잘 채워진 이음새로 한다.
- 바닥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고 0.5cm 이상의 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바닥포장재는 특정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색채나 종류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시력이 나쁜 사람의 시·지각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등의 조잡함을 지양한다.
- 타일계열의 바닥포장재는 줄눈을 좁혀 보행할 때의 불편을 줄이고, · 사고석 계열의 거친 마감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한다.
- 투수성 보도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보도 포장의 미끄럼 저항기준<sup>3)</sup>은 BPN(British Pendulum Number) 기준으로 평지 및 기울기 1/50 이하는 40BPN 이상, 기울기 1/50~1/10의 완경사는 45BPN 이상, 1/10 이상의 급경사는 50BPN 이상으로 한다.
-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연석과 경계석 모두 미끄럼 저항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맨홀 뚜껑 등의 시설물은 바닥표면과 평탄하게 연속되도록 마감한다.
- 재료의 명도 및 질감 등을 활용하여 보행 안전구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시력이 나쁜 사람의 시·지각적 인지를 위한 포장 재료 간의 표면 휘도<sup>4)</sup>는 LRV(Light Reflectance Value) 최소 30 이상을 권장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보도의 파손 및 과도한 패턴과 색상으로 조잡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바닥 마감



| 권장 사례 |

틈이 없고 일정한 저채도의 바닥 마감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감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3) 마감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여 미끄럼 저항기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현행 일반보도와 횡단보도에 대한 미끄럼 저항 기준은 없으며, 점자블록(KS규격)은 20BPN 이상, 연석은 40BBP 이상이다.

4) 표면 휘도 : LRV(Light Reflectance Value) : Housing for People with Sight Loss : A Thomas Pockington Trust Design Guide

## 마) 배수

- 보행 안전구역 내 배수구 설치는 지양한다.
- 보도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덮개의 표면은 보도 포장 마감재와 같은 재료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며, 보도 포장재와의 이음새 간격을 최대한 좁혀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 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sup>5)</sup>에는 1cm 이하의 간격이 되도록 하고, 보행자 진행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우수 처리는 보행 진행 방향이 아닌 식수대나 차도 쪽으로 배수하도록 한다.
- 보행자의 동선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배수구는 불순물이 걸려 배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틈새 간격을 여유 있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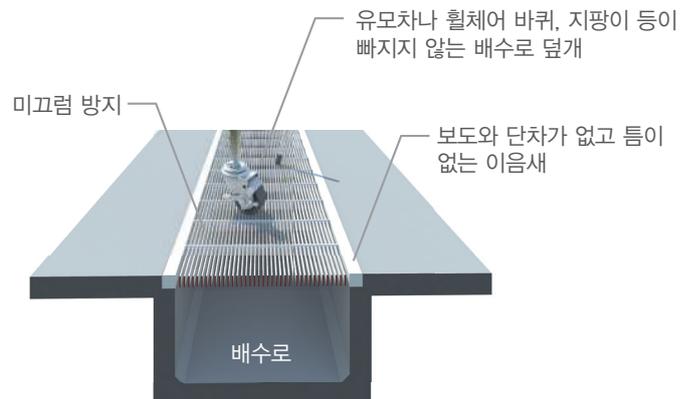
###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덮개가 없거나 마감이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된 배수로 덮개로 인해 보행 안전 위험



### | 권장 사례 |

보도포장 마감재와 동일한 높이, 원활한 배수를 통해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 그림. 04 | 배수로 덮개 구조

5)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 배수 :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1cm 이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바) 점자 블록**

-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확보되는 보도는 점자 블록(특히 선형 블록)을 설치하기보다는 바닥포장재의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교통시설, 버스 승차대, 건널목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 점자 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30cm, 점형 블록의 돌출 높이는  $0.6 \pm 0.1\text{cm}$ , 선형 블록의 돌출선 높이는  $0.5 \pm 0.1\text{cm}$ 인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점형 블록은 건물 출입구, 가로시설물 등 장애물이 있는 지점, 방향전환 지점,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 높이차가 있는 바닥 면이나 추락위험이 시작되는 지점 등에 경고 및 주의 환기용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최소로 한다.
- 경고 및 주의 환기용 블록은 보도의 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유도과 경고가 필요한 지점 등에 반드시 음성이나 진동 등과 함께 복수의 정보를 제공한다.
- 유모차나 휠체어가 선형 블록을 직교하여 통과하는 경우, 되도록 충격을 최소화하여 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선형 블록의 돌출선 간의 간격을 10cm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 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40BPN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진행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 장애물이 완전히 배제된 선형 블록 좌·우측의 최소폭은 각각 최소 0.9m 이상이 필요하며, 될 수 있으면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원칙적으로 황색 계열을 사용하되, 설치장소의 주변 상황에 따라 조화를 잘 이루면서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큰 점자 블록이나 질감이 다른 바닥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지장물 등으로 인한 점자 블록의 우회설치는 지양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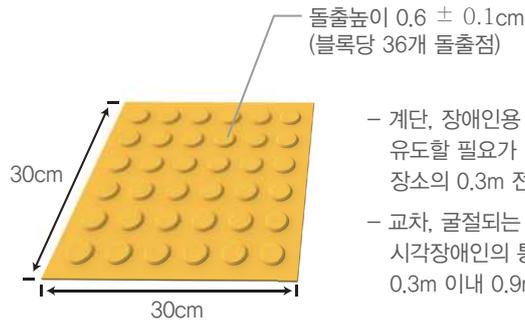
**| 권장 사례 |**



6)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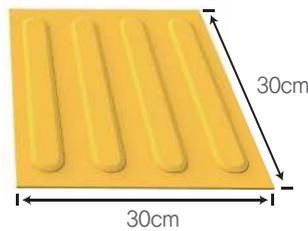
- 점자블록 : 대지 내 공지 쪽 기준선에서 0.6m 떨어져 설치 (보도공사 설계 매뉴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점형블록



-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시작.
-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0.3m 이내 0.9m의 범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선형블록



-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설치한다.

| 그림. 05 | 표준형 점자블록

## 2) 차량진입 구역

### 기본지침

- 보행자와 상충하는 차량진입구역은 보행 안전구역이 진행 방향으로 평탄하게 연속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영역 확보
- 공공보도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차량통행에 다른 보행자의 혼란 최소화
- 보행자를 위해 보도는 설치 높이를 유지하는 고원식 건널목이나 보도 턱 낮춤 등의 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 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최소한의 보행 안전구역을 안전하게 유지
- 차량 진·출입 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보도 면은 높이 변화가 없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가) 대지 내 주차장 진입구역

- 차량이 주차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 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 안전구역은 보행자의 진행 방향으로 단절 없이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특히 진행 방향의 횡단 경사는 1/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진입 확보를 위한 경사가 생길 시 적어도 보행 유효 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 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
- 보도 폭이 좁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 폭 만큼 보도면 전체 턱 낮추기를 한다.
- 차도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 배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하는 사실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닥 재료·마감을 달리하여 설치한다.<sup>7)</sup>
- 주차장 진입 구간이 길게 형성될 때도 보행 안전구역이 연속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널목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주차장 진 · 출입구역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경우



| 권장 사례 |

주차장 진 · 출입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편안한 보행을 유지



3) 대지 안의  
공지

기본지침

- 연접한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보행 안전구역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계획
- 건축주 마음대로 건축선 후퇴 시에도 연접한 보행 안전구역과 연속성 유지
-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보행환경에 영향이 있을 때는 건축선 내부의 건축물에서 제거
- 공개공지는 인접 보도와 단차 없는 수평 형태로 조성하여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조성

가) 건축물 전면부 영역

- 보행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 전면부 영역은 연접한 보행 안전구역과 연속되고 평탄하게 계획한다.
- 건축주 자의로 건축선을 후퇴한 때도 보행 편의를 위해 연접한 보행 안전구역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단차는 건축선 내부의 건축물에서 제거하도록 한다.

- 완만한 경사로 조성을 위해 보도를 침범하는 조성방법은 불허한다.
- 연접한 보행 안전구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화단 등 지장물의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건축물과 보행로 사이의 단차가 크고 보행환경 위험요소 산재



| 권장 사례 |

보행 안전 구역을 확보하고 완만한 경사로 조성



나) 건축물 전면부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보행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지속 관리하여 각종 장애물로 인한 보행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도와 연속적으로 계획하여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보행 안전구역에 면하는 소공원 및 소광장 형태로 설치하되, 다른 인접 공공공간이나 타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행 동선 유지와 교통약자(휠체어 등)의 접근을 편리하게 한다.
- 주차장 전용 금지

## 4) 자전거도로

### 기본지침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자동차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교통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도로는 설치되는 위치별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전거도로는 보행 안전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보도 높이) 설치를 우선 권장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가 어려울 때만 설치하며, 특히 비 분리형의 경우에는 공간보다 보행량이 많으면 사고유발 가능성이 크므로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 반영, 연속적인 주행 확보, 자전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친환경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구분된다.
- 자전거도로의 표장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충하는 구간은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암적색으로 통일한다.

### 가)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보도에 식수대, 화단, 펜스 등의 분리시설을 활용하여 자전거와 보행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 야간 시인성 저하 등 필요하면 차도 바깥쪽 차선에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방향을 기본으로 하며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 : 양방향 2.4m (한 방향 1.5m)
  - 지방 : 양방향 3.0m (한 방향 1.5m)
  - 공원, 하천 둔치 : 양방향 3.0m (한 방향 1.5m)
- 자전거전용도로의 측면에는 되도록 0.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며, 차량이 자전거사용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 폭을 확보한다.
  - 60km/h 이하 : 0.5m 이상
  - 60km/h 초과 : 1.0m 이상

###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시인성 확보가 어려움



#### 8)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 설치지침 : 자전거도로 유효 폭 1.5m 이상, 지역 상황에 따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m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편측 최소 0.25m의 측방여유폭 확보(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분리공간 차량 속도 60km/h 이하 0.5m(복선) 적용, 60km/h 초과 1.0m(복선) 적용

| 권장 사례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교차로의 자전거 도로는 분리하지 않고 자전거 통행의 연속성 증진



도로여건에 따라 방향표시를 바닥에 분명하게 구분

명확한 구분을 위한 청색포장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기준



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분리형 : 전체적 공간은 겸용하되, 보도에 노면 표시 또는 마감재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를 시각적으로 분리한 형태
- 비 분리형 :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시설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보도를 의미하며, 보행 유효 폭 3m 이상을 확보한 경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분리형과 비 분리형의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리형의 도시지역 : 자전거도로 1.5m(한 방향) + 보도 2.0m = 합계 3.5m
  - 분리형의 강변 등 : 자전거도로 2.4m(양방향) + 보도 1.5m = 합계 3.9m
  - 비 분리형의 도시지역과 강변 등 : 3.0m(자전거와 보행자 공존)
- 분리형으로 설치할 경우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측면에는 가능한 0.2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 권장 사례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기준



다) 이용편의시설

- 자전거 이용편의시설이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차시설, 수리센터, 화장실, 대여소, 공기 주입기, 휴게소, 벤치, 편의점,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며,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야간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이나 교통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주차시설 : 자전거의 주차 및 보관을 위한 시설물로 자전거의 도난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차도 상 설치가 일반적이거나 보도 위에 설치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충분한 유효 보도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용 안내문, 위치 안내도, 공기 주입기 등과 같이 설치한다.
- 수리시설 :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시 이용수요, 유지관리비용, 주변 자전거 수리업체 유무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힘든 장소는 무인 수리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기 주입기나 이용편의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관리가 미흡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로 이용이 불편한 경우



| 권장 사례 |

다양한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구



## 5) 시설물 구역

### 기본지침

- 시설물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
- 시설물이 보행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구역에 배치하거나 시설물에 의한 가로의 점유를 최소화한다.
- 기능을 우선으로 하여 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시설물의 점유면적을 최소화시켜 보행공간을 확대한다.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또는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적용한다.
-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되, 교통약자의 배려를 위해 안전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 가로표지,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들도 통합 설치를 권장하고, 공중전화, 가로판매대, 분전함, 가로수 등 모든 시설물은 시설물 구역 내에 경사진 장소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이나 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 꼭 필요한 시설물도 있으나 우체통이나 공중전화와 같은 사람들의 행태와 사회적 여건이 변하여 효용 가치가 떨어진 시설물은 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통합하거나 제거한다.

가) 식재와 띠 녹지

- 보행 안전구역과 건널목의 앞, 교통 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차량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 교차로의 각각부는 운전자의 시야(승용차 눈높이 110cm 내외, 상용차 210cm)를 가리지 않도록 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한다.
- 건널목의 통행을 포함한 보행자의 보행권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 인접 구역의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가로수 설치로 인해 보행 안전구역의 유효 폭을 1.5m 이상 확보할 수 없는 보도에는 가로수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 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보도의 시설물 구역에는 띠 녹지 형태의 조경을 권장한다.
- 우기에 보도 표면 위로 흐르는 우수량을 줄여 홍수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재를 이용한 우수관리 체계를 권장한다.
- 장소별로 다양한 제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보도 유효 폭과 높이, 식재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 관리되지 않은 가로수로 인한 보행 방해



| 권장 사례 |

적절한 식재와 띠 녹지를 통해 거리 미관 개선



가로수 식재 간격 :  
경남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참조

띠 녹지를 활용하여  
우수관리 체계 권장

## 나) 안내시설

- 길 찾기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추측, 오해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상황, 장소 등 맥락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 지식의 정도나 이해의 차이, 나이, 신체 능력이 다른 다양한 이용자가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공급 및 행정 중심에서의 정보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 다국어 표기 원칙을 준수하여 외국인도 길 찾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 급격한 경사로, 계단만 설치된 길 등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서는 사전 정보 제공과 함께 우회 정보를 제시한다.
- 관광안내판 등 지도로 안내하는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이동설비 여부를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사전 선택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시설은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한다(돋움체 등).

###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 | 권장 사례 |



## 다) 여객시설 정류장

-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소, 지하도 출입구 등은 가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야간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한 승차대 공간이 되도록 한다.
- 대기 공간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여건(수요), 가로 여건 및 교통상황, 보행 특성,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의 가로수나 시설물들로 인해 접근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며 특히 가로수 설치 시는 제외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정류장 쉼터는 보도 폭 및 이용환경에 따라 보도 중간형/역상형/보도 후퇴형의 승차대를 설치한다.
- 보도 폭이 좁은 경우 역상형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과 보도를 공유한다. 반면, 충분한 보행자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버스 베이 형태의 버스정류장은 지양한다.
- 무장애 정류소는 일반인 대기 공간과 휠체어 대기 공간을 구분하며, 휠체어 승차장 위치를 표시한다.

-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교차하지 않도록 하고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보도 폭이 넓은 때는 점형 블록과 선형 블록을 병설하고, 좁을 때는 점형 블록만을 설치한다.
-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유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승차대 일체형/독립형/표지판 일체형으로 설치하며, 정보표출 화면의 양·단면은 대기수요 및 정류소 혼잡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될 수 있으면 정류소 접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면형의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한다.
- 입식 표지판을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1.2m 이하로 설치하고, 화면 등을 통하여 전자식 음성 및 시각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버스 도착 시 음성으로 안내한다.
- 경계 부분의 연석 높이는 저상 버스를 기준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 버스로 옮겨 탈 수 있는 높이로 하여야 하며, 높이 0.25m 이하로 설치한다.
- 정류장과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형 가로경계석을 사용한다.
- 대기 공간과 면한 보행 안전구역은 구별을 위해 다른 재질로 설치한다.
- 차도와 면한 대기 공간에 경고 블록을 사용하여 대기 공간의 경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 권장 사례 |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 키오스크  
(점자 및 음성안내 시스템 적용)

## 1-2. 차도

### 1) 국지도로

#### 기본지침

- 가로에서 일어나는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
- 가시성이 높아서 시각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가로로 조성
-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력적이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보행자 우선도로의 가로 조성
- 주변의 시설이나 건축물의 규모, 통행량, 인접 공간의 너비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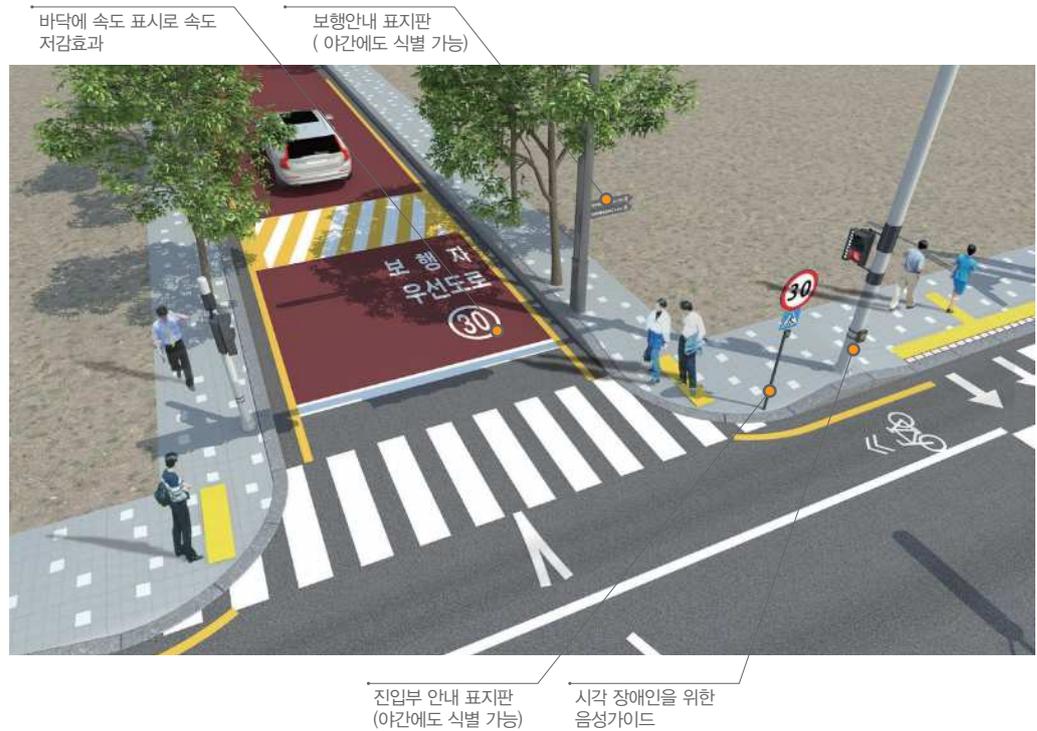
#### 가)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는 통과교통의 수요가 적고 보행유발 시설이 위치한 도로로 선정한다.
- 보행 동선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폭이 좁은(2차선 이하) 도로에 적절하다.
-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최소화한다.
- 차량 국지도로 진입 시 발생하는 보행 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건물목을 연석의 높이만큼 올려서 보도와 고저 차가 없는 고원식 건물목을 만든다.
-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행자 대 차 사고가 빈번한 가로나 그 밖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고려한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가 구간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해당 구역 진입부에 입식 표지판 설치 및 바닥 표시를 하고, 기존의 차도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하거나 스탬핑 등의 기법으로 도로요철 패턴 변화를 준다.
- 차량이 저속 운행하도록 가로 표면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아닌 거친 질감의 재료 또는 요철을 두어 차량의 속도 경감을 유도한다.
- 보차도 혼용 가로나 차량 운행을 금지한 보행 전용거리에서 포장 재료를 달리하여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나) 안내시설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m 이내 주요시설물, 1.2km 이내 여객시설 외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 보행자 안내표지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가이드를 병설한다.



## 2) 속도 저감방안

### 기본지침

-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주택가의 국지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 구역, 병원 주변 등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하여 차량의 속도를 저하하기 위한 속도 저감시설 설치
-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시설 설치
-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진입 부분에서는 운전자가 속도 저감시설의 설치 여부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 표지판, 바닥 표시 등으로 안내 및 경고 시행
-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충격 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 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노면요철 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 지역 안전시설, 건널목 육교 등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 가) 도로형태

#### (1) 지그재그형 도로

- 교통약자보호 구역에서는 노선을 곡선화하거나 굴절 및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볼라드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단,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은 보행 안전통로가 직선을 유지한 상태로 보도 유효 폭 확보가 가능한 가로에 설치한다.
-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속도저감효과가 적용되지 않거나 지그재그 형태가 미비하게 적용되어 교통약자보호가 어려운 도로



| 권장 사례 |

도로의 노선을 곡선화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조성하여 속도 저감 효과를 준 도로



| 그림. 06 | 지그재그형 도로

(2) 차도 폭 좁힘

- 운전자가 주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설치한다.
-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도로 폭과 길이를 확보하여 차량이 정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보도공간 확장의 효과를 내면서 커브를 조성한다.
- 야간, 짙은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위치에 고휘도의 색상을 이용하여 안내 및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차량이 정해진 차로로만 운행하도록 차도 폭이 좁혀진 구역 이외의 차도에는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과도하게 차도폭을 좁혀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 권장 사례 |

물리적 혹은 시각적으로 차도를 좁혀 속도 저감 유도 효과를 준 도로



| 그림. 07 | 차도 폭 좁힘

나) 도로포장

- 국지도로와 같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혼선이 빈번한 곳은 차도 면의 포장 재료를 달리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한다.
- 포장 재료를 선정할 때는 가로 유형, 보행량, 교통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투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각 재료의 시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 횡단보도 부분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차량의 주차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 안전구역의 단절구간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 안전구역은 단절 없이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특히 진행 방향으로 횡단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진입 확보를 위한 경사가 발생할 시 적어도 보행 유효 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시설물 구역, 공개공지 등)에서 차량 통과용 경사로를 확보한다.

- 차량의 진·출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재료와 마감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주차장 진입 구간이 길게 형성될 때도 보행 안전구역이 연속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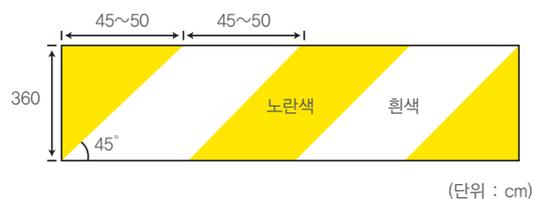
#### 다) 과속방지턱

- 도로구간 및 교차로 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길이 3.6m, 높이 0.1m의 원호 형태로 차도 폭의 여유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차도에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피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을 하나만 설치할 경우, 과속방지턱을 지나면 차량은 과속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속으로 2개 이상 설치한다.
- 한 개 이상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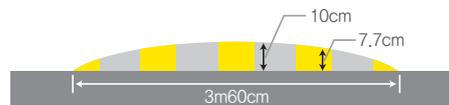
####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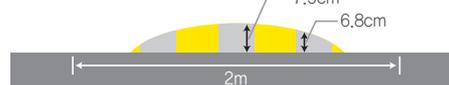
#### | 권장 사례 |



- 도로 폭 6m 이상



- 도로 폭 6m 미만



| 그림. 08 | 과속방지턱 도색 및 설치 기준



과속방지턱을 피해 갈 수 있는 여유공간 차단

과속방지턱 2개연속 설치 시 20 ~ 90 m 간격 유지

### 3) 횡단보도

#### 기본지침

- 보도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 보도나 보도육교 설치를 지양하며, 될 수 있으면 건물목을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거리가 짧은 교차로로 계획한다.
- 보행 거리를 짧게 하도록 스크램블 교차로 혹은 보행광장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건물목의 높이가 연속 되도록 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건물목은 차도 면의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건물목은 보도 면의 높이에 맞추도록 한다.
- 건물목에는 건물목표시와 건물목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건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 면에 건물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sup>9)</sup>
- 도로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신호등 건물목에서는 잔여 횡단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아니하여 건물목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목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건물목표지판에 건물목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해야 한다.<sup>10)</sup>
- 건물목은 육교·지하도 및 다른 건물목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목을 설치한다.
- 차도폭이 약 5.0m 이상의 생활도로로 자동차의 교통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하며, 시야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 보도와의 건물목 경계 부분에는 배수구 및 맨홀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턱 낮추기를 하는 연석과 건물목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45BPN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 블록을 설치할 경우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한다.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목 주변의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 달리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며 조도는 500lx 이상으로 한다.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집중 조명등은 편도 4차로 이상 건널목의 모든 범위를 투광할 수 있는 범위에 설치하며, 조명등은 3구 이상을 설치한다.
-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건널목이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도록 한다.
- 노면 표시에는 고휘도 반사 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야간에 표시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한다.
- 건널목 제거나 옮겨 설치할 때에는 이미 설치된 점자 블록과 턱낮춤을 제거한다.
- 건널목은 육교·지하도 및 다른 건널목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일 때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널목을 설치한다.

### 가) 설치

- 보도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 보도나 보도육교 설치를 지양하며, 될 수 있으면 건널목을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거리가 짧은 교차로로 계획한다.
- 보행 거리를 짧게 하도록 스크램블 교차로 혹은 보행광장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건널목의 높이가 연속 되도록 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건널목은 차도 면의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건널목은 보도 면의 높이에 맞추도록 한다.
- 건널목에는 건널목표시와 건널목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건널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 면에 건널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sup>11)</sup>
- 도로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신호등 건널목에서는 잔여 횡단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건널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아니하여 건널목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널목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건널목표지판에 건널목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해야 한다.<sup>12)</sup>
- 건널목은 육교·지하도 및 다른 건널목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널목을 설치한다.
- 차도폭이 약 5.0m 이상의 생활도로로 자동차의 교통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하며, 시야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 보도와의 건널목 경계 부분에는 배수구 및 맨홀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턱 낮추기를 하는 연석과 건널목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45BPN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 블록을 설치할 경우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한다.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널목 주변의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 달리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며 조도는 500lx 이상으로 한다.
- 집중 조명등은 편도 4차로 이상 건널목의 모든 범위를 투광할 수 있는 범위에 설치하며, 조명등은 3구 이상을 설치한다.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건널목이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도록 한다.
- 노면 표시에는 고휘도 반사 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야간에 표시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한다.
- 건널목 제거나 옮겨 설치할 때에는 이미 설치된 점자 블록과 턱낮춤을 제거한다.
- 건널목은 육교·지하도 및 다른 건널목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일 때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널목을 설치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 권장 사례 |



### (1) 진입부

- 보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널목 진입부는 전체 턱낮춤을 원칙으로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높이 차이가 1cm 이하(법적 치수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 될 수 있으면 높이 차이 1cm는 연석에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 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건널목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하도록 권장한다.
- 접하는 보도의 대기 수평부 폭은 건널목의 폭과 같게 설치한다.
- 건널목과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에 턱 낮추기를 하고, 턱낮춤 부분의 경계석(낮춤석) 상단을 곡선 처리(모따기)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 노면과의 단차를 0cm로 한다.
- 건널목과 접촉하는 보도의 구조는 1.2m 이상의 보행 □ 대기 수평부, 기울기 1/18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한다.
- 건널목과 접속하는 보도의 대기 수평부의 폭은 건널목의 폭과 같게 한다.
- 보도의 보행 수평부를 1.2m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좁은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면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하도록 권장한다.
-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석 경사로와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 연석 경사로의 유효 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0 이하(법적 치수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 폭이 2.0m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건널목에서는 유효 폭이 0.9m 이상인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바닥감재가 변화하거나 바닥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차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진입부 턱낮춤 또는 기울기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색이 벗겨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식별이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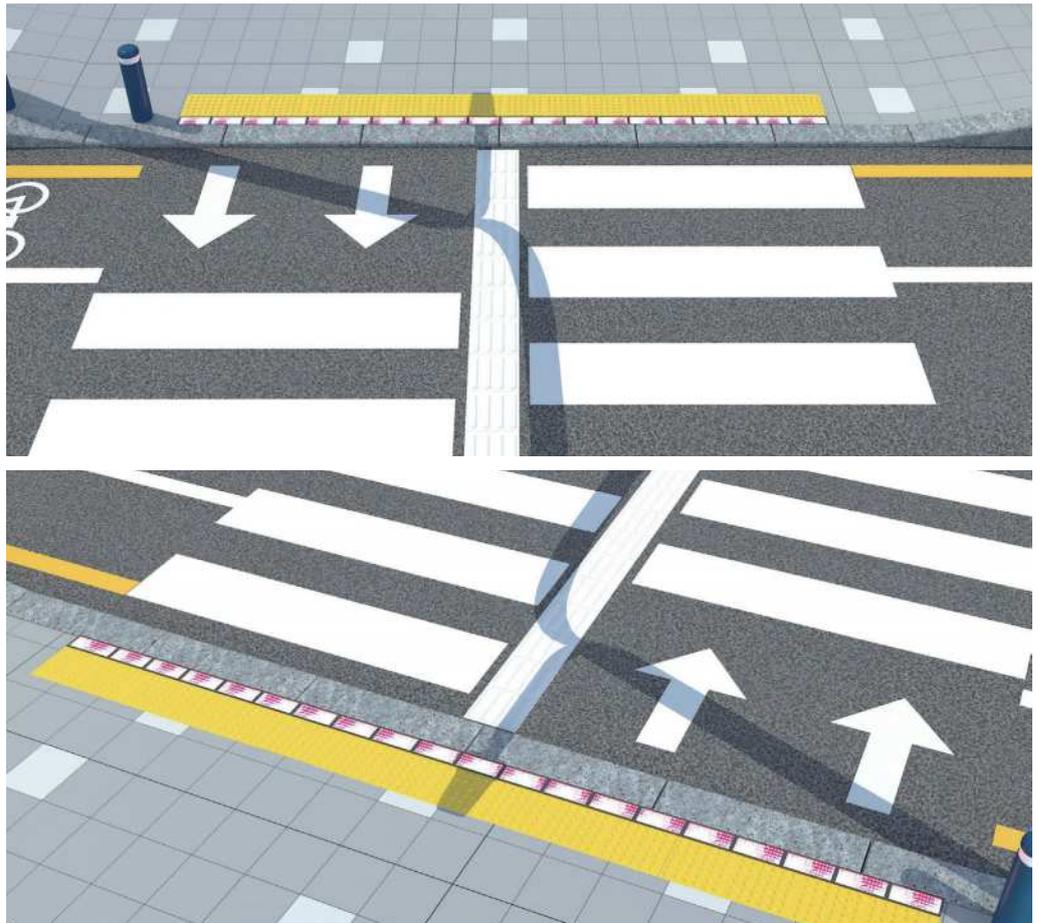
### | 권장 사례 |

횡단보도 진입부 전체 턱낮춤이 적용되어 있어 보행 편의 제공



### 13)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 횡단보도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 부분은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보차도 경계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인 차도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을 설치하며, 점자 블록 배치 시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 그림. 07 | 전체 턱낮춤이 적용된 횡단보도 진입부

(2) 에스코트 존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건널목 중앙에 돌기가 있는 포장 마감으로 처리된 에스코트 존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에스코트 존은 보도의 선형 블록 설치 방향과 일치하도록 건널목 중앙에 배치하고, 포장 마감은 돌출 높이  $0.5\text{cm} \pm 0.1\text{cm}$  정도의 견고한 돌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에스코트 존은 폭 0.45m 또는 0.6m 정도로 하며, 보도와의 경계 부분에서 0.3m 정도 떨어 뜨려 설치할 수 있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 권장 사례 |



보도의 선형 블록 설치 방향과 일치하며 표준형 블록으로 설치된 도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선형 블록과 동일한 위치에 에스코트 존 설치 (돌기가 있는 블록 마감)

나) 고원식 건널목 · 교차로

(1) 건널목

-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 부분과 건널목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고원식 건널목에는 배수 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고원식 건널목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표지, 블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2) 교차로

-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
- 교통약자의 교차로 횡단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 둘러싸인 면과 건널목을 함께 높여 보도와 단차를 제거한다.
- 높여진 교차로의 면 전체를 주변 도로와 구분되는 보도 포장재를 적용하여 높여진 면을 강조한다.
- 차량의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 오르막길과 경사가 심한 도로, 화물차나 응급차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 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건널목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도색이 벗겨져 식별이 어렵거나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 안전 보행이 어려운 경우



| 권장 사례 |

보도의 선형 블록 설치 방향과 일치하며 표준형 블록으로 설치된 도로



다) 교통섬

- 신호주기 이내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들의 대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널목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한다.
-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섬 중 건널목과 연속되는 부분은 도로와 단차를 두지 않고, 조경을 설치하는 부분의 연석 높이를 올려 설계한다.<sup>14)</sup>
- 차도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최소 1.5m 폭으로 설치한다.<sup>15)</sup>
- 교통섬이 차량 운전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보도에 흔히 사용하는 블록과 다른 사양의 포장 재료를 사용한다.
-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 표시 및 볼라드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차도의 편도 차로 수가 4차로 이상이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널목 중앙에 일시대기 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안전지대의 바닥과 차도와의 높이는 1cm 이하(법적 치수 2cm 이하)로 하며, 될 수 있으면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넓은 차도에서는 안전지대에 보행자용 교통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4)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 단차 및 폭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 부분은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보차도 경계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인 차도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을 설치하며, 점자 블록 배치 시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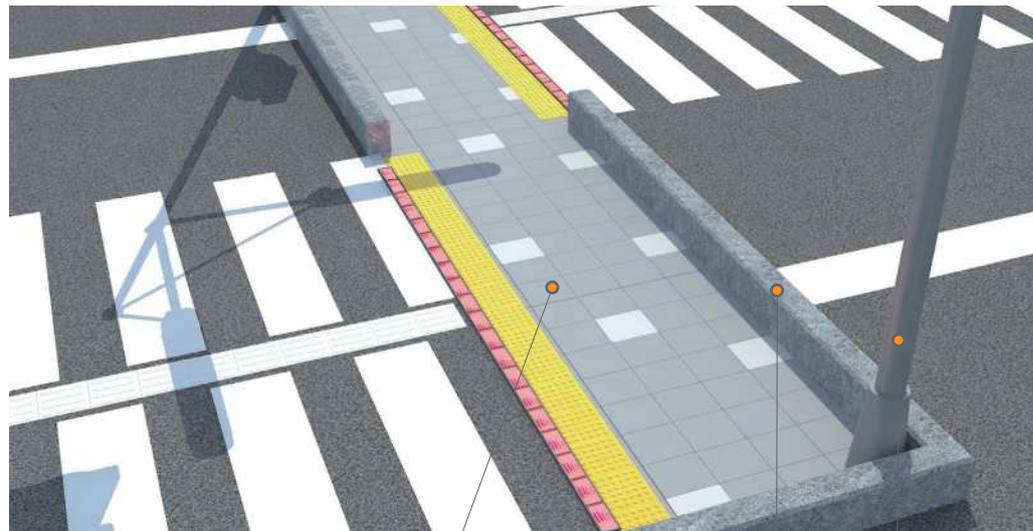
| 경상남도 현황 및 잘못된 사례 |

도로길이에 비해 신호주기가 짧은 횡단보도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 시설이 미흡한 경우



| 권장 사례 |

교통섬 설치로 건널목 보행 안전 확보



도로와 단차없이 횡단가능한 교통섬

폭이 넓은 도로는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섬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어긋나게 배치

보행신호등 설치